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834-10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2011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 시행계획 추진실적

2012.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 목 차 ||

## 제1장 총괄편

1. 추진실적 점검개요 .....	3
2.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	4
3. '11년도 투융자 실적 .....	10

## 제2장 분야별 평가편

### 제1절 보건·복지증진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19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21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	24
1-1-3-2.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	27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29
1-1-4-1.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31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	35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39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	43
1-1-5-1. 농부증예방 지원방안 마련 .....	47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49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51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54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	56

1-2-2-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58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60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62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64
1-3-2-3. 경영이양직불제 .....	67
1-3-3-1.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	70
1-3-3-2.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	72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74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76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78
1-3-3-6.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82
1-3-4-1.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	84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86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88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	90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	92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94
1-4-2-1.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97
1-4-3-1.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99

## 제2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103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106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108
2-1-4-1.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	110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12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115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119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121
2-2-4-1.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123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26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129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132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4
2-3-2-2. 자연농수산물고교 급식비 지원	137
2-3-3-1.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유도	141

### 제3절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145
3-1-2-1.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148
3-2-1-1.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150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153
3-2-3-1. 지역거점 기능향상	157
3-2-4-1.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160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163
3-3-1-2.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166
3-3-1-3.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69
3-3-2-1. 농어촌 도로정비	171
3-3-2-2. 교통서비스 강화	174
3-3-2-3. 국고여객선 건조	176

3-3-2-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178
3-3-3-1. 정보화마을 조성 .....	180
3-3-3-2.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	182
3-3-3-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	184

## 제4절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관리 .....	189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	194
4-1-2-1. 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	199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	202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	205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	212
4-1-4-1.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	216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220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222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	230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233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236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자원화 .....	241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243
4-2-4-2.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 .....	248

## 제5절 문화·여가여건 개선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253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256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261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263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265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267
5-2-1-2.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운영	269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278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80
5-2-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282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285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287

## 제6절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1-1-1. 경관보전직불제	293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95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298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01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303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309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311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313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315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318
6-2-3-1. 해양폐기물 정화	320
6-2-3-2. 소하천 정비	322
6-2-3-3.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326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	328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	331
6-3-1-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	334
6-3-1-4. 가축분뇨처리지원 .....	338
6-3-1-5.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342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348
6-3-2-2.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	357

## 제7절 지역역량 강화

7-1-1-0.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	361
7-1-2-0.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	365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367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	368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369
7-4-1-1.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372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	375
<b>&lt;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gt;</b> .....	377

제 I 장  
총 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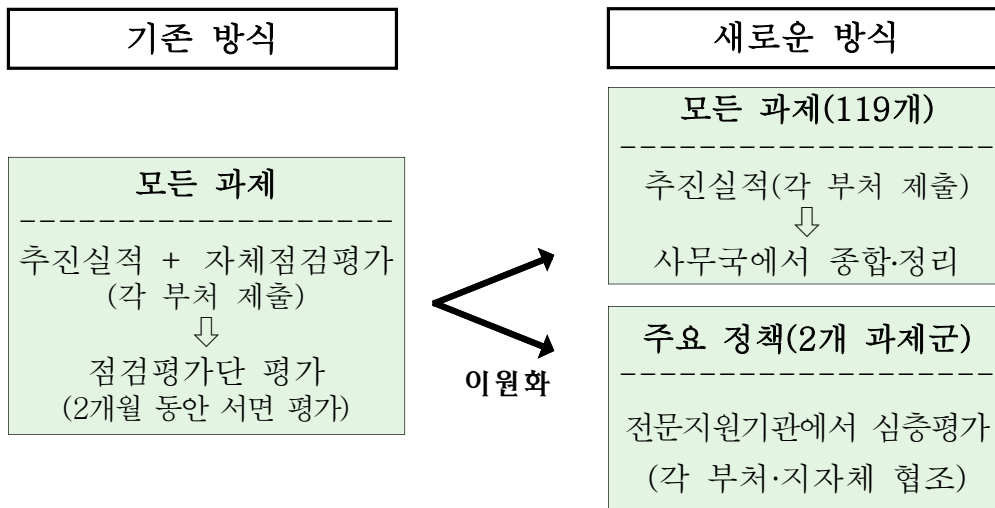


# 1

## 추진실적 점검개요

- 점검 주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 점검 대상 :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13개 시·도에서 수행한 '11년도 시행계획 119개 과제
- 점검 절차
  -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 통보(사무국, '11.12월)
  - 과제별 '11년도 추진실적 작성(각 부처, 1~2월)
  - 추진실적 종합·분석(사무국) 및 위원회 보고(3월)
  - 국회 제출(6월까지)
- 점검 방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추진성과, 예산집행률 등 분석

### □ 점검 방식



## 2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 가 보건·복지 증진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및 농어업 작업 재해 공제 확대 등을 통한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건강/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대('10 : 667천원/410 → '11 : 728/450)

○ 농업인/수산인 재해공제 가입률 확대('10 : 52%/30 → '11 : 54/31)

□ 농어촌 보건시설 현대화 및 공중보건의 배치 확대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시설 신·증축(235개소), 장비 개선(391개소)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21개소, 820억원)

○ 취약지역 공중보건의 배치인원(비율) : ('10) 1,104명(73%) → ('11) 1,117(85)

□ 농어촌 영유아, 다문화가족, 고령농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5개소), 영유아 양육비지원(28천명, 490억원)

\* 농어촌 어린이집(국공립+민간) : ('10) 7,759개소 → ('11) 8,03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159개→200),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1,236명)

○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시행(1,007명 가입)

◇ 농지연금 지원, 여성친화도시 지원, 어선원 보험 지원 등 과제 우수

◇ 산업체 근로자에 비해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농업인 건강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미흡



## 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 농어촌전원학교 지정 확대 및 기숙형고교(150개교) 육성 지원(45억원)

\* 전원학교(연중돌봄학교 통합) : ('09) 488개교 → ('10) 523 → ('11) 570

#### ○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의 지원학급 및 지원액 확대

\* 지원학급/지원액 : ('09) 14,605개/382억원 → ('10) 16,210/421 → ('11) 17,162/515

### □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 ○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파견(502명) 및 원어민 영어 화상강의(746개교, 44천명) 등을 통해 농어촌 학생에 우수 영어교육 지원

#### ○ 사·교대생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1:1 멘토링(80개교, 5,901명) 지원

\* 지원학교 수 / 수혜학생 수 ('10) 60개교 / 3,700명 → ('11) 80 / 5,901

#### ○ 농어촌에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11.9월)

\* 학교·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 실시, 채용교사는 10년 범위에서 전보제한

### □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융자 확대로 교육비 부담경감

#### ○ 농어업인 자녀 고교생 67천명에 학자금 전액 지원(639억원)

#### ○ 농어촌 출신 대학생 33천명에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1,103억원)

\* 대학생 학자금 융자액 : ('09) 929억원 → ('10) 1,012 → ('11) 1,103

◇ 기숙형고교 육성,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등 과제의 성과달성도 우수

◇ 교사들의 농어촌 이해도 제고를 위한 농어촌 교원연수 과정 확대 필요

## 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 지역 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을 위해 지자체 포괄보조계획 수립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전문가 그룹(11개팀 33명)에 의한 모니터링, 컨설팅 제도의 도입을 통해 118개 시·군의 포괄보조계획('10~'14) 보완 지원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한 경우 포괄보조 예산 우대

\* 민간사업자 참여비율 : ('10) 63.9% → ('11) 73.6

### □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농어촌 마을 정비 및 거점 읍·면(58개 권역)의 기초생활서비스·경제 기능 강화

○ 전원마을 조성('11년 신규 15개)을 통해 농어촌에 도시민 유입 확대

\* '04년 이후 도시민 등 유입인구(누계) : ('10) 2,989명 → ('11) 3,174

○ 생활·소득 기반시설 확충, 경관정비 등 401개 마을권역 정비

### □ 노후주택 개량, 상수도 확충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6,611동)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2,372동)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제고 : ('10) 56.1% → ('11) 65.0

○ 벽지노선 버스 운행손실 지원(754억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164억원)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 거점 읍·면정비(98%) 및 마을정비사업(96%)에 대한 주민 만족도 높음

◇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자부담 금액 증가로 농어촌 노인 등 사업 포기자가 30%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라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 지원

- 다양한 농어촌 자원을 기반으로 한 1-2-3차 **융복합 산업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복합산업화 4,870억원, 향토산업804억원)

\* 복합산업화 지원업체 매출액(전년대비 64% 증가) : ('10) 8,955억원 → ('11) 14,594

\* 향토산업육성 우수사례 : 양평 유기농오디, 공주 알밤, 김제 황금보리, 장흥 헛개나무

- 제3회 **농어촌박람회**를 개최(54개 시·군, 139개 업체 참여)하여 **농어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간 계약체결**(21건) 지원

\* 개최실적 : 관람객(63,120명), 총 매출액(1,783백만원), 계약체결(21건)

### □ 다양한 체험·휴양 인프라 확충 및 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 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체험 마을 방문객** 대상으로 **상해보험** 지원 실시(231개 마을 보험가입)

\* 농어촌 테마공원(45개소), 체험마을(55개소), 낙농체험목장(3개소), 어촌관광(6개소)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93개소), **수목원·산림박물관** 조성(38개소)으로 산림문화와 휴양이 연계된 산림휴양공간 조성

- **1사1촌 운동** 활성화 및 **팜스쿨**(20개소)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 1사1촌 참여 기업체 : ('10년) 8.2천 개소 → ('11년) 8.7천

◇ 복합산업화 지원, 소규모 창업지원을 통해 농어촌 기업의 매출액 증대

\* 매출액 증가율 : (복합산업화 지원) 49%, (소규모 창업지원) 21%

◇ 농어촌관광사업이 농어촌체험 위주로 이루어져, 도시민의 흥미 유발에 한계, 향후 레저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마 문화·여가여건 향상

- 농어촌에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공공도서관/지방테마과학관 확충 : ('10) 261개소/22 → ('11) 268/24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확충 : ('10) 24개소 → ('11) 26
- 찾아가는 문화공연,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국립예술단체) 160회, 문화순회공연(농협) 600회
  - 찾아가는 도서관 2,156회·박물관 76회

◇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 농어촌 지역에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 서비스 확대 필요  
\* 1개관 당 인구수 : 한국 6.4만명('11), 미국 3.2('08), 영국 1.3('09), 독일 0.9('09)

## 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경관보전직불제(13,741ha)를 통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형성 및 경관작물을 이용한 축제 활성화(전년대비 방문객수 14.7% 증가)
  - 자생식물원(7개소) 및 생태숲(26개소) 조성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 보전
- 하수도 정비, 폐기물 처리 지원 등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보급 확대 : ('10) 53.5% → ('11) 56.5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13개소) 설치, 해양폐기물(8.8천톤) 수거

○ 농어촌 소하천 정비(368km, 4,143억원) 시 경관·생태계 고려

□ **유기질 비료** 및 토지개량제 지원(2,330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지원**(28지구 80억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 ◇ 경관보전직불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등 과제의 성과달성도 우수
- ◇ 지속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해 사전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 \* 최근 10년간('02~'11) 소하천 피해복구비용이 정비사업비보다 1.5배 소요
  - \* 최근 5년간('07~'11) 하천피해의 43%가 소하천에서 발생

## 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 농어촌 공동화, 고령화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부족, 전문지식 필요성 확대 등에 따라 **농어촌 재능기부 도입**('11.8월)

○ 도시민의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기부를 통해 농어촌 발전 도모

\* '11.8~12월 농어촌 재능기부 신청자 10,919명, 재능요청마을 237개

□ 농어촌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지원**(25개 시·군)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체험, 농업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원 시·군에서 '10~'11년 동안 도시민 8,670명 유치

- ◇ 주민역량교육 강화, 도시민 유치 지원 등 과제의 성과달성도 우수
- ◇ 주 5일 수업제 본격시행에 따라 1사 1촌과 같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의 농어업·농어촌 현장 체험 기회 확대 필요

3

'11년도 투융자 실적

□ 2011년도 투융자 실적은 6조 3,181억원으로 계획(6조 4,408억원) 대비 98.1% 집행

- 재원별 : 국비 3조 7,122억원(58.8%), 지방비 2조 5,033억원 (39.6%), 민자 등 기타 1,026억원(1.6%)으로 구성
- 분야별 : 보건·복지 8,867억원, 교육 5,015억원,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2조 3,539억원, 경제활동다각화 8,098억원, 문화·여가 1,241억원, 환경·경관개선 1조 6,112억원, 지역역량강화 309억원
- 기관별 : 교과부 3,251억원, 행안부 1,108억원, 문화부 1,142억원, 농식품부 3조 6,670억원, 복지부 3,249억원, 여가부 243억원, 환경부 9,491억원, 고용부 10억원, 국토부 1,093억원, 농촌진흥청 268억원, 산림청 1,998억원, 소방방재청 4,143억원, 지자체(자체추진) 515억원

□ 주요 사업별 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부 문	사 업 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증 감	
					증감액	증감율 (%)
보건 복지 증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544	1,608	64	4.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869	905	36	4.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농식품부	719	720	1	0.1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농식품부	13	11	△2	△15.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농식품부	677	516	△161	△23.8
	농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진청	3	3	-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안전기술 개발	농진청	5	5	-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편이장비 지원	농진청	96	96	-	-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등	농진청	1	1	-	-

부 문	사 업 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증 감	
					증감액	증감율 (%)
	농부중예방 지원방안 마련 *	농식품부	-	-	-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확충	복지부	136	234	98	72.1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복지부	890	890	-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800	820	20	2.5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	복지부	-	-	-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복지부	630	630	-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자체	67	50	△17	△25.4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복지부	-	-	-	-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농식품부	15	72	57	380.0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식품부	7	10	3	42.9
	경영이양 직불제	농식품부	623	593	△30	△4.8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41	41	-	-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복지부	561	634	73	13.0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식품부	619	490	△129	△20.8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여가부	-	-	-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진청	74	74	-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부	12	10	△2	△16.7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지자체	64	54	△10	△15.6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농식품부	12	12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여가부	180	180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여가부	63	63	-	-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93	93	-	-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농식품부	1	1	-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28	28	-	-
	농어촌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고용부	1	-	△1	-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식품부	-	24	24	-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과부	404	405	1	0.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과부	515	515	-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교과부	-	45	45	-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	교과부	-	-	-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지자체	90	83	△7	△7.8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농식품부	126	125	△1	△0.8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과부	252	282	30	11.9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과부	58	58	-	-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 *	교과부	-	-	-	-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교과부	177	176	△1	△0.6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821	639	△182	△22.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605	605	-	-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76	91	15	19.7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과부	2,600	1,631	△969	△37.3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농식품부	36	32	△4	△11.1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자체	316	328	12	3.8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교과부	-	-	-	-

부 문	사 업 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증 감		
					증감액	증감율(%)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관리 **	농식품부	13,342	13,303	△39	△0.3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농식품부	-	-	-	-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농식품부	274	274	-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4,000	3,305	△695	△17.4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환경부	94	58	△36	△38.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3,142	4,507	1,365	43.4	
	농어촌 도로정비	행안부	991	991	-	-	
	교통서비스 강화	국토부	639	754	115	18.0	
	국고여객선 건조	국토부	16	16	-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국토부	164	164	-	-	
	정보화마을 조성	행안부	71	71	-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농식품부	34	34	-	-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농식품부	62	62	-	-	
경제활동 다각화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관리	농식품부	4,870	4,870	-	-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진청	2	2	-	-	
	농어촌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농식품부	3	3	-	-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성장 지원	농식품부	40	40	-	-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농진청	17	32	15	88.2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진청	-	4	4	-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농식품부	20	26	6	30.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	1,385	1,366	△19	△1.4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낙농체험목장)	농식품부	-	5	5	-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청	1,008	917	△91	△9.0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555	556	1	0.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154	191	37	24.0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화부	-	40	40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진청	40	44	4	10.0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 교류 확대	농식품부	4	2	△2	△50.0	
	문화 여가 여건 향상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부	196	182	△14	△7.1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교과부	130	139	9	6.9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문화부	38	40	3	5.3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문화부	17	17	-	-	
지역문화 컨설팅기반 구축		문화부	9	9	-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화부	34	34	-	-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운영		문화부	7	7	-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25	22	△3	△12.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부	-	12	12	-		



부 문	사 업 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증 감	
					증감액	증감율(%)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부	134	134	-	-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농식품부	4	-	△4	-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부	646	645	△1	△0.2
환경 경관 개선	경관보전직불제	농식품부	198	199	1	0.5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식품부	531	491	△40	△7.5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201	202	1	0.5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	-	-	-	-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농진청	7	7	-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3,679	3,678	△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84	84	-	-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구축	농식품부	2,330	2,330	-	-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농식품부	892	840	△52	△5.8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20	20	-	-
	해양폐기물 정화	국토부	159	159	-	-
	소하천정비	방재청	4,143	4,143	-	-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환경부	70	134	64	91.4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267	295	28	10.5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농식품부	1,674	1,024	△650	△38.8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1,118	963	△155	△13.9
	가축분뇨처리지원	농식품부	1,299	1,298	△1	△0.1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농식품부	63	63	-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	행안부	46	46	-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	농식품부	38	38	-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환경부	50	47	△3	△6.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4)	산림청	28	28	-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농식품부	25	23	△2	△8.0
지역역량 강화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350	255	△95	△27.1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 *	농식품부	-	-	-	-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농식품부	-	-	-	-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	농식품부	-	-	-	-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농식품부	8	8	-	-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농식품부	46	46	-	-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	-	-	-	-

\* : 비예산 과제

\*\* :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관리는 기존 과제 중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소생활권 및 지역거점 기능 향상을 포함



제Ⅱ장  
분야별 평가편





제1절

보건·복지증진



1-1-1-1(계속)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추진 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 2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 사업비 정산(공단→농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규모 : 월 평균 413천세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민간보조
    - 보건복지부 경감지원 22% 포함 시 5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50	8,446	-	-	-	-	-	8,446
'10	435	1,626	-	-	-	-	-	1,626
'11	413	1,608	-	-	-	-	-	1,608
'12	402	1,669	-	-	-	-	-	1,669
'13	405	1,750	-	-	-	-	-	1,750
'14	395	1,793	-	-	-	-	-	1,793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13천세대	1,608	-	-	-	-	-	1,608

- '11년 예산 산출시 건강 보험료 인상률(5.9%) 중 일부(중기재정 수준 2%)만 반영되어 예산부족 발생, 64억을 자체 전용하여 1,608억원을 실 집행

### 4. 성과목표 달성도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이 전년('10) 대비 9.1%가 증가하여, 당초 목표치 대비 91% 달성

\* 1인당 건강보험료 지원액 : ('10) 667천원 → '11) 728천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당해년도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100	%	10	9.1	91.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농어업 건강보험료 대상자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 경감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 발굴하여 적격자에게만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방지

#### ○ 미흡한 점 및 건의사항 : 없음



1-1-2-1(계속)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 추진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사업시행주체 : 국민연금공단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 사업비 정산(공단→농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인 가입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초과 : 35,550원/월 정액 지원
  - 사업규모 : 월 평균 230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최대 50% 지원,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1	5,058	-	-	-	-	-	5,058
'10	230	940	-	-	-	-	-	940
'11	229	905	-	-	-	-	-	905
'12	230	924	-	-	-	-	-	924
'13	248	1,084	-	-	-	-	-	1,084
'14	263	1,205	-	-	-	-	-	1,20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29	905	-	-	-	-	-	905

- 당초 농어가 인구 감소율(2.5%)을 감안하여 지원세대를 월 219천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금년 지원인원이 229천명 수준으로 부족분 발생, 36억원을 자체 전용하여 905억원 예산 집행

\* 신규 가입 추세(64% 증) : ('10.10) 36,503명 → ('11.10) 59,707명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이 전년('10) 대비 10% 증가했으며, 당초 목표치 대비 100% 초과 달성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 ('10) 410천원 → ('11) 450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당해년도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100	%	10	10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귀농세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연금 신규지원자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11.10.31기준)

\* 신규 가입 추세(64% 증) : ('10.10) 36,503명 → ('11.10) 59,707명

### ○ 미흡한 점 : 없음

### ○ 건의사항 : 없음

1-1-3-1(계속)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재해보험팀	담당자	양운식(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 총사업비 : 2,460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사업규모(11) : 농림업인 816천명, 농기계 32천대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공제료의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시행주관 : 농협중앙회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농업인안전공제의 보장수준을 연차적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 '14년까지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사망시 100백만원)으로 지속 확대 추진

\* 사망시 보장수준 한도 : ('06)25 → ('07)35 → ('08)45 → ('09~'10)60 → ('11)70 → ('14)10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31	1,996	-	-	-	-	1,996	3,992
'10	835	332	-	-	-	-	332	664
'11	848	360	-	-	-	-	360	720
'12	865	392	-	-	-	-	392	784
'13	883	443	-	-	-	-	443	886
'14	900	469	-	-	-	-	469	93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848	360	-	-	-	-	360	720

- '11년도 농업인재해공제는 상품개선 등 보장수준 확대 및 적극 홍보 등으로 전년대비 가입농업인은 11천명, 가입농기계는 2천대로 각각 증가하여 사업비 360억원을 전액 집행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업인재해공제는 목표 가입률 52.4% 대비 1.3%p 증가한 53.7% 달성하여 계획대비 102.5%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률(%)	(당년도 재해공제 가입자 수 / 공제 가입대상 농림업 경제활동인구수) × 100	%	52.4	53.7	102.5

\* 당년도 재해공제가입자 수(농업인안전공제+순수 농기계가입)/1,520('11 농림업경제활동인구 추정)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와 관련하여 30천건에 511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안정에 기여
  - 최고 84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지병(암,뇌졸중,심근경색 등)이 있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민간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인안전공제의 사업대상 및 보장수준 지속 확대
  - 농업인안전공제의 사망시 보상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
    - \* 사망시 보상금액 : ('06)25백만원 → ('07)35 → ('08)45 → ('09~'10)60 → ('11)70 → ('12p)80
  - 임업인안전공제는 가입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농업과 겸업을 하고 있어, 농업인안전공제의 특약으로 전환
- 농기계종합공제의 다른 농기계 운전담보특약을 신설하여 보장내용 강화
  -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해시 급여수준을 '09년 최고 500만원에서 '11년 5,000만원으로 보상수준 대폭 확대

### ○ 미흡한 점 및 향후 추진과제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수준을 상향조정 중에 있으나 일반산재 보험과 비교하여 아직 보상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 ○ 건의사항

-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1-1-3-2(계속)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한병국

### 1. 사업목표

-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에 대한 일상적 경제활동 중의 상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어업인 78천명 및 어업인의 배우자 17천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수협중앙회 위탁)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 어업인 계획 23,400명 - 배우자 계획 1,024명	1,274						1,274
'12	- 어업인 계획 25,200명 - 배우자 계획 1,413명	1,263						1,263
'13	- 어업인 계획 28,800명 - 배우자 계획 1,465명	1,436						1,436
'14	- 어업인 계획 32,400명 - 배우자 계획 1,596명	1,613						1,613
'15	- 어업인 계획 36,000명 - 배우자 계획 1,815명	1,794						1,79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 어업인 실적 24,441명	1,101						1,10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산인안전공제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및 어업인의 배우자 가입률 (단위 : %)	(수산인안전공제가입어업인 및 배우자 / 수산인안전공제가입대상어업인 및 배우자) × 100	%	30	30.1	100.3

\* 2011년 가입대상/목표 : 78,000명 / 24,42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비 보조 추진

지자체	지방비보조	기타보조	어업인 부담	시행년도
충청남도	24%	-	26%	2011년
부산광역시	30%	-	20%	2012년
제주도	25%	25% (회원조합)	0%	2012년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대상 확대(어업인의 배우자수 확대)
- 보상범위(5백만원→10백만원), 보장 범위 확대

○ 미흡한 점

- 내수면어업자 등에 대한 홍보 부족 해소 노력 미흡

○ 건의사항

-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고보조를 인상필요



<b>1-1-3-3(계속)</b>	<b>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한 병 국
			r

### 1. 사업목표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을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 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4 ~ 계속(2004년부터 정책보험 개시)
- 총사업비 : 계속사업('11년까지 기투자액 : 2,995억원)
- 사업규모 : 어선원 121천명, 어선 72천척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지원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수협중앙회 위탁)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b>합계</b>								
'11	- 어선원 실적 36,112명 - 어선 실적 8,494척			51,569				51,569
'12	- 어선원 계획 35,366명 - 어선 계획 7,233척	72,700						72,700
'13	- 어선원 계획 36,366명 - 어선 계획 10,000척	98,332						98,332
'14	- 어선원 계획 36,366명 - 어선 계획 10,000척	98,765						98,765
'15	- 어선원 계획 36,366명 - 어선 계획 10,000척	105,927						105,92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 어선원 실적 36,11명 - 어선 실적 8,494척			51,569				51,569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어선원보험가입어선척수/어선원보험가입대상어선척수)×100	%	12.5	14.3	114.4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어선보험가입어선척수 / 어선보험가입대상어선척수)×100	%	8.5	11.9	14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율 확대 도모
  - \* 어선원 보험 '10년 13.1% → '11년 14.3%, 어선보험 '10년 9.7% → '11년 11.9%
- 소형어선 가입확대방안 마련
  - \* 어선보험 소형어선전용상품 및 선외기실손보상특약 도입안 농어업재해보험 심의회 의결

○ 미흡한 점

- 누적결손금 분할 출연분(161억)이 구제역과동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금으로 전용되어 보험재정건전화 지연

○ 건의사항

-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필요

1-1-4-1(계속)	<b>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농촌진흥청)</b>
-------------	--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채혜선 연구사

## 1. 사업목표

### ○ 사업목표

- 농업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직업성 질환 발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지원
- 농업·의료·공학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정보교류를 통한 농작업안전보건 쟁점 선도

###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 사업비('11) : 3억
- 사업규모 : 1소과제 1세부과제
- 지원형태 : 시험연구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 주요사업 내용
  - 농작업재해 현황통계 마련 및 원인조사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 농작업재해 예방센터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통계 제 14303호)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
  - 농업인 건강연구회 및 농업인 현장지원 등 수행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3			35.1				35.1
'10	38			3.8				3.8
'11	40			3				3
'12	70			3.3				3.3
'13	85			10				10
'14	100			15				15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0			3				3

- 예산확보 미흡으로 모니터링 마을수 경감 : ('11) 55개소 → 40개소

### 5. 성과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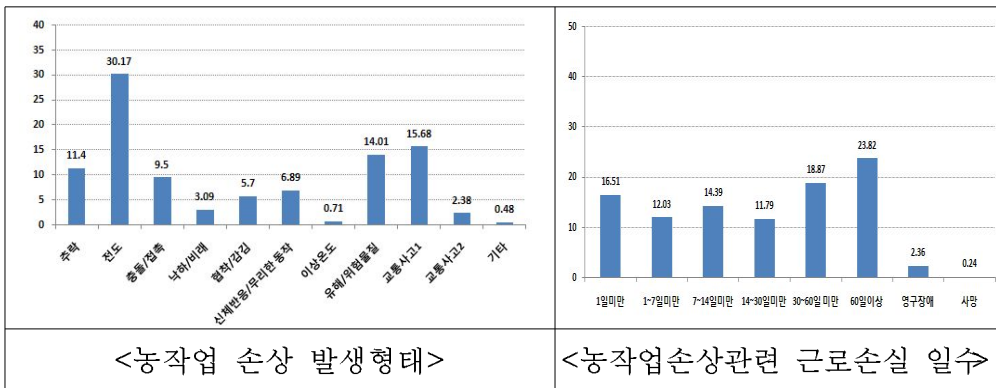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농작업재해 조사	조사대상 표본추출수	호	6,000	6,000	100
	대내외 협력건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 건수	회	20	27	135

## 6.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전국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작업재해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대책수립의 근거자료 마련
- 조사대상 : 전국 400개마을, 6,006 농가의 농업인 10,474명
- 주요 분석내용 : 안전보건 특성, 손상 및 중독 경험, 발생형태, 발생시간, 발생장소, 근로손실 일수 등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인 건강안전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학술대회에 농업인건강 관련 세션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공감대 조성에 기여



<한일공동 심포지엄(11.30, 국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공동개최(11.10)>



<농업인건강연구회 개최(매월)>



<농업인건강연구회 뉴스레터(매월)>

○ 의사사항

- 농업활동으로 인한 건강안전 특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연구 과제 선정 및 연구인력 확보 필요
- 관련 전문가 활용과 지속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b>1-1-4-2(계속)</b>	<b>농작업재해 원인구명(농촌진흥청)</b>
--------------------	--------------------------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이경숙 연구관

## 1. 사업목표

- 농업인 유해환경 노출조사를 통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정 근거 마련
- 농작업 유해요인 증가에 따른 농작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관리기술 개발 지원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지역농업의발전과 농촌주민 복지증진, 농업관련 기술·연구 진흥,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등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 어업인에 대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
- 사업비('11) : 5억
- 사업규모 : 2 소과제 5 세부과제
- 지원형태 : 시험연구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주요 사업내용
  -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조사 및 작목별·유해요인별 DB 구축
  - 인간공학적 작업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 개발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작목별/작업별 유해요인 노출조사 및 편이장비 개발 사업 추진
  - 작목/작업을 중심으로 작업특성에 맞춘 유해환경 노출 조사 및 개인 보호구/편이장비를 다양하게 개발·상품화 지원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환경적 여건에 따른 농작업 관련성 및 재해판정 기초자료 제공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과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			50				50
'10	5			4				4
'11	5			5				5
'12	5			6				6
'13	15			15				15
'14	20			20				20

- 일반예산 소폭 증액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연구비 확보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11	5	-	-	5	-	-	-	5



#### 4. 성과목표 달성도

○ '10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안전기술 개발	영농활용	제안자 참여	건수	4	6	150
	특허출원	발명자 참여	건수	3	4	13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를 개발하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현장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 활성화 지원

##### ▪ 포도작업 유인 작업기



유인클립



결속끈 & 결속기



개발된 유인기

- <장점>
- 유인클립 사용에 따른 넝쿨이탈 방지
  - 결속기 사용에 따른 힘 절감
  - 작업속도 절감

##### ▪ 서열작업복 개발



관행작업



쾌적성 평가



개발된 서열작업복

- <상의특징>
- 흡한 속건성 우수
  - 외열차단 냉감 기능
  - 자외선 차단
- <하의특징>
- 땀흡수, 발수성 방오성
  - 신축성 우수

- 농작업 현장의 유해요인 노출평가를 통하여 경감방안 기술개발의 기초 및 유해요인 안전관리 자료집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양계 작업단계별 근골격계 위험요인 평가

	병아리 입하 작업	양계장 관리 작업	출하 작업-1	출하 작업-2
사진				
RULA	- 점수 : 7점 - 단계 : 4단계 - 작업개선 필요	- 점수 : 3점 - 단계 : 2단계 - 추적 관찰 필요	- 점수 : 5점 - 단계 : 3단계 - 추적관찰과 그에 따른 작업개선 필요	- 점수 : 6점 - 단계 : 3단계 - 추적관찰과 그에 따른 작업개선 필요
REBA	- 점수 : 8점 - 단계 : 높음 - 작업개선 필요	- 점수 : 2점 - 단계 : 낮음 - 즉각적 작업개선 불필요	- 점수 : 7점 - 단계 : 중간 - 작업 개선 필요	- 점수 : 4점 - 단계 : 중간 - 작업 개선이 필요함
분류	허리, 상박, 손목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가 61°이상 숙여지는 동작</li> <li>- 상박이 앞으로 90° 이상 올라가고 몸에서 벌어지는 동작</li> <li>- 손목이 아래로 15°이상 꺾이고 비틀어지는 동작</li> <li>- 반복적으로 2~10kg 사이의 무게를 드는 동작</li> </ul>	

- 미흡한 점 : 농작업환경의 위험요인 노출조사를 위한 대상농가를 보다 충분하게 확보하여 객관적인 기초자료 생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 건의사항
  - 농업활동에는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해요인들이 농업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농가의 유해요인 노출평가와 더불어 해당 농가 작업자들이 건강영향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범위 확대 및 연구인력 확보 필요

1-1-4-4(계속)	<b>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진흥청)</b>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홍창우 지도사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제4조 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17조(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산업간 안전 불균형 해소)
- 목표
  - 농작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인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 ~ 12.
- 사업 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 기초조사 및 심사(시군) ⇒ 우선순위 정하여 마을 추천(시군→시도) ⇒ 검토 후 대상마을 확정(시도) ⇒ 마을운영위원회 구성(마을)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군) ⇒ 사업추진(마을) ⇒ 기술지원 및 평가(시도, 중앙)
- 추진내용
  - 사업지원 대상
    - 안전모델 : 원예,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 중심
    - 편이장비 : 마을, 농업인단체 중심

- 주요사업 내용

- 안전모델 : 마을단위 운영위원회 구성,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리더 양성으로 농작업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도출·실행 등
- 편이장비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와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작업 안전보건의 생활화
- 전문가 컨설팅 등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예방 대책 추진 및 편이장비의 선정 및 보급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안전 모델	편이 장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8,080	18,474	-	-	26,554	-	53,108
'10	38	135	1,320	3,369	-	-	4,689	-	9,378
'11	40	143	1,200	3,585	-	-	4,785	-	9,570
'12	26	141	1,160	3,520	-	-	4,680	-	9,360
'13	50	150	1,640	3,750	-	-	5,390	-	10,780
'14	90	170	2,760	4,250	-	-	7,010	-	14,02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안전 모델	편이 장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0	143	1,200	3,585	-	-	4,785	-	9,570

-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농작업 재해의 심각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농작업안전 실천 정착, 작업피로 감소, 작업능률 향상 효과 달성
  -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향상 : 26.1%
  - 농작업 효율 향상 : 33.6%
  - 농업인당 연간 작업 1525시간 단축, 인건비 연간 평균 3,200,000원 절감
- 농작업 안전사업 및 농업인 안전교육매체 개발, 운영 및 교육 지원
- 다각적 홍보로 농작업 재해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농작업 안전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농작업 재해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형성 기여 : 공모 16점, 경진 12점
  - 기획홍보 및 TV, 신문, 전문지 등 홍보 : SBS 등 353건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년도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마을 농가 현장 점검</li> <li>- 실천율 = [(농가실천 항목수/안전관리기준 항목수)X100]</li> <li>- 증가율 = (3차 실천율 - 사업전 실천율/사업전 실천율)X100</li> </ul>	백분율 (%)	25	26.1	104.4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농작업 효율 개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농가 작업시간 분석</li> <li>- 개선율 = [(장비 사용전 작업시간 - 사용 후 작업시간)/사용전 작업 시간] X100</li> </ul>	백분율 (%)	31	33.6	108.4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맞춤형 농작업 개선활동 지원 및 전문가와 관련 기관간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작업 안전 및 능률 향상, 농업인의 사업 만족도 제고
- 산업의학, 인간공학, 안전보건 등 관련 전문가가 마을별 농업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개선활동 추진 지원 (357회, 6,780명)
- 개별 농가의 자발적 안전보건 행위로 농작업과 관련된 직업성 상해 및 질병 예방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별 순회교육을 추진
  - 주요내용 : 농작업 안전농가 인증 필요성 및 목적, 안전인증 수행 절차, 안전교육 등

### ○ 미흡한 점

- 농작업 안전사업은 농약, 농기계, 농작업성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등 관련된 분야가 많지만 관련 전문가의 지역 사업지원 활용이 미흡 하였고, 농업인 안전 자율경영 동기부여도 미흡함
- 관련 분야별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예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다각화 및 전문가 활용성 증대
- 각종 연구회, 학술대회 등 지원으로 농업안전보건 주요 쟁점 선도
- 시범사업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자율안전활동 활성화를 통한 조직화
- 안전농가 인증제 등 농업인 자율안전보건 실천사업 개발 강화 등

### ○ 건의사항

- 없음

1-1-4-5(계속)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김효철 연구사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유비쿼터스 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농작업 안전 가상 체험교육 등 재해예방, 안전교육 강화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 사업비('11) : 1억
- 사업규모 : 1소과제 1세부과제
- 지원형태 : 시험연구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 주요사업 내용
  -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 홈페이지 현장 적용 및 평가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작업 안전관리 정보를 위한 교육 매체 개발

- 농업인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호 반응형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
-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접근 방식 지원 강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			9				9
'10	3			3				3
'11	5			1				1
'12	3			3				3
'13	3			1				1
'14	3			1				1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			1				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및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발	자료개발수	개	3	5	166
	농업인 건강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자수	회수	회	100,000	118,391	118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체험프로그램 개발시 현장에서 활용할 지도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진행 예시]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DVD 배부를 통한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정보 제공





○ 미흡한 점

- 기존 3종 목표에서 5종 개발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개발진행시 어려움 발생

○ 건의사항

- 체험프로그램 개발시 필요한 적정 예산의 확보 필요

1-1-5-1(계속)	농부증예방 지원방안 마련(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업인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농어업인 건강·안전 증진 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농식품부) → 관련 연구 추진(연구기관) → 건강·안전 증진 지원방안 마련(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 건강·안전 증진 지원 방안 추진(각 과제별 소관부처 및 부서)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규모(사업량) : 해당 없음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없음
  - 지원조건 : 해당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업인 건강·안전 증진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서)의 건강·안전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요청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방안 검토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식)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	-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건강·안전 증진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협의 여부	-	-	미협의	0

- '11년 연구사업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수행,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서 3종을 발간(농진청)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1-2-1-1(계속)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담당자	송인수

### 1. 사업목표

- 농어촌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에 구급차 등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고 1~3시간 내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16조(재정지원),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및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1년 234억원
- 사업규모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의 의료기관 등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46				230			230
'11	53				234			234
'12	70				221			221
'13	70				221			221
'14	70				221			22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3				234			23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기관 설치 확대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지역 비율	%	70	72	1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1년 3개 취약진료권 및 7개 취약 郡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 미흡한 점
  - 강원 양양 등 5개 군단위 지역은 적정 의료기관 부재 등의 사유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함

1-2-1-4(계속)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신재귀주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보강(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제2호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14
- 사업대상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2/3, 지방비 1/3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물가상승 등을 감안 '13년부터 증가율 3% 적용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시설 217개소 장비 257개소 전산장비 76대 차량 149대	62,503	-	-	-	32,268	-	94,771

	사업규모 (개소,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시설 235개소 장비 324개소 전산장비 22대 차량 70대	58,931	-	-	-	30,092	-	89,023
'12	시설 183개소 장비 343개소 전산장비 46대 차량 53대	56,814	-	-	-	30,903	-	87,717
'13	시설 193개소 장비 213개소 전산장비 56대 차량 50대	60,000	-	-	-	30,000	-	90,000
'14	시설 202개소 장비 237개소 전산장비 64대 차량 63대	60,274	-	-	-	30,137	-	90,41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시설 235개소 장비 324개소 전산장비 8대 차량 70대	58,931	-	-	-	30,092	-	89,023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이용자만족도는 90.5%로 목표대비 100.6% 달성
  - 이용자증가율은 1.14%로 목표대비 114%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	90	90.5	100.6
	이용자증가율	시설개선 전후 대비 이용자 증가율	%	1.0	1.14	114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건축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효율·효과적인 사업추진 도모 ('12년사업 지침 반영, '11년 5월)
  - 시설부문 공사비는 신·증축의 경우 '09년 이후 동결, 개보수의 경우 '96년 이후 동결되어왔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의 인상률(9%)을 반영하여 공사비 단가 상향 조정
- 대상자 중심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건강센터」 지원
  - 보건소 대상자 중심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설치 지원
  - 농어촌지역 도시화진행된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중심→예방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위한 「보건지소 주민건강센터」 설치 지원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추가 지원

### ○ 미흡한 점

-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 사업을 통한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은 65.5%(3,278개소 중 2,080개소)로 낮은 수준이나, 제한된 예산으로 시설개선 지원 한계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확대에 인한 현재 시설 지원면적(시 보건소 2,235㎡, 군 보건소 1,870㎡) 현실화 필요
- 현재까지 시설·장비 개선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고려 필요

### ○ 건의사항

-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 사업은 '14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기간내 시설개선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며,
- 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에 따른 인프라 개선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 예산 지원 필요

1-2-1-5(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윤대중사무관

### 1.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동 병원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11년까지 기능보강 지원 실적 : 323,751백만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적십자병원 기능보강(민간자본보조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 21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시설개선 및 장비를 보장하는 기능보강 예산 486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3개소			2,156		2,156		4,312
‘10	21			313		313		626
‘11	21			410		410		820
‘12	21			404		404		808
‘13	25			490		490		980
‘14	25			539		539		1,07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1			410		410		820

- '10년 395억원에 비해 26.5%가 증가한 5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방의료원 이용자의 만족도 목표치 79.5% 대비 80.5%로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지방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의료원 이용자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설문조사	%	79.5	80.5	101.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업인 많이 이용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예산을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한 예산( 500억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예산을 26개 병원에 집중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
- 미흡한 점
  - 한정된 국가예산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 예산 수요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점
- 건의사항
  - 농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및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요청

1-2-1-6(계속)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백창남

### 1. 사업목표

- '05년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16년까지 유지될 전망으로 향후 공중보건의 인력 공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지역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최우선 배치
  - 공중보건의 인력을 대체할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추진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5항

### 2.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및 의료취약지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등과 같은 의료취약지 위주로 적정 배치
- '11년 신규배치 인력 1,318명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취약지 민간병원 배치 인원 1,117명 (84.7%)으로 전년 대비 11.7% 상향 배치
  - 특히,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 인원을 확충 배치함으로써 의료 취약지 지역주민의 진료공백 최소화

※ '10년 1,104명(73%) → '11년 1,117명 (84.7%)

구분	2010년				2011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합 계	1,500	966	204	330	1,318	809	189	320
보건소	490	253	99	138	425	205	94	126
보건지소	552	300	86	166	667	416	76	175
병원선	12	5	4	3	17	7	5	5
취약지병원	50	49	0	1	8	8	0	0

구분	2010년				2011년			
	계	의과	치과	한의원	계	의과	치과	한의원
국·공립병원	133	124	0	9	87	78	2	7
정부지원민간병원	6	5	1	0	4	4	0	0
이동진료반	3	2	0	1	2	1	0	1
복지시설	17	15	0	2	11	10	1	5
교정시설 등	46	36	10	0	40	30	10	0
보건단체	20	20	0	0	2	2	0	0
응급환자정보센터	18	18	0	0	11	11	0	0
응급의료센터및지정병원	90	90	0	0	17	17	0	0
국가보건기관	63	49	4	10	27	20	2	5

### 3. 연차별 추진계획

- 공중보건의 인건비 외 예산 수반될 내용이 없어 작성 생략

###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인원을 확충 배치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치과 공보의의 경우 미배치 보건지소에 순회진료 실시
- 미흡한 점
  - 공보의 배치기관 특성 및 지역현황 등 분석(의료취약지 등)을 통한 지역적 특성(농어촌, 도농, 도시형 구분 등)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 및 우선순위 마련('12년 배치시 적용 예정) 필요

1-2-2-1(계속)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준미

### 1. 사업목표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25조

### 2.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 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보건소수 전문인력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253개소, 2,700명				31,001	30,545		
'11	253개소, 2,750명				31,612	31,362		
'12	253개소, 2,750명				32,296	31,150		
'13	253개소, 명				33,265			
'14	253개소, 명				34,26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보건소수, 전문인력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3개소, 2,750명				316	314		63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는 85점으로 목표치 81점 대비 85점으로 목표치 초과 달성(목표치 달성을 105%)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점	81	85	10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전문인력 50명 증원 및 시군구 필요도에 따른 적정 배치
  - 새로운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커버리지(coverage)를 나타내는 취약가구 등록 관리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현저히 높음

\* [등록관리가구수/지역내취약가구수]의 비율

\* 예시) '11.3월 기준 취약가구 등록관리율

전국 평균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20.48%	서울 10.38%, 대구 15.18%, 광주 11.38%	충북 30.33%, 전남 34.48%, 제주 29.21%

- 즉,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 취약가구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필요
- 따라서 동 사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계속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재검토 필요

1-3-1-1(계속)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한영규

### 1. 사업목표

- 시장개장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 산정시 소득·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사업주체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전체수급자 중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 추진체계 : 급여신청→조사(소득·재산, 부양의무자)→급여결정(14일 이내, 급여실시여부 및 급여내용)→급여실시
- 추진내용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 및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특례 지속 적용

### 3. 연차별 추진계획

- 예산 : 별도예산 없음(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정비·고도화됨에 따라 농어민가구특례 적용가구에 대한 실적을 바로 반영하게 되어 수치 변경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농어민가구특례적용 수급가구 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가구	500	540	108

## 5. 건의사항

- 농어업인의 기초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시 농어민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이 용이하지 않음

<b>1-3-2-1(계속)</b>	<b>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농지과	담당자	정재원(사무관)

**1. 사업목표**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추진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금관리법 제10조, 제24조의5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10년 : 사업시행 준비)
-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년 : 보조),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내용 :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무회수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5년간('11~'25년) 고령농업인 15,000호 가입목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0명				206			206
'10	사업준비				22			22
'11	500명				15			15
'12	1,000명				36			36
'13	1,500명				56			56
'14	2,000명				77			77

\* 연도별 사업규모는 누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007				72			72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 농지연금 1,007명 가입('11년 가입목표 500호)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지연금	농지연금가입율	당해연도 자원농가수/ (11~25 총 목표 농가수)×100 * 11~25 총 가입목표 : 15,000농가 * '11년 가입 목표: 500농가	%	3.3	6.7	2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고령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당초목표 500호 조기달성
    - \* '11년 1,007명(가입목표 500호 대비 201%달성)
  - 농지연금 시행결과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 추가 확보(당초 15억에서 57억 추가확보하여 72억지원)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연차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예산 확보 필요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운기 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한국마사회법 제42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 제7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주체 : (재)다솜동지복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연계)
- 자원봉사자 등으로 농어촌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 농촌지역 결손가정,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농어촌 소외계층 대상
  - 대상자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엌, 화장실 등 수리
    - \* 화장실, 부엌, 지붕, 도배, 장판 등 주택상황에 따라 가장 시급한 부분 개보수
- 농어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생활 홈 조성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홈 조성
    - \* 2011년 충북 괴산군 월문리 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 실시 : 3가구 입주
- 사업규모 : 10억원(마사회 특별적립금)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비예산) : 10억원(마사회특별적립금)
  - \* 사업비 규모 : ('10)6억원 → ('11)10억원 → ('12p)15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65				6			6
'11	309				10			10
'12	375				15			15

\* 마사회특별적립금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09				10			10

\* 마사회특별적립금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8가구 초과 달성 : 총 309가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영세·고령 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어촌 집 고쳐주기 실시	다솜동지복지 재단 자료확인	호	301	309	1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민간단체·자원봉사자·지역대학 등과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민관학 협력 복지사업 모델로 활성화
-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사업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 미흡한 점

- 자원봉사를 활용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관리 및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추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건의사항

- 농어촌 취약계층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시범 사업 실시
- 향후 주택개선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필요

1-3-2-3(계속)	경영이양 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박영근

### 1. 사업목표

-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지원 및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총사업비 : \_ (“11년까지 기투자액 : 3,100억원, 68천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요건 : 고령 농업인(65~70세)이 농지를 60세이하 전업농 등에게 경영이양 할 경우 보조금(매월 25만원/ha) 지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 ‘11년 이후 연도별 신규 경영이양 면적 3,000ha 달성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00	3,392	-	-	-	-	-	3,392
‘10	4,000	699	-	-	-	-	-	699
‘11	3,000	623	-	-	-	-	-	623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3,000	659	-	-	-	-	-	659
'13	3,000	704	-	-	-	-	-	704
'14	-	698	-	-	-	-	-	69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877	593	-	-	-	-	-	593

※ '11년도 예산 623억원 중 재해대책비로 △30억원 전용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1인당 경영이양 면적은 0.9ha로 목표 대비 12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영이양 직불제	1인당 경영이양 면적 달성율(%)	$(1인당\ 경영이양면적 \div 1인당\ 경영이양\ 목표면적) \times 100$	ha	0.75	0.90	120

※ '11년 신규 경영이양자 3,186명, 이양면적 2,877ha

#### 5. 자체평가

○ 잘된 점

-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최근 5개년 실적 : ('07) 113억원 ('08) 131 ('09) 324 ('10) 540 ('11) 593
-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에 기여
  - 사업 시행기간인 '97년~'11년도까지 9만4천7백명에게 2,84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연간 3,009천원의 소득지원
  - '11년도는 신규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3,186명에게 1인당 평균 2,709천원의 소득 보전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 대상자를 기존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서 45세 이하 농업인(3년이상 농업경영)까지 확대(2.25)
  - ※ 양수 대상자를 57천명에서 104천명으로 확대
- 경영이양직불 사업 참여의사 조사(연중) 및 고객만족도 조사(10월)
  - 65~70세의 사업 대상 고령농업인 259천여명의 전수 상담 실시
  - 기 사업참여 농업인(1,300명) 대상 제도개선 사항, 만족도 등 조사
- 생활 체감형 홍보를 통한 고령 농업인의 사업 참여 촉진
  - 좌담회(854회 21천명) 및 찾아가는 고객센터(48천명) 운영
  - 지하철 동영상(9월), 정책홍보만화(3편), 리플렛 21만부 등 제작 배포
- 미흡한 점
  - 고령농업인의 자경 의지가 강하고, 영농 편리성 증대 등의 사유로 신규 경영이양 실적이 목표 대비 다소 부진하였음
    - 신규이양 실적 : 목표 3,000ha 대비 신규이양 2,877ha(실적율 96%)
    - 집행실적 : 당초예산 623억원 대비 집행금액 593억원(실적율 95%)

1-3-3-1(계속)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당자	박종성 사무관

## 1. 사업목표

-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의 안정된 사회 참여 유도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어린이집 기능보강 : 단년도 계속사업('91 ~ )
  - 농어촌지역 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 : 단년도 계속사업('09 ~ )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군·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제도개선(보건복지부) → 사업추진(시·군·구)
- 사업추진 내용('11년)
  - 사업 지원대상 :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 어린이집 신축, 군관사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민간시설 매입,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
    -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 사업 규모 : 25개소\*
    - \* 국공립신축 8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7개소, 농어촌 소규모 10개소
  - 지원 금액 : 시설 신축비 지원(국비 198백만원/개소), 공동주택 의무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지원(국비 25백만원/개소)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산어촌 어린이집 확충 계획('12 ~ '15년) 및 실적('11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3	7,595		6,581		9,656		20,789
'11	25	910		1,404		1,794		4,109
'12	23	910		1,829		2,219		4,959
'13	25	1,575		1,116		1,731		3,757
'14	30	2,100		1,116		1,956		3,982
'15	30	2,100		1,116		1,956		3,982

\* '13년부터 농어촌 소규모어린이집의 지원액을 150백만원/개소(국고보조율 70%)으로 늘리고, 지원개소수도 15개소('13), 20개소('14 ~ )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중(농림수산식품부)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억원)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	9		14		18		41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 당초 22개소 지원 계획이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내시를 통해 어린이집 3개소 추가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어린이집 확충	농산어촌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시설확충 교부건수	개소	22	25	113.6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확보
- 미흡한 점 : 농어촌 지역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대부분 이어서, 국공립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 없음

1-3-3-2(계속)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조형주 주무관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도모
-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소득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및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47억원('11년, 국비)
- 사업규모 : 어린이집 이용 5세아 96천명('11년, 농어촌 28,689명)
- 사업내용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 \*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소득수준 무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부부합산소득 25%차감하여 소득인정액 반영)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 기초단치단체별 차등보조율 적용(서울 10~30, 지방 40~60)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8			2,265		2,291		4,556
'10	122			1,218		1,218		2,436
'11	96			1,012		1,012		2,024
'12	-			-		-		-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			-		-		-
'14	-			-		-		-

\* 농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을 포함 전국단위의 만5세 보육료보육료 지원 예산임

\* 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96			1,047		1,073		2,120

-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예비비 (35억원, 국비기준)을 추가집행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보육통합정보시 스템 통계자료	%	70	73	107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전체 만5세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를 목표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 '11년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농산어촌 지역 만5세아 지원

- 특히, 만5세 누리과정 도입('12년 3월 시행)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교육내용을 일원화하여 적용 및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보육료 지원 추진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3-3(계속)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박인택 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업인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를 통한 농어촌 사회 활력 유지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제18조(농어촌 여성 복지증진),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
- 지원내용
  - 시설 이용시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70%지원 (만5세이상 100%)
  - 시설 미이용시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45%지원 (만 5세이상 50%)
- 지원대상 :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으로서, 농지 소유 5ha 미만, 농외 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
- 사업주체 : 시·도(시·군·구)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교과부에서 통합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000	626	-	-	-	626	-	1,252
'10	41,000	316	-	-	-	316	-	632
'11	34,000	310	-	-	-	310	-	620

\* '10년은 실적, '11년 이후는 계획으로 작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8,000	245	-	-	-	245	-	490

- '11년 복지부 보육료 지원범위가 소득하위 50→70%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부 지원대상자가 복지부로 이동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목표치 86점 대비 101%P 달성(86.7점)
  - 상·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등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해 계획대비 목표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만족도	5분위 만족도 결과 중 상위 2 분위 까지만족도		86	86.7	10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업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육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 '(11)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실적 : 28천명, 245억원
  - '1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복지부 및 교과부로 통합 추진

1-3-3-4(계속)	<b>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여성가족부)</b>
-------------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김지수 사무관

### 1. 사업목표

- 지역정책 및 발전 전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확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 사업주체 : 기초지자체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광역지자체
    - 소관 기초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독려 및 지원
  - 기초지자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과제 시행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확대 추진
  - '09년 2개 → '10년 10개 → '11년 20개 → '12년 30개 → '13년 40개로 확대
  -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0개	-	-	0.6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 제고로 계획 대비 2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구 수	'11년도 지정 시군구 수	개소	10개	20개	2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지역내 여성정책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컨설팅 및 사업 이행점검 강화
  - 지자체 공무원(실무자, 관리자) 및 시민 리더들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 여성친화도시 지자체에 대한 정책컨설팅, 정책형성교육 등 실시에 힘입어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
- 미흡한 점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여성정책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국회 제출하였으나 법안 계류중
- 건의사항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지속적인 여성친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1-3-3-5(계속)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홍지영

## 1. 사업목표

-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 기반 조성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6
- 총사업비 : 750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368.3억원, 국비)
  - \* 개소당 3년간 150백만원 지원(국비50%, 지방비50%)
- 사업규모 : 1,000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추진내용
  - 건강생활 활동 실천(게이트볼, 생활체조, 노인공동식생활 프로그램 등)
  -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원예, 한글, 무용 등 치매예방활동)
  - 노년 안전생활환경 정비(계단 및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안전시설)
  - 노년에 적절한 소득·경제활동(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등)

○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국가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li> <li>○ 지도자료 지원과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li> <li>○ 마을민, 사업담당자 등 관계관 교육 등 마인드 향상</li> </ul>
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지역 정체성 확립</li> <li>○ 지역단위 홍보 네트워크 구축</li> </ul>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마을선정</li> <li>○ 자발적 참여 유도, 능력 함양 교육</li> </ul>
마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협의 마을 발전 계획 수립 추진, 운영 위원회 운영</li> </ul>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2016년까지 1,000개 시범마을 육성

- 마을당 3년간, 개소당 1.5억원 지원으로 자율적 마을 운영 기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광특회계)	기금등			
합계	1,184			29,512		29,653		59,165
'10	150			3,700		3,791		7,491
'11	148			3,675		3,725		7,400
'12	163			4,062		4,062		8,124
'13	305			7,625		7,625		15,250
'14	418			10,450		10,450		20,9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광특회계)	기금등			
'11	148			3,675		3,725		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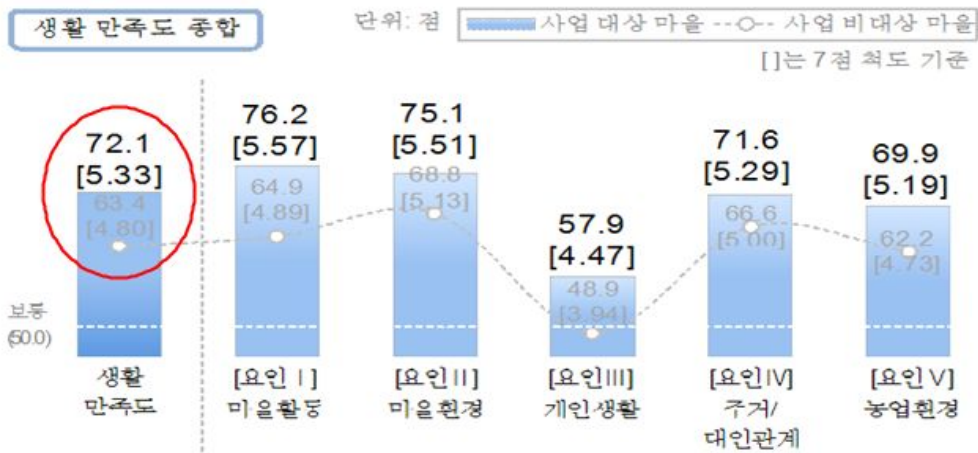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수혜자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70	72.1	103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정도, 주거환경 등 부문별 생활만족도 조사한 결과 목표치의 103% 달성

※ 본 사업을 보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비대상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대상마을과 공동된 생활실태,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63.4%로 사업대상마을과 비교결과 8.7% 다소 높은 차이가 나타남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사업 참여 노인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마을주민의 화합의 계기가 되어 활력있는 마을로 변화되었음

※ 지역사회 활력화 효과 결과 : ('10) 79.9점 → ('11) 81.7점

- 외부리서치기관 조사 결과, 농촌지역 노인들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관리에 기여함이 주된 만족사항
    - \* 만족요인 : 프로그램의 내용/형식(35%)>건강관리에 기여(26.1%)>주민과의 친밀성/협동성(18.8%)
  -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농촌노인 맞춤형(젊은 노인층, 고령층)형 건강생활체조 프로그램 제작, 보급(5월) 및 마을 지도자 교육(10월)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
- 미흡한 점
- 고령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함
  -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더불어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건의사항
- 농촌 지역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이 동반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확대 필요

1-3-3-6(계속)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고용노동부)
-------------	----------------------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박상운 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업분야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예상 농어민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비 : 907백만원('11년)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제외)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국고보조율 80%)
-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내용
지자체	○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심사결과 등에 따라 예산 배정
지자체	○ 훈련기관·교과내용, 시설·장비 등을 검토한 후 훈련 과정을 승인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부에 통보
지자체 및 훈련기관	○ 훈련실시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 체결 및 훈련생 선발(지자체) ○ 훈련 실시(훈련기관) - 훈련생에 대해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51	4,687				1,204		5,891
'10	421	893				229		1,122
'11	425	907				233		1,140
'12	430	934				240		1,174
'13	435	962				247		1,209
'14	440	991				255		1,24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76	749				213	69	1,03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취업률은 33.0%로 목표치 대비 74.2%의 달성도를 보임
  - 훈련참여자 만족도는 82.8%로 목표치 대비 103.5%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수료후 취업자수 (조기취업 포함) /수료자수(조기취업 포함)] * 100	%	44.5	33.0	74.2
	훈련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80.0	82.8	103.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훈련참여자 만족도 달성을 통해 농어민지역 실업자의 직업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
- 미흡한 점 : '11년도 취업률의 경우 목표치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수료자  
취업률은 산정기준이 훈련종료 후 6개월까지 취업한 자로, '11년도  
최종 취업률은 '12.6월말 이후에 산정되는 바, 최종 취업률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박인택 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고 100%)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교육대상자 모집(지역농협) → 예산신청 및 배정(농협중앙회) → 교육진행(지역농협) → 추진실태점검(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교육완료·보고(농협) → 만족도 조사(농협중앙회) → 평가회(농협중앙회) → 국고정산·사업완료보고(농협중앙회)
- 사업 규모(사업량) : 1,100명
- 사업 내용
  - 기초농업교육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등 실시(581명, 750백만원)
  - 1:1 맞춤형 농업교육 : 한국어 소통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며,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655명, 426백만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50	68						68
'10	1,199	12						12
'11	1,100	12						12
'12	1,100	12						12
'13	1,400	15						15
'14	1,550	17						17

\* '10년은 실적, '11년 이후는 계획으로 작성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236	12	-	-	-	-	-	1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성과목표인 1,100명 수료 대비 112%P 초과달성(1,236명)
  - 이민여성들이 영농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도우미 서비스 실시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정 영농교육	교육참석 결혼이민여성수	수료인원	명	1,100	1,236	112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 완료 후 워크샵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의 개선점을 발굴·보완하고, 교육 담당자의 사전 교육 및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
  - 이민여성들의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간 동안 보육도우미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임

1-3-4-2(계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여성가족부)
-------------	---------------------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문은지 주무관

### 1. 사업목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가족교육,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08.9월 제정, '11.4월 개정)

###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조기적응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 촉진
  -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을 적극 발굴, 지속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 사업시행 절차 : 여성가족부 계획수립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집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단년도 계속사업('06~)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3,838	6,9530		223,368
'10	159개소				8,278	3,645		11,923
'11	200개소				12,858	5,114		17,972
'12	200개소				42,933	19,661		62,594
'13	200개소				44,221	20,251		64,472
'14	200개소				45,548	20,859		66,40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00개소				12,858	5,114		17,972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결과보고서	천명 (연인원)	1,305	1,507	11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한국문화이해 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등 확대
  - 방문교육서비스확대(방문지도사 '10년 2,240명→ '11년 3,200명)
- 다문화가족 내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강화
  - 한국생활 안내, 통번역·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10개 언어)' 개설 및 가족갈등·해체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
- 자녀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좋은부모 교육'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시범 제공 등
  - 취약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 지도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b>1-3-4-3(계속)</b>	<b>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여성가족부)</b>
--------------------	-------------------------------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조은영 주무관

### 1. 사업목표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발달 등 단계적 성장 지원을 통해 장래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08.9월 제정, '11.4월 개정)

###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배치,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 사업시행 절차 : 여성가족부 계획수립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집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단년도 계속사업('09~)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500	8,643		29,143
'10	100명				2,154	687		2,841
'11	200명				4,418	1,921		6,339
'12	200명				4,418	1,921		6,339
'13	210명				4,639	2,007		6,646
'14	230명				4,871	2,107		6,97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00명				4,418	1,921		6,339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결과보고서	천명	1,305	1,507	11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문화 언어지도사 확대('10년 100명 → '11년 200명)를 통한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강화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1-3-5-1(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사고·질병 및 취약농가에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추진 근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 → 농업인 신청(농업인 → 농협) → 도우미 선정 및 파견(지역농협) → 임금 신청(도우미)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농협)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 사업규모(사업량) : 총 28천 가구(영농 15천 가구, 가사 13천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
    - 영농도우미 : 1일당 52,000원(8시간 기준), 가사도우미 : 1회당 10,000원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자부담 30%, 최대 10일
    - 가사도우미 : 국고 70%, 농협 30%, 최대 12회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9	323	-	-	-	-	139	462
'10	30	65	-	-	-	-	28	93
'11	28	65	-	-	-	-	28	93
'12	25	63	-	-	-	-	27	90
'13	28	65	-	-	-	-	28	93
'14	28	65	-	-	-	-	28	9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8	65	-	-	-	-	28	93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고객만족도 목표치 92% 달성하여, 당초 목표치 대비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취약농가 인력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고객만족도	5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로 상위 2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92	92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영농도우미 지원 조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조건: ('10) 10일 이상 입원 → ('11) 입원일수(5~10일)에 따라 차등 지원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1-3-5-2(계속)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리플렛, 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여 지원대상 누락 등 방지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워크숍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참석 대상 파악(지자체→농식품부) → 워크숍 추진(농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복지시책 수혜자)
  - 사업 규모 : 홍보리플릿 40만부, 워크숍 2회
  - 지원금액 및 형태 : 60백만원, 직접 수행(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유아 양육비 등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공단 및 농협에 배포
    - 복지시책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제고,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워크숍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식)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식	2.0	-	-	-	-	-	2.0
'10	1식(워크숍 홍보물)	0.2	-	-	-	-	-	0.2
'11	"	0.6	-	-	-	-	-	0.6
'12	"	-	-	-	-	-	-	-
'13	"	0.6	-	-	-	-	-	0.6
'14	"	0.6	-	-	-	-	-	0.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식)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식	0.6	-	-	-	-	-	0.6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업인 복지시책 담당자 업무처리 역량제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 복지시책 담당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목표 달성(4월, 11월)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업인 대상 복지시책을 리플릿(상·하반기 총 40만부), 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하여 지원대상 누락 등 방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지자체 담당자 대상 워크숍 추진	워크숍 추진 실적 (내부 보고용)		워크숍 추진	워크숍 추진 (2회)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건강·연금공단 복지업무 담당자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업무처리 역량 제고, 농어업인 복지시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담당자간 네트워크 형성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1-4-1-1(계속)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 병 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농어촌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54개소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시·군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6	56	-	-	-	28	24	108
'10	-	-	-	-	-	-	-	-
'11	54	14	-	-	-	7	6	27
'12	54	14	-	-	-	7	6	27
'13	54	14	-	-	-	7	6	27
'14	54	14	-	-	-	7	6	2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4	14	-	-	-	7	6	27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례 발굴 및 배포, 전국단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동체회사에 대한 인식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치 대비 20.5%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농어촌 공동체회사 개수	계획 대비 실적	개	1,210	1,458	120.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으로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을 이루어 농어촌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함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지자체 관계관 회의 개최('11.2월)
- 창업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센터' 개설('11.2월) · 운영
  - 공동체회사의 조기정착 및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 보급, 홍보 및 교육 등 강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대상 54개소를 선정('11.3월)하여 시 제품 개발 ·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4월)
  - 지자체 공무원, 공동체회사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모색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실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 제작·배포('11.4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실태조사('11.5월)를 실시하여 조직형태, 유형, 고용, 매출액 등 조사(139개 시·군 443개소)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11.6~12월)
    - 공동체회사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 농어촌 공동체회사 추진현황 현장점검을 실시('11.7, 11월)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 현황 점검,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전략 컨설팅 ('11.10~11월) 및 역량강화 교육(12월) 실시
    - 유통, 마케팅, 경영관리 등 6개 분야 공동체회사 14개소 컨설팅 실시
    - 회계 및 세무관리, 공동체회사 성공사례 등 교육 실시
  -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잠재적 창업 희망자들에게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례집 제작·배포('11.12월)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b>1-4-2-1(계속)</b>	<b>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b>
--------------------	--------------------------------------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배영일

### 1. 사업목표

- 우리사회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 총사업비 : 1,615억원('11년도 예산 기준)
- 사업규모 : 일자리창출사업(13,877명)
- 지원형태 : 직접, 민간보조, 자치단체 보조, 출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본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사회적기업진흥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68,985명			8,220				8,220
'10	10,108명	-	-	1,503	-	-	-	1,503
'11	13,877명	-	-	1,354	-	-	-	1,354
'12	15,000명	-	-	1,760	-	-	-	1,760
'13	15,000명	-	-	1,798	-	-	-	1,798
'14	15,000명	-	-	1,805	-	-	-	1,805

<시행계획 추진실적>

- '11년 농어촌분야 전문(특화) 지원기관 운영-한국농어촌공사, 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공동 수행
- '11년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3개소 발굴, 인증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전환 매뉴얼 제작, 배포(900부)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개최(4회), 아카데미 실시(5회)
- 농산어촌형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홍보책자 발간('11.3.11)
- 농어촌공동체회사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11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11	10,260명	-	-	1,354	-	-	-	1,354

- '11년부터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예산 교부, 사업공모 등이 지연되어 목표보다 짧은 기간동안만 사업이 수행되었고, 고용센터에서 계속 지원하는 기관이 재심사 탈락, 미신청 등의 사유로 지원인원 감소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인원 및 예산에 대하여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해당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분야 전문(특화) 지원기관 성공적 운영(금년도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에 따라 농식품부에 직접 수행)
  - : 완주지역에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작년도 인증기업 1개소, 예비기업 3개소 발굴

1-4-3-1(계속)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기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농어업인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 농·수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
  - 농어업인의 활용도가 높은 농·수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여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대상에서 누락 방지
- 추진 근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농·수협 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 복지서비스 방안 마련(농식품부, 타부처)
  - 농·수협 시달(각 부처→농·수협) → 농어업인 전파(농협→농어업인)
- 사업내용
  -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농업인 복지사업 실시
    - ('11년실적) 500개소 → ('12년계획) 520개소
  -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조합원 및 주민
    - 사업 규모 : 50개 공연단체, 600회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간접지원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 문화순회공연
    - ('11년실적) 600회 → ('12년계획) 620회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횟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	-	-	-
'10	484/450	-	-	-	13	-	-	13
'11	490/450	-	-	-	24	-	-	24
'12	500/500	-	-	-	미정	-	-	-
'13	520/520	-	-	-	미정	-	-	-
'14	550/550	-	-	-	미정	-	-	-

\* 지역문화복지센터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문화공연순회공연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용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횟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00/500	-	-	-	24	-	-	24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복지센터	시설, 프로그램 기준에 의거 평가	개소	490	500	102.0
	농어촌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	현지실태조사 및 설문 조사	횟수	450	600	133.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농협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복지·문화 등 종합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제2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계속)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담당자	구영실 최영진 서기관 주무관

## 1. 사업목표

-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 인프라 및 돌봄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초·중학교를 육성하여 농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확산
- 추진근거 :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추진계획 수립(장관결재, '08.11)
  - 전원학교 육성 사업 추진계획(장관결재, '09.6.1)
  - 농산어촌 전원학교 확대방안(장관결재, '10.3.8)
  - '11년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계획(장관결재, '11.2.24)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 총사업비 : '11년까지 기투자액 : 2,236억원
  - \* 사업비 지원
    - 전원학교 : ('09) 790억원 → ('10) 513억원 → ('11) 405억원(돌봄 278억원)
    - 연중돌봄학교 : ('09) 298억원 → ('10) 230억원 → ('11) 전원학교로 통합
- 사업규모 : '11년까지 지정 학교수(570교)
  - \* 농어촌 전원학교 지정(누적)
    - 전원학교 : ('09) 110교 → ('10) 140교 → ('11) 570교(신규48, 돌봄382<sup>주1)</sup>)
    - 연중돌봄학교 : ('09) 378교 → ('10) 383교 → ('11) 전원학교로 통합
  - 주1) 연중돌봄학교 383교 중 '11년에 충북 원남중과 속리중이 속리산중학교로 통합하면서 지정 학교수 382교로 변경
- 지원형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원조건 : 특교 100%(시·도교육청 대응투자 180억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통합하여 전원학교로 운영 및 전원학교 추가 지정(48교)

- 신규 중학교 공모선정 30교, 통폐합본교 18교 지정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52교					1,148		1,148
'10	493교					743 (특교653)		743 (특교653)
'11	552교					405 (특교315)		405 (특교315)
'12	78교					57 (특교57)		57 (특교57)

※ 사업규모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 학교수 기준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52					405 (특교315)		405 (특교315)

※ 사업규모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 학교수 기준

- 당초 전원학교 110교를 선정하여 '11년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지원확대 요청(30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과 연계한 통폐합본교 지정(48교) 및 유사사업 통합(연중돌봄학교 382교) 등으로 총 570교 운영

- 다만, '11.10월 선정한 통폐합본교 18교는 '12년부터 예산지원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만족도 79.7%로 목표 대비 109% 달성

→ e-러닝교실 수업 및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11년에는 79.7%로 목표대비 109% 달성하였으며, 특히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농어촌 전원학교 만족도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만족도 설문조사	%	73	79.7	109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11년에 전원학교 48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농어촌 학교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전원학교에 돌봄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시너지 제고
-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만족도 79.7%로 농어촌 학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및 신뢰형성

### ○ 미흡한 점

- '11년에 신규로 지정된 전원학교에 대한 e-러닝 교수·학습지원시스템(파스텔)의 체계적인 연수 부족으로 '12년에는 파스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연수 체계 구축 예정

### ○ 건의사항 : 해당없음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정민웅주무관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인근대학, 지자체, 군부대 등 지역사회의 우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유도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시·도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을 전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을 지방이양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강화
- 사업비('11) : 51,486백만원(지방비 100%)\*
  -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금액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기준에 의해 일괄 교부)
- 지원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 사업규모 : 140개 시·군 (86개 군 및 54개 도·농복합시)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문화·예술 등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점진적 확대
-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농어촌 지역 우수강사풀 구축 등을 통해 강사 수급문제 해결 및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학급,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162					51,486		51,486
서울	.					.		.
부산	111					333		333
대구	70					210		210
인천	269					807		807
광주	.					.		.
대전	.					.		.
울산	117					351		351
경기	2,045					6,135		6,135
강원	1,900					5,700		5,700
충북	1,163					3,489		3,489
충남	2,162					6,486		6,486
전북	1,921					5,763		5,763
전남	2,745					8,235		8,235
경북	2,563					7,689		7,689
경남	2,096					6,288		6,288
제주	.					.		.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 측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 참여율	참여학생수/전체학생수 ×100	%	72.4	72.4	100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윤석훈

### 1. 사업목표

- 농어촌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학습시간 확보로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
- 추진근거 : 없음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5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45억원(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기숙사 시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숙형고교 150개교 선정(시설비5,551억원 지원)
  - 국정과제 목표를 2년차에 완료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 '08년 82개교(3,191억원), '10년 68개교(2,378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3,020		3,020
'10	150교					2,878		2,878
'11	150교					45		45
'12	150교					67		67
'13	150교					30		30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50교					45		45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 55%(목표) → 63.2%(달성)
  -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이 증대됨으로써 기숙형고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상승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	55	63.2	11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숙사비 경감
    - ※ 기숙형고교 월 평균 기숙사비 : 운영전 294천원 → 운영후 110천원
- 미흡한 점
  - 기숙형고교 150개교 중 8개교 기숙사 미개관('11.12월 기준)
    - ※ '12.3월 중 모두 개관 예정
- 건의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김석사무관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8~'09.11
- 사업비('09) : 619억원(국고 250억원, 특교 369억원)
- 사업규모 : 9개 시·도교육청
- 지원형태 : 국고 및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사업 대상 공모에 따른 지원
- 지원내용 : 군(郡) 지역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농산어촌 학교 교육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구분	사업내용	선도군	재정지원	통폐합 내용
1유형	초·중·고 통폐합 + 병설 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신설	전남 해남군	207억원 (국고 125억원, 특교 82억원)	초·중·고 5교 통폐합, 단설유치원 1개 신설
2유형	초·중·고 통폐합	충북 괴산군	202억원 (국고 125억원, 특교 77억원)	초·중·고 6교 통폐합, 1교 신설
3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 신설	인천 강화군 등 7군	각 30억원 (특교 210억원)	단설유치원 각 1개 신설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

-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으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육성
- 시·도교육청의 군단위 학교 재배치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및 다목적시설 설치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 '09년 지원사업비 교부완료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대통령 보고('09.2) 및 추경예산 250억원 확정('09.4)
-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 수립('09.8)
- 사업 대상 공모('09.8~10), 선도군 선정 및 사업비 교부('09.11)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예산교부 완료 된 사업으로 지역 내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0.10.1), 군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및 다목적시설 설치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화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적정규모학교육성선도군지원	군별 통폐합 실적	실적조사	군	9	9	100.0

담당부서	한국농수산대학	담당자	한 소 자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어업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학제개편, 국내·외 장기현장 실습교육 내실화 등으로 우수한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기여
- 추진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사업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사업규모 : 재학생 960명(8개학과, 3년제), 전공심화과정 60명, 졸업생 2,55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2,558백만원(국비 100%)
- 지원조건 : 수업연한 2배 동안의 의무영농·영어 활동 종사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 사업내용
  - 우수 신입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인프라 확대
    - 태블릿 PC 300대 도입 및 SNS 운영, 전자도서관 확충 등
  - 학생의 수요와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로 현장감 제고

-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도활동 강화
  - 졸업생 아이디어 과제 지원사업, 졸업생 역량강화 연찬회, 품목별 해외연수, 졸업생 현장방문 간담회 등 추진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창업 후계농 및 졸업생 위주의 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659			700				700
'10	3,277			136				136
'11	3,578			125				125
'12	3,938			133				133
'13	4,268			162				162
'14	4,598			144				14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578			125				125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졸업생 영농정착률	(영농정착 졸업생 수 / 의무영농 대상 졸업생 수) × 100	%	92	96.5	105
	졸업생 농가평균소득률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 / 농가 평균소득) × 100	%	240	203	85
	수혜자 만족도 (재학생+졸업생)	5점 척도 전후 1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점	80.0	78.4	98

- 졸업생 농가평균 소득률 : 농가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축산계열 소득이 구제역 피해로 인해 '09년 보다 1,610만원 감소함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 후계농어업인 육성 교육을 통한 우수 농어업인 배출
  - 분야별 교과목 확대 및 교수 평가·승진 제도 강화, 현장실습 네트워크 강화 : SNS 운영, 재학생 홍보도우미 선발 등
  - 2011년 267명의 졸업생 배출 및 의무영농이행률 95.8% 달성
    - ※ 졸업생 지원 강화 : 영농정착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실시, 졸업생 우수 아이디어 산업화 지원, 우수 영농정착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 2012학년도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제도개선 및 학생 선발
  -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강력한 영농·영어정착의지 평가 강화
    - ※ 입학사정관제 선발에서 영농·영어기반 자격 제외
  -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선발을 위해 정시 모집 시 수능성적 반영
    - ※ 농수산계고와 일반계고 출신자간 수능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보완
  - 2012학년도 신입생 8개학과 330명 선발(1,499명 지원, 경쟁률 4.54:1)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3개과 60명 모집 및 운영
  - ※ 전공심화과정 모집 : 지원인원 69명, 경쟁률 1.15:1, 3학과 60명 모집·선발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영어교육정책과	담당자	채홍준 사무관

### 1. 사업목표

- 영어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등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영어 공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영어교육 격차 해소

### 2.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08년 ~ 계속
- 지원형태 : 국고, 지방비(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시행주체 : 교과부, 시·도교육청, 학교
- 사업절차 : (교과부) 기본 추진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 교육청별 추진계획 수립 ⇒ (단위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50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7,128백만원(국고), 1,997백만원(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60% : 국고 40% 투자
  - 지원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 원어민 대학생을 초청하여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쳐(teach) 영어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어민 장학생들이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게 함으로써(learn) 미래 친한 지한 인재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94			110		757		867
'10	596			39		54		93
'11	502			71		147		218
'12	496			-		184		184
'13	500			-		186		186
'14	500			-		186		186

\* '12년부터는 국고지원액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예정 / 농산어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증가로 TaLK 장학생 배치 규모 축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02			71		147		218

○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수업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746개교, 44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400백만원(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보조율 100%), 부족분 대응투자 유도
- 지원내용 : 원어민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에게 원격 화상 수업을 통한 실용영어교육 기회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61					48		48
'10	611					24		24
'11	650					24		24
'12								
'13								
'14								

\* '12년부터는 사업 개편을 통해 '농산어촌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부로 지원할 계획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746					24		24

○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18만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4,000백만원(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보조율 100%), 부족분 대응투자 유도
- 지원내용 :
  - 학교 근무 원어민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영어캠프)을 무상으로 지원
  - 해외 현직 교사를 초청하여 방학 중 영어캠프를 국내 영어교사, 교·사대 예비 교사 등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체험과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000					80		80
'10	170,000					40		40
'11	180,000					40		40
'12								
'13								
'14								

\* '12년부터는 사업 개편을 통해 '농산어촌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부로 지원할 계획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80,000					40		40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TaLK 장학생 포함)가 배치된 농어촌 학교 수는 3,780교로, 목표(3,250교) 대비 116% 달성
  - 시·도교육청별 실용영어중심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확대(학교수)	원어민 교사 배치 농어촌 학교수	교	3,250	3,780	116.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 등 상대적으로 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우선적 투자를 통해 영어교육격차 완화 노력 시도
    -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향상을 위해 TaLK 장학생을 활용한 체험중심·활동중심의 재미있는 영어학습 등 농산어촌형 영어교육 모형 개발의 계기 마련
  - 미흡한 점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역별 영어교육격차가 커지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자신감이 감소하는 문제
      - \* 학업성취도(영어)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 비율('10) : 고2 전국 평균 7.6% → 서울 3.7%, 광역시 6.5%, 중소도시 7.2%, 읍면지역 12.6%
- ⇒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보다 과학적 지원방안 수립 등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

2-2-2-1(계속)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황오일 주무관

### 1. 사업목표

- 다문화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적응 및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도모
-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비('11) : 5,800백만원(국고5,000백만원, 특교800백만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 사업추진절차 : 사업 기본계획 수립(교과부) →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금 교부(교과부, 한국장학재단) → 사업추진(시도교육청, 대학교)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시도교육청, 대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거점학교(80교) 및 멘토링(6,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거점학교(교당 1,000만원), 멘토링(시간당 12,000원)
  - 지원조건 : (거점학교)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지도 및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멘토링) 대학별로 선발된 대학생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습 및 상담 실시
  - 사업 주요내용
    - (거점학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기초학습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 (멘토링)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상담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거점학교60 멘토링2,500				15	6		21
'11	거점학교80 멘토링6,000				50	8		58
'12								
'13								
'14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거점학교	80교					8		8
멘토 수혜학생수	6,000명				50			50

### 4. 성과목표 달성도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거점학교 80교 지원(100% 달성), 다문화 멘토링 수혜학생 5,901명(98%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거점학교 수	시도교육청 지정 보고자료	개교	80교	80교	100%
	멘토링 수혜학생수	멘토링 성과보고 서	명	6,000명	5,901명	98%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다문화학생을 위한 거점학교 및 멘토 수혜학생수 대폭 확대

\* (거점학교 수) '10년 60교 → '11년 80교

\* (멘토링 수혜학생 수) '10년 3,700명 → '11년 5,901명

####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담당자	강순나(연구관) 최흥운(사무관) 정성훈(사무관)

### 1. 사업목표

-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의 도입, 농어촌학교의 교사 업무경감, 농어촌의 이해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

### 2. 사업내용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특정지역 및 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신규로 채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농어촌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학교업무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학교현장 조사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추진
  - 교사의 교무행정업무경감 방안(시안) 마련
- 농어촌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농어촌 교육' 관련 강좌 등 편성 권고

### 3. 연차별 추진계획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10)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입안 → ('11) 법령 개정 완료
- 농어촌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10) 정책연구 실시 → ('11) 학교현장조사, 정책토론회, 추가 연구실시 등 → ('12) 업무경감방안 발표

- 농어촌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설·운영
  - (매년)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농어촌교육' 관련 강좌 개설 권고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법령 개정 완료
  - (교사 업무경감) 정책연구 및 현장의견 수렴 완료
  - (연수프로그램) 농어촌교육 관련 강좌 개설 권고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계획대비실적	%	법령 개정	개정 완료	100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연구·개발	계획대비실적	%	1건	1건	100
	'농어촌교육' 관련 연수 편성 권고	계획대비실적	%	16개	16개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제도 도입을 위해 근거법령의 마련을 완료하였음
    - ※ 교육공무원법 개정('11. 9. 30)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11. 12. 28)
  - (교사 업무경감)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의 업무경감방안 시안을 마련하였음
  - (농어촌 교원연수) 농어촌 교원 연수 강화 권고에 따른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의 농어촌 교육 이해도 제고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농어촌 교원연수와 관련하여 '농어촌 교육' 관련 내용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 전문가 등 강사풀 및 교원연수과정 제공 필요

2-2-4-1 (계속)	<b>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b>
--------------	------------------------------

담당부서	이러닝과	담당자	정희택 연구관 최유락 연구사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및 저소득층 등 학생들에게 이러닝을 통한 보충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확보 및 교실수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콘텐츠의 활용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을 통한 시도교육청 서비스의 균형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2. 사업내용

- 개정교육과정 '11년 2학기 적용교과(15교과) 및 '12년 적용교과(3교과) 사이버가정학습 수준별 콘텐츠 개발('10.5~'12.2)
  - ※ 초5~6(국·영·수·사·과), 중2(국·사·과), 중3(국·영·수·사·과) 총 18교과
-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관리 배포 시스템 개발('11.3~7)
- 사이버가정학습 진단/처방 시스템 평가 문항 개발('11.4~'12.2)
  - ※ 개발문항 : 6,600문항
- 사이버가정학습 학력 평가 문항 개발('11.4~'12.2)
  - ※ 개발문항 : 29,700문항
- 차세대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시험 운영('11.4~'12.2)
  - ※ 3개 시도교육청(대구, 인천, 경북) 시범 구축 및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04~'11년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년부터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918		922
'10				4				4
'11				4		172		176
'12						177(4.5)		177
'13						182(4.7)		182
'14						187(5)		187

- \* 지방비 ( ) 속은 특별교부금  
 - '12년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		172		176

- 국비로 4억원, 특교로 6억원 외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성과 달성)
    - 16개 시도교육청별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학습관리를 강화하여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 (사이버가정학습 1일평균 로그인수 성과 미달성)
    - '11년 통계자료 취합 대상의 변경(기존 통계 제공대상에서 고1 제외)
      - ※ '11년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의 공통과정이 변경(초4~고1 ⇒ 초4~중3) 됨에 따라 '11년 통계자료 취합 대상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제공대상이었던 고1 학생이 제외



-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예산의 축소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시·도 교육청의 정책변화로 각종 인센티브 축소
  - ※ 사업예산 약 65억원 축소 : 24,895백만원('10년) → 18,253백만원('11년)
  - ※ 시도교육청의 각종 인센티브 축소 : 우수학생 포상제 폐지, 우수교사 수당지급 금지, 교사의 승진 및 인사이동에 반영되는 선택 가산점제 축소, 시스템노후화에 따른 속도 저하 등
- 시스템 기능개선 작업(통합로그인, 가입절차의 변경 등) 등에 따른 시스템 접속의 어려움 및 접속데이터 누락현상 발생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하는 답입형 학생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73	74.3	101.8
	1일 평균 로그인수	사이버가정학습에 로그인한 횟수의 1일 평균값	명	40만	23만	57.5

## 5. 자체평가

### ○ 잘된 점

- 사이버가정학습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지역	서울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충남
매우만족 비율	38.7%	42.5%	43.3%	55.4	52.4%	51.5%	50.5%

※ 사이버가정학습 학생만족도 조사(n=63813)중 5점척도중 최고점인 “매우 만족”으로 답변한 경우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의 비율이 높았음

- 사이버가정학습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소득수준	상	중	하
학부모 만족도점수	61.3점	63.9점	66.1점

※ 소득수준별 학부모 만족도 조사(n=13,109)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미흡한 점

- 사이버가정학습의 로그인수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2-3-1-1(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 '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시·도)
- 사업추진절차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보호자→이장경유 →읍·면·동장) → 학적조회(읍·면·동장→학교장)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읍·면·동장→보호자)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 규모 : 67,213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3. 연차별 추진계획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933	-	-	-	-	82,074	-	82,074
서울	35	-	-	-	-	53	-	53
부산	860	-	-	-	-	1,222	-	1,222
대구	800	-	-	-	-	1,160	-	1,160
인천	760	-	-	-	-	738	-	738
광주	256	-	-	-	-	400	-	400
대전	79	-	-	-	-	118	-	118
울산	709	-	-	-	-	965	-	965
경기	8,771	-	-	-	-	10,393	-	10,393
강원	5,200	-	-	-	-	4,000	-	4,000
충북	5,738	-	-	-	-	5,749	-	5,749
충남	13,119	-	-	-	-	10,151	-	10,151
전북	7,500	-	-	-	-	9,000	-	9,000
전남	14,105	-	-	-	-	13,928	-	13,928
경북	12,281	-	-	-	-	11,544	-	11,544
경남	9,225	-	-	-	-	8,834	-	8,834
제주	3,495	-	-	-	-	3,819	-	3,819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7,213	-	-	-	-	63,920	-	63,920
서울	30	-	-	-	-	42	-	42
부산	851	-	-	-	-	1,222	-	1,222
대구	500	-	-	-	-	700	-	700
인천	603	-	-	-	-	689	-	689
광주	214	-	-	-	-	234	-	234
대전	70	-	-	-	-	96	-	96
울산	450	-	-	-	-	591	-	591
경기	5,667	-	-	-	-	6,572	-	6,572
강원	5,200	-	-	-	-	4,000	-	4,000
충북	3,706	-	-	-	-	3,671	-	3,671
충남	10,489	-	-	-	-	8,103	-	8,103
전북	6,720	-	-	-	-	6,988	-	6,988
전남	14,105	-	-	-	-	13,928	-	13,928
경북	8,605	-	-	-	-	7,962	-	7,962
경남	6,904	-	-	-	-	6,119	-	6,119
제주	3,099	-	-	-	-	3,003	-	3,003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은 당초 목표대비 지원인원 기준 19% 감소되었고, 지원금액 기준 22.1% 감소되었음
- 목표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은 농어촌 인구감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지원대상인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고교생 수가 감소된 것에 기인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90	77.9	86.6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심우룡(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추진 근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추진절차 : 용자지원 세부지침 작성(재단) → 용자신청(학생) → 용자대상 추천(대학) → 용자대상 선정(재단) → 용자금 입금(재단→대학) → 학자금 대체(대학)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용자 지원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사업규모 : 총 33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출연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100%
- 용자학기 : 재학대학의 정규 학기 수까지 지원
- 상환조건 :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 '11년부터('10년 졸업자) 용자금 상환 거치기간 연장(1년→2년)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	2603(출연금)	-	-	-	-	-	2,603
'10	27	505	-	-	-	-	-	505
'11	27	605	-	-	-	-	-	605
'12	31	355	-	-	-	-	-	355
'13	31	543	-	-	-	-	-	543
'14	31	595	-	-	-	-	-	595

- '12년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50억원) 및 사업규모(4천여명) 반영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3	605(출연금)	-	-	-	-	-	605

- 한국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용자금 상환 캠페인을 전개, 회수된 상환금을 채용자함으로서 목표를 초과 달성
  - \* (용자계획) 27천명 / 945억원(재단조달액 포함) → (용자실적) 33천명 / 1,103억원
  - \* 총용자액 : 정부출연금+재단조달액(상환액 등)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학년도 수혜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대비 2.0%가 증가한 89%로 당초 목표대비 2.0%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보고서	%	87	89	102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고충·어려움을 고려한 대학생 학자금 용자 제도개선으로 수혜자 만족도 제고
- 청년 취업난을 감안하여 상환금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신입생 용자 기간을 1개월 앞당겨(3월 → 2월) 등록금 납부 전에 용자를 완료 하여 별도 대출 방지
- 미성년자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친권자 증명서 등) 및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시 추가 서류 생략(연대채무약정서 등)
- 기존 수혜자 및 용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문자메시지 (SMS) 발송을 통해 용자 수혜율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2-3-1-3(계속)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한철수(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업 후계인력과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사회 인재양성과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 42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 2. 사업내용('2012년)

- 사업기간 : 2005년부터 계속(계속사업)
- 사업규모 : 연간 7,512명, 14,468백만원
- 지원대상 : 농어업인의 자녀,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수산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금액 및 형태 : 1인당 연간 300~460만원 장학금 무상지원
- 지원조건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평균성적이 70점(80점) 이상인 자
- 지원절차 : 장학금 신청(학생)→장학생 선발(학교)→장학금 지급 (재단→학교→학생)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635명	-	-	-	494.8	-	-	494.8
'10	3,147	-	-	-	75	-	-	75
'11	3,976	-	-	-	91.2	-	-	91.2
'12	7,512	-	-	-	144.6	-	-	144.6
'13	4,000	-	-	-	92	-	-	92
'14	4,000	-	-	-	92	-	-	92

\* '12년 사업규모·금액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회계기준(예 : '12.7.1~'13.6.30)을 일반회계 기준(예 : '12.1.1~'12.12.31)으로 변경함에 따른 일시적 증가분이며, 2013년 이후는 2011년도 예산에 준해서 판단한 것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976	-	-	-	91.2	-	-	91.2

- 2011년 대학장학금 총 3,976명에게 9,125백만원 지원(완료)
  - '11.1학기 : 2,184명에게 5,386백만원 지원('11.2월)
  - '11.2학기 : 1,792명에게 3,739백만원 지원('11.8월)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원인원은 99.8%, 지원금액은 99.8%로 계획에 다소 미달
  - 지원인원 : 계획 3,984명, 실적 3,976명
  - 지원금액 : 계획 9,215백만원, 실적 9,125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 장학사업	지원계획인원 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인원 /계획 인원 × 100	%	100.0	99.8	99.8
	지원계획금액 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금액 /계획 금액 × 100	%	100.0	99	99

\* 이중수혜에 따른 반납자 발생으로 일부 미집행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0년 대비 지원인원 26.3%, 지원금액 21.6%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0) 3,147명 / 7,500백만원 → ('11) 3,976 / 9,120
  - 장학수기 공모 사업 및 국내·외 연수 사업 등 장학생 관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단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 미흡한 점 : 해당 없음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박진욱사무관 김동로주무관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우수농산물 사용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급식의 질 향상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조)
- 추진체계
  - 지원대상 학교수 및 소요액 파악(지자체, 교육청 협조) →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지자체, 교육청 협조) → 예산지원(지자체 → 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학교) → 우수식재료 사용확대(학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지원규모 : 8,578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631억원,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지원내용 : 우수농산물(현물 또는 현금)

### 3. 연차별 추진계획

- 자치단체별 급식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2011	8,400					1,631		1,631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78					1,631		
서울	519					129		
부산	194					42		
대구	93					17		
인천	311					72		
광주	204					24		
대전	152					40		
울산	96					20		
경기	1,878					363		
강원	630					52		
충북	410					33		
충남	746					170		
전북	765					77		
전남	838					268		
경북	970					147		
경남	588					127		
제주	184					50		

## 5. 성과목표 달성도

-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목표 : 8,400개교, 실적 : 8,578개교)
-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학생 건강증진,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 학교급식 개선 평가대회 개최(11.11.18, 교육청 관계자 등 400명)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달은 물론,
  - 전국 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협조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8,400개교억원) 대비 178개교 늘어나 8,578개교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수농산물 지원학교수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지원학교수	교	8,400	8,578	102

<b>2-3-2-2-①(계속)</b>	<b>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b>
----------------------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심우룡 사무관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및 농촌정착 유도
  - \* '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도)
-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지방교육청)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도·지방교육청) → 예산지원(도·지방교육청→지역 교육청→학교) → 사업시행(학교)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농과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영농과생
  - 사업 규모 : 2,87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급식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지방비(도·교육청), 자부담

**3. 연차별 추진계획**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59	-	-	-	-	2,452	615	3,067
경기	450	-	-	-	-	667	167	834
강원	370	-	-	-	-	268	67	335
충북	280	-	-	-	-	208	52	260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충남	250	-	-	-	-	143	36	179
전북	424	-	-	-	-	398	100	498
전남	420	-	-	-	-	171	43	214
경북	225	-	-	-	-	211	53	264
경남	220	-	-	-	-	290	73	363
제주	220	-	-	-	-	96	24	120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70	-	-	-	-	2,463	248	2,711
경기	450	-	-	-	-	634	33	667
강원	370	-	-	-	-	268	-	268
충북	280	-	-	-	-	166	42	208
충남	250	-	-	-	-	114	29	143
전북	414	-	-	-	-	307	-	307
전남	445	-	-	-	-	278	70	348
경북	225	-	-	-	-	272	40	312
경남	220	-	-	-	-	290	-	290
제주	216	-	-	-	-	134	34	168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인원)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0.4	100.4

2-3-2-2②(계속)	<b>자영수산고교 급식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이명준 사무관

**1. 사업목표**

-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조기양성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
- 추진체계



- 추진내용
  - 사업지원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수산계고교 재학생
  - 사업규모(사업량) : 5개고교(재학생)
  - 지원금액 및 형태 : 360백만원(지방비50%, 교육부 30%, 자담20%)

**3. 연차별 추진계획**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우수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계고등학교 자영수산학과 학생의 식비 일부를 보조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50					9.0	9.0	18.0
'10	710, 5개교					1.8	1.8	3.6
'11	710, 5개교					1.8	1.8	3.6
'12	710, 5개교					1.8	1.8	3.6
'13	710, 5개교					1.8	1.8	3.6
'14	710, 5개교					1.8	1.8	3.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717, 5개교					2.439	2.439	4.9
충남	77, 1개교					0.275	0.275	0.55
전남	535, 3개교					1.744	1.744	3.49
경북	105, 1개교					0.42	0.42	0.8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실적(717명)/목표(710명)
  - 전남도의 지원학생의 증가로 목표대비 101%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인원 수	지원계획 대비 실적	명	710명	717명	10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 수산계고교 자영수산과학생뿐만아니라 수산계고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및 국비 확보 필요



<b>2-3-3-1(계속)</b>	<b>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교육과학기술부)</b>
--------------------	--------------------------------

담당부서	대입제도과	담당자	라은종사무관/ 김건섭주무관

### 1. 사업목표

- 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수요 경감
-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류함으로써 재학기간 동안 폭넓은 간접경험 가능

###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비예산
- 사업규모 : 지역균형 선발규모 6,500명 내외
- 지원대상 : 학생 · 학부모
- 사업시행주체 : 개별대학 단위로 사업 추진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 설정
- 사업 관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 관리

### 3. 연차별 추진계획

- 비예산 사업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유도	선발학생 수	2012학년도 선발학생 수	명	6,500	6,792	104%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대학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역균형 선발 실시
- 미흡한 점
  -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부 및 대교협이 직접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지역균형 선발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건의사항
  - 대입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은 양적 확대보다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3절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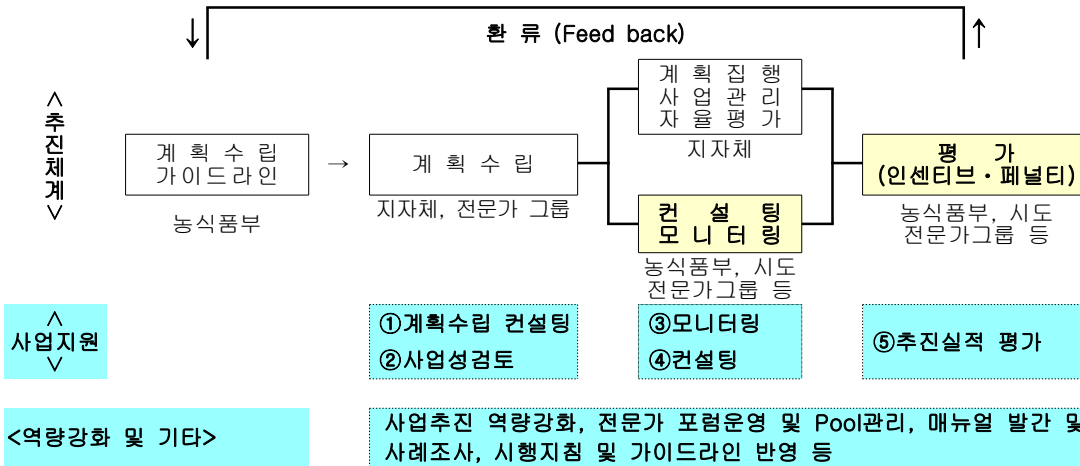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전경구(서기관)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시·군별 포괄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 지원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 규모(사업량) : 120개 시·군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시군(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 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등
- 사업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 사업평가,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모니터링, 컨설팅, 지역개발 역량강화 등
- 사업추진 절차



### 3. 연차별 추진계획

- '10년도 : 포괄보조사업 정책프로세스 마련
- '11년도 : 정책프로세스의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 시행
- '12년 이후 : 지역별 특색있는 개발 추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	931,198	-	-	931,198	399,085	-	1,330,283
2012		930,447			930,447	398,763		1,329,210
(증△감)	-	△751	-	-	△751	△322	-	△1,07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개 시군		1,861,645			797,848		2,659,493
'11	120개 시군	-	931,198	-	-	399,085	-	1,330,283
'12	120개 시군	-	930,447			398,763		1,329,210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자체 사업추진 체계정비 및 포괄보조 5개년 계획수립 비율
    - 수립대상 :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 수립실적 : 118개 시·군
  - 주민만족도 조사((주)TRC, '11.11.9~'11.12.19일)
    - 대상 : 120개 시·군, 334명
    - 조사결과 : 종합점수 78.8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일반농어촌개발 (포괄보조)관리	지자체 사업추진 체계정비 및 계획수립비율	{{체계정비 시군/120)+(계획수립 시군/120}}/2	시·군	80	98.3	122.9
	주민 만족도 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조사	%	83	78.8	94.9

- 지자체 사업추진 체계정비 및 계획수립비율 지표 측정 대상 시·군을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에서 소관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 120개시군)으로 수정 산출함에 따라 122.9%로 나타남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포괄보조제도 취지에 맞도록 시·군별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시도
- 전문가 그룹(11개팀 33인)에 의한 상시모니터링 및 별도의 컨설팅 제도 신규도입으로 문제의 조기진단 및 해결의 기틀 마련

### ○ 미흡한 점

- 다수의 사업장(970여개)을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 추진으로 일부 집중점검 난이

3-1-2-1(계속)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운기(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로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 2. 사업내용

- 농어촌 마을건설·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민간까지 확대
- 생활편의시설, 마을조성 등 다양한 지역개발관련 사업에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

### 3. 연차별 추진계획

-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1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 성과평가('11.2월)시 가점 부여
    - 사업평가 시, 가점 부여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혜택부여(평가결과 '12년 예산 지원에 반영)
  - 민자 유치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예산 지원우대
    - '12년 신규사업 평가('11.4~5월)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 53개 전원마을사업장 중 민간주도 사업장 39개
  - '10년 종료 23개 지구 중 민간주도 사업장이 10개 지구(43.5%)로 과소 '11년 민간사업자 비율 증가
    - \* '11년 선정 지구 민간사업자 참여비율 66.7%(15개 지구 중 10개 지구)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민간사업자 참여비율	(민간사업자 사업장수 / 전체사업장수) × 100% *전원마을조성사업대상	%	65.1	73.6	11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평가 시 민간사업자 참여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12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11.4) 시 민간자본 유치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에 가점 부여,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 \* '12년 신규 전원마을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참여비율 71.4%(7개 지구 중 5개지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 성과평가('11.2월) 시 민간사업자 참여 사업에 가점 부여

### ○ 미흡한 점

- '12년 예산안 편성('11.6월) 후 '11년 성과평가 결과('11.6)를 결정, 예산편성과 연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부여를 통한 활성화 유도 미흡
- 개선 방안 : 성과평가 주관기관(지역발전위원회)과 협의 예산안 편성(6월) 이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추진

3-2-1-1(계속)	신규마을조성 및 마을재개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운기(사무관)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2조(생활환경정비), 제101조~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규모 :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 주요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제안(제안자→ 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시군) → 기본계획승인(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 → 시행계획승인(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3.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까지 200개 마을 조성추진
  - \* '04~'06년 47, '07~'09년 46, '10년 16, '11년 15지구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		107,804			46,201		154,005
'10	119	-	22,345	-	-	9,576	-	31,921
'11	133	-	20,427	-	-	8,754	-	29,181
'12	153	-	21,040	-	-	9,017	-	30,057
'13	173	-	21,671	-	-	9,288	-	30,959
'14	200	-	22,321	-	-	9,566	-	31,88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24	-	18,015	-	-	7,721	-	25,736

- '11년 당초계획 대로 15개 신규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추진
- '10년 국정감사 결과 사업추진 부진지구는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지시가 있어, 일제조사 후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사업 취소(전원 마을조성사업 건설화 도모)로 당초계획 대비 사업지구 규모 9개소 (133→124) 감소 및 사업비 3,445백만원(29,181→25,736) 감액집행
- \* '10년까지 109개소, '11년 계획 15개소, '11년 실적 15개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0년에 당초계획 대로 15개소의 신규사업 추진
  - '10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전원마을조성사업 건설화('10.10월)
    - '11년 전원마을 일제조사 실시('11.3월)후 사업추진 미흡 지구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10개 지구 사업취소 등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건설화 도모
    - \* '11년 부진사업 10개 지구 취소, 376명 도시민 유치 감소요인 발생

- 사업 건설화를 위해 최소한 10개 지구 도시민유치 실적(376명) 고려 시, 도시민 농어촌유치 실적은 당초목표 대비 실적은 105.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신규마을조성 및 마을재개발	도시민 농어촌유치(명)	'04년부터 신규마을조성 도시민 유치자 수 (누계)	명	3,360	3,174	94.5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분양미흡 지구의 집중관리로 도시민 유치효과 제고
  - 분양률 50%미만 16개 지구에 대해 분기별 분양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 3/4분기 중 30세대 추가분양 분양률(35%) 제고
- 베이비부머 은퇴 및 웰빙 수요 등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현장 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 실현가능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추진
  - 현장점검 2회, 전문가 토론회 2회 및 지자체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11월)하는 등 상황변화 대처와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발굴

\* 제도개선 과제 : 소규모마을조성, 분양촉진, 기반시설 사업기간 단축, 보조지원액 현실화, 입주민 소득창출 등 12개 과제

### ○ 미흡한 점

- 사업후보지 대상 요건(조합구성 등) 강화로 신규사업 규모 축소가 우려되므로, 부적격 사업 퇴출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되,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후보지 대상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 도모 필요
- 신규 사업선정 검토를 강화, 사업성 있는 지구 선정 필요

3-2-2-1(계속)	소 생활권 종합정비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사무관)

###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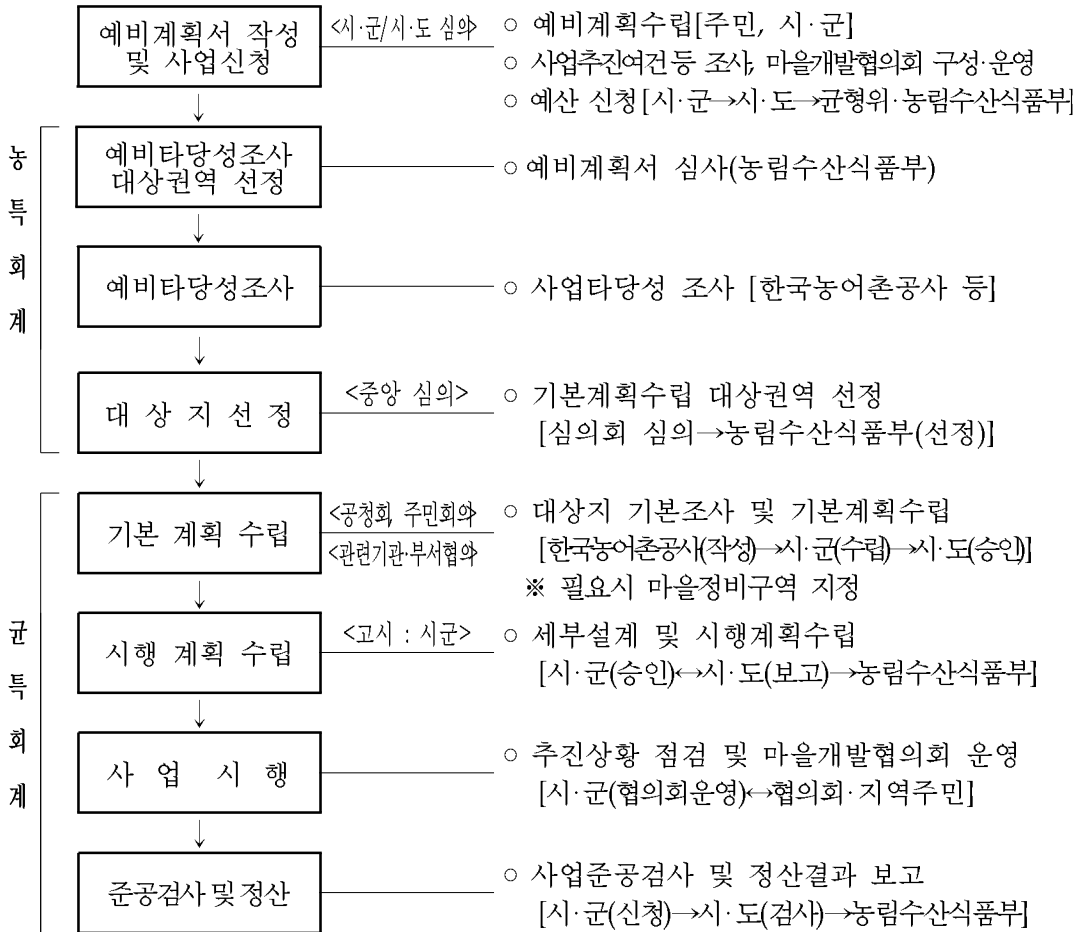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 ~ 70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10 가구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 사업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주차장 등
  - 지역소득증대 :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산어촌체험시설, 농어업 기반시설 등

- 지역경관개선 :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훈련, 마케팅, 운용 프로그램개발,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 사업추진절차



3. 연차별 추진계획

- '04 ~ '10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 '11년 이후 : 농·산·어촌을 통합,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기존사업은 사업비 지원하여 추진
- 기존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마을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1		237,452			101,766		339,218
권역	89		55,354			23,723		79,077
농촌	226	-	146,341	-	-	62,718	-	209,059
어촌	33		18,867			8,086		26,953
산촌	53		16,890			7,239		24,12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01	-	237,452	-	-	101,766		339,218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대비 성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 적(B)	B/A(%)
권역주민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80	96.2	120

○ 성과달성 세부내용

- 주민만족도 조사('11년도 종합평가 대상 19개 권역대상, 1,038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9개 권역

· 조사결과 : 종합점수 96.2점

분 야 별	응답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점수
합 계	4,957	610	2,472	1,690	162	23	96.26
기본계획분야	997	101	458	395	38	5	95.68
세부설계분야	994	98	440	415	37	4	95.87
사업시행분야	991	93	437	420	39	2	95.86
지역기여정도	986	160	560	226	33	7	95.94
지역생활만족	989	158	577	234	15	5	97.97

\* 만족도 결과 = 보통이상 만족자수/ 전체응답자수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지역실정에 맞게 다수의 농촌마을을 여건이 같은 권역으로 묶어 기초생활기반·문화복지·소득기반·경관개선·농촌관광·운동휴양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유지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하여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 공동소득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주변상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권역사업모델개발이 필요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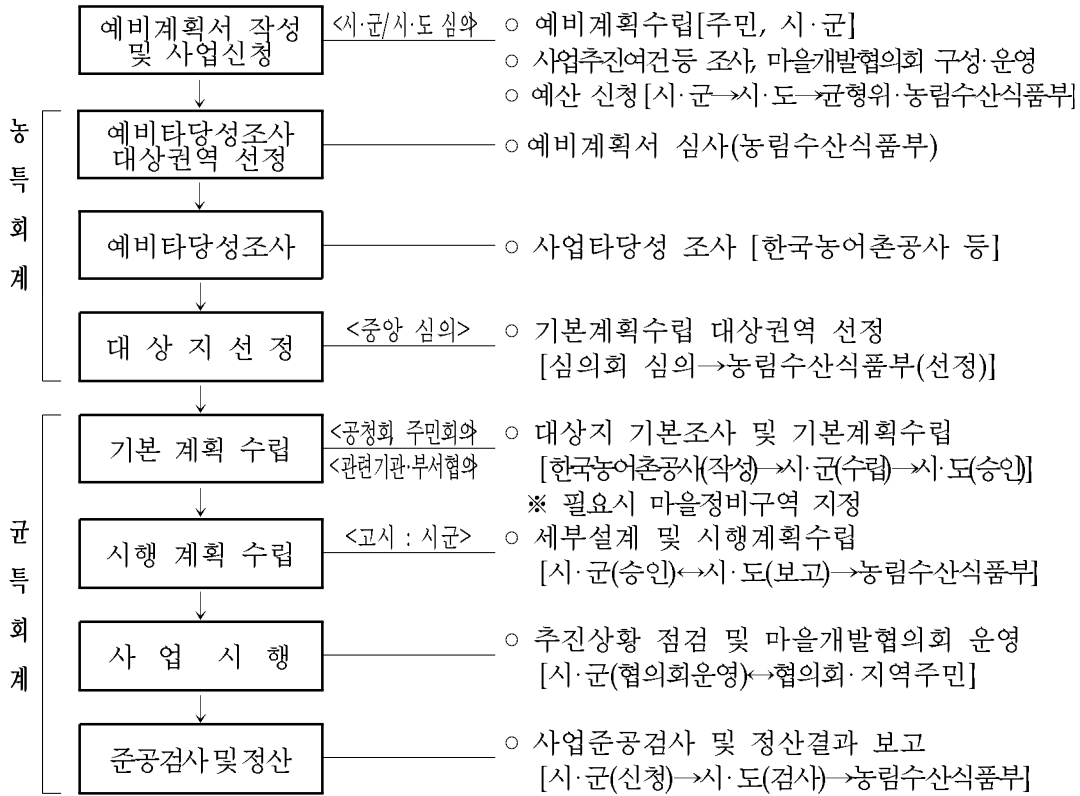
## 1. 사업목표

- 읍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규모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시설 등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
- 사업 주요내용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 생활편의,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 읍면소재지의 환경보전 및 중심가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를 위한 정보화시설, 주민교육, 컨설팅,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마을홍보 및 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사업
- 사업추진절차
  - 사업 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 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04 ~ '10년 :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 11년 이후 : 읍과 면을 통합, 읍면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존 거점면은 사업비 지원하여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8	-	65,794	-	-	23,197	-	93,991
거점면	20	-	16,787	-	-	7,194	-	23,981
읍면	38	-	49,007	-	-	21,003	-	70,01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8	-	65,794	-	-	23,197	-	93,991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대비 성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권역주민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80	97.7	122

- 성과달성 세부내용
  - 주민만족도 조사('11년도 종합평가 대상 4개 권역대상)
    - 대상 : 4개 권역('11년 중간평가 권역, 291명)
    - 조사결과 : 종합점수 97.7점

분야별	응답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점수
합계	1,122	255	579	263	24	1	97.77
기본계획분야	281	68	119	86	8	0	97.15
세부설계분야	280	57	123	90	10	0	96.42
지역기여정도	280	74	164	39	3	0	98.92
지역생활만족	281	56	173	48	3	1	98.57

\* 만족도 결과 = 보통이상 만족자수 / 전체응답자수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시군의 거점이 되는 읍면 소재지의 지역실정에 맞게 기초생활기반·문화복지·경관개선·운동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 거점 읍면의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거점 생활공간을 정비하여 주변 읍면지역에 파급효과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여 읍면지역 거점기능 발굴 유도

3-2-4-1(계속)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전경구서기관

### 1. 사업목표

- 도시거주 젊은 인력이 농어촌에서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도록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영농, 교육, 친교·복지 등도 연계,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12년(4년간)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규모 : 시범사업 5개소(700세대)
- 지원조건
  - 마을기반시설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주택 : (임대)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60%(연리 3%, 10년거치 20년 상환)  
(분양) 국고융자 100%(연리 3%, 2년거치 1년 상환)
- 주요사업 : 주택,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마을조성
- 추진절차(시범사업) : 공모(시·군) → 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 지정(시·도) → 시행계획수립(시·군) → 시행(시·군) → 준공(시·군)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 ~ 12년 기간중 시범사업 5개소(700세대) 추진
- '09년 기본설계, '10년 시행계획수립, '11년 기반시설, '12년 준공
- ※ '13년 이후는 시범사업 평가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예정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215				10,854		90,069
'10	5(계속)	20,316				6,455	-	26,771
'11	5(계속)	24,648				2,783	-	27,431
'12	5(계속)	34,251				1,616	-	35,867

\* '12년 투자계획에서 감액된 8,201백만원(42,452→34,251)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부담 계획수립에 따라 국비 투자계획 변경

< 시행계획 추진실적 >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계속)	24,648				2,783		27,431

4. 성과목표 달성도

- '12년까지 입주계획 세대수의 93.9% 모집(700세대 중 657세대)
  - \* 고창(100세대)·장성(200)·화순(200) 입주모집 완료, 단양(계획 100, 모집 70)·장수(계획 100, 모집 87)
  - \* 사업추진이 빠른 전남 장성군은 '12년 3월경 우선 입주추진 예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농어촌뉴타운 분양률(%)	입주신청 세대수 / 입주자 모집공고 세대수(700세대)	%	92.0	93.8	102
	주민역량강화 교육(천명)	당해연도 역량강화 교육 년인원 교육 자수×일수	(천명)	2.5	3.0	12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주택, 영농, 복지, 교육, 친교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신규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귀농 성과 달성(657세대 입주 모집 완료 ; 총 계획 700세대의 93.9%)

- 사업 관계관 회의 등 점검점검을 통해 문제 발굴·해소대책 강구 (분기별 1회)
- 귀농프로그램, 귀농인턴 및 창업, 첨단 농업단지, 주택자금 지원 등 13건의 귀농 정착률 제고 연계사업 지원 대책수립('11.12월)
-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전파 및 입주촉진 등을 위한 홍보 추진
  - \* 귀농귀촌 페스티벌 전시(11월, 서울무역전시장)
  - \* 월촌(포털사이트) 게시(연중), 귀농대상자 교육 2회(8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10월) 등
- 미흡한 점
  - 분양률 100%를 달성하지 못한 2개 지구의 홍보강화 및 분양가 인하 등 분양률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건의사항 : 해당없음

3-3-1-1(계속)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윤기 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규모 : 8,000동('76~'10년까지 457천동 지원)
- 대출재원규모 : 4,000억원(농협자금 3,200억원, 지방비 800억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신·개축 동당 5,000만원, 부분개량 동당 2,5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

**3. 연차별 추진계획**

- 재원형태 : 농협자금 80%(3,200억원), 지방비 20%(800억원)
- 농협자금을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차보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8,000					1,200	2,800	4,000
'11	8,000					800	3,200	4,000
'12	8,000					800	3,200	4,000
'13	8,000					-	4,000	4,000
'14	8,000					-	4,000	4,000

\* 기타금액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10년부터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611					661	2,644	3,305

\*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지자체 물량 반납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대비 99.9% 달성('11.12.31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정비율	시·군 추진물량 확인	%	81	80.9	99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요 물량과 연동하여 공급물량 확대
  - \* 지원비율(지원물량/수요량) : ('09)48.3%→('10)61.7%→('11)76.3%→('11)78.8%
- 농어촌 지역실정을 반영한 농어촌 생활형 주택 표준설계도 8종 개발('11.12, 기본설계 완료)
  - \* 표준설계도 이용실적(3/4분기) : ('10)320,466건 → ('11)406,179건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195명중 89.9%(1,074명)이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만족

### ○ 미흡한 점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시 국비에서 이차보전하는 자금(농협자금) 비율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반납물량 발생
  - \* 총 자금에서 차지하는 지방비 비율 : ('10)30%(1,200억원) → ('11)20%(800억원)
  - \* 공급물량(8,000동) 대비 추진실적('11.12.31기준) : ('10)5,699동 → ('11)6,611동

### ○ 건의사항

- '13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채원 중 국비에서 이차보전하는 자금(농협자금)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비 부담 완화 추진
  - \* 지방비 비율 축소 : ('10)30%(1,200억원) → ('11)20%(800억원) → ('13)0%(-)

3-3-1-2(계속)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환경부)
-------------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담당자	정영대 사무관

### 1. 사업목표

-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70년대 전후)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슬레이트는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국민건강피해 가능성 증대
- 추진근거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2011~2021)'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 총사업비 : ('11년까지 기투자액 : 28억원)
- 사업규모 : 30년 이상된 전국 노후 슬레이트 약 19만동 해체·처리
- 지원형태 : 국고보조, Matching
- 지원조건 : 국고 30%, 지자체 보조 30%~7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2011~2021)'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편성(행안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물량 2,000동 제외)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900	0	0	307	0	307	407	1,021
'11	2,500			28		28	37	93
'12	10,000			60		60	80	200
'13	10,800			65		65	86	216
'14	12,800			77		77	102	256
'15	12,800			77		77	102	25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372	-	-	23	-	29	6	58

- '11년에는 '슬레이트 대책 종합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물량 2,500동 중 총 2,372동 슬레이트 해체·처리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의 처리 물량은 2,372동으로 목표치(2,500동) 대비 94.9% 달성
    - (미달성 사유) 슬레이트 가옥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 취약계층으로 자부담 발생으로 중도 사업 포기자 30%이상 발생
      - 슬레이트 시범사업은 국고 30%, 지방비 30~70%를 지원하여 자부담 0~40% 발생
- ※ 사업 중 지속적인 추가 신청물량을 확보하여 목표치 대비 95%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적 (비율)	슬레이트 처리 주택 동수	동	2,500	2,372	94.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슬레이트 해체·처리 비용의 절감
    - 시군구별로 다량의 물량을 일괄 계약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슬레이트를 해체·처리하는 비용보다 약 30~40% 비용 절감
  -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추진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 ※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통보('12.1)

- 미흡한 점
  -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 건의사항
  - 슬레이트 가옥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 취약계층으로 자부담 발생 시 또는 개량비 미지원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국고지원 증액 필요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해체·처리비(가구당 200만원 기준)의 국고 보조율 50% 이상 상향 조정(현재 국고보조율 30%) 및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등) 개량비(가구당 300만원 기준)의 국고 50% 이상 지원 필요

3-3-1-3(계속)	농어촌 생활용수개발(환경부)
-------------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이광수

### 1. 사업목표

- (목 표) 농어촌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근 거) 수도법 제75조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면단위 이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미설치지역
- 사업 규모 : 8,583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553,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264,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7,766)
- 지원금액 및 형태 : '11년까지 투자액 25,885억원(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6,418억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5,686억원, 소규모수도 시설 개량 3,599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70~80%, '09년까지 80%, '10년 이후 70%)
- 지원내용 : 면단위이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정수장, 배수지등 수도시설 설치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수정계획('10년, 환경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국고 지원사업 추진
  - '14년까지 503개소에 총 23,318억원 투자하여 상수도보급을 75%수준 제고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22			17,041		5,736		22,736
'10				3,423		1,062		4,485
'11	681			3,464		1,136		4,507
'12	341			3,446		1,195		4,642
'13				3,653		1,262		4,915
'14				3,055		1,081		4,18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년	681			3,464		1,136		4,507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율은 65.0%로 전년(55.9%)대비 9.1%p 증가되어 목표달성
- 특히 구제역·AI발생지역에 대해 국고 3,345억원을 지원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약 225천명이 지방상수도로 전환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상수도시설및 확충	농어촌상수도 보급율(%)	농어촌·도서지역 급수인구/농어촌· 도서지역 인구*100	%	64	65.0	101.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기여
  - 지속적인 예산집행점검 등을 통해 '11년 예산 100% 집행완료
- 미흡한 점
  - 국가 예산(광특회계) 한정 지원으로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 주민 상수도 보급 혜택 한계
- 건의사항
  - 추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13년 예산 수립시 예산 증액 및 지속적인 지원 필요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임원빈 주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을 통한 도로 기능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방도로 정비 : 2005년 ~ 2011년
  - 위험도로 구조개선 : 2004년 ~ 계속
- 총사업비 : 9,577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7,780억원)
  - 지방도로 정비 : 7,159억원(교부세 3,703 지방비 3,456)-'11까지 완료
  - 위험도로 구조개선 : 2,418억원(국비 1,209 지방비 1,209)
  - ※ '11년까지 기 투자액 : 621억원(국비 310.5 지방비 310.5)
- 사업규모
  - 지방도로 정비 : 576.5km
  - 위험도로 구조개선 : 217.2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보통교부세)	기금등			
합계								
'10	81.0		58	489		388		935
'11	90.8		68	432		491		991
'12	7.1		61			61		122
'13	8.0		70			70		140
'14	8.0		70			70		140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보통교부세)	기금등			
'11	90.8		68	432		491		991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감소율	교통사고 건수	%	35	78.2	222

※ 산출내역 : (시행전 3년 평균 - 시행후 1년) / 시행전 3년 평균 =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보통교부세(도로보전분)를 지원하여 잔여 구간을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 '05~'11년까지 농어촌도로에 7,159억원여원을 투입하여 576.5km의



정비하여 간선도로 기능 확보,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안전에 기여함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완료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7년 64.8%, '08년 69.9%, '09년 78.2%의 교통사고 감소와 차량 통과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

○ 미흡한 점

- 매년('05~'11) 보통교부세 8,5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말로 기간 만료되어 내년부터 지방도로 정비사업 예산 축소가 우려됨
-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사전 심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개선효과 분석 등 사후 관리체계 미흡
-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선권고(안) 작성과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사전조사 용역 필요

○ 건의사항

-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교부세 지원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지방 재정 건전화와 도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비지원 정책 대안 마련이 요구됨.

<b>3-3-2-2(계속)</b>	<b>교통서비스 강화(국토해양부)</b>
--------------------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 1. 사업목표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액 증가중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기초교통권 보장을 위해 손실금 보상, 공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2014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시·도 수요조사 및 소요액 통보(국토부→행안부)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행안부→시·도)→사업시행(시·도)
- 지원형태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
- 사업규모 : 벽지노선(29,140.14km)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벽지노선 손실보상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의 일부금액을 국비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65(300)		
'11						573(60)		
'12						573(60)		
'13						573(60)		
'14						573(6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86(68)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분권교부세60억, 지방비573억
    - ⇒ 달성정도 119% (분권교부세68억, 지방비686억)
  - 세수증가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한 버스재정지원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통서비스 강화	'11년 분권교부세 집행	예산 집행 실적	억원	60	68	113.3
	'11년 지방비 집행	예산 집행 실적	억원	573	686	119.7

3-3-2-3(계속)	국고여객선 건조(국토해양부)
-------------	-----------------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이승배(사무관)

### 1. 사업목표

-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운항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여객선을 대체건조 후 해당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안전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1년까지 기투자액 : 405억원)
- 사업규모 : 보조항로에 취항중인 여객선 대체건조  
( '11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3척)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토해양부)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척	-	-	98	-	-	-	98
'11	1척	-	-	16	-	-	-	16
'12	2척	-	-	16	-	-	-	16
'13	1척	-	-	20	-	-	-	20
'14	1척	-	-	22	-	-	-	22
'15	1척	-	-	24	-	-	-	2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척	-	-	16	-	-	-	16

- '11 예산은 15.7억원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1년도는 2.1억원 집행(0.4억원 낙찰차액 및 불용) 하였고 13.2억원은 '12년으로 이월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도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국고여객선 건조가 '12년도에 완료되어 목표치 미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국고여객선 건조	국고여객선 건조공사 공정률(%)	집행금액/사업비 ×100	%	100	2	2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적정 대체선박 선정을 위해 낙도보조항로의 일반항로 희망 사업자 파악 및 지방청별 수요 조사 실시('11. 2~5)
- 미흡한 점
  - 적정 대체 선박 선정 등을 위해 선박건조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선박건조를 완료하지 못하였음
- 건의사항
  - 도서주민들은 고속화·고급화된 선박 건조를 희망함에 따라 낙도 보조항로 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예산 추가 지원 필요

<b>3-3-2-4(계속)</b>	<b>내향여객선 운임보조(국토해양부)</b>
--------------------	--------------------------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권기정(사무관)

**1. 사업목표**

-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서개발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1년까지 기투자액 : 794억원)
- 사업규모 : 내향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연간 약 360만명)에 대한 운임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개 지자체	-	-	418	-	418	-	836
'11	8개 지자체	-	-	82	-	82	-	164
'12	8개 지자체	-	-	84	-	84	-	168
'13	8개 지자체	-	-	84	-	84	-	168
'14	8개 지자체	-	-	84	-	84	-	168
'15	8개 지자체	-	-	84	-	84	-	16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8개 지자체	-	-	82	-	82	-	164

- 7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는 일반회계 사업 예산(79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3개도서)의 경우는 광특회계 사업 예산(3억원)으로 전액 집행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보조금 교부율(%)	(지자체 교부액 / 국고보조금 예산액) × 100	%	100	100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2년도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소요예산 증액 확보('11.5~12월)
  - 도서지역이 밀집된 전남(신안) 지역과 운항거리 등에 따라 운임수준이 높은 경북(울릉)지역 및 인천(백령·연평)지역 전년대비 3% 증액 확보
  - \* 전남도(3,700→3,820백만원), 경북도(1,856→1,916백만원), 인천(1,650→1,704백만원)
- 미흡한 점
  - 기본운임 지원을 확대(20%→30%)를 위해 국비 소요예산(5억원)을 '12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함
- 건의사항
  -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당국의 적정 소요예산 반영 필요

<b>3-3-3-1(계속)</b>	<b>정보화마을 조성(행정안전부)</b>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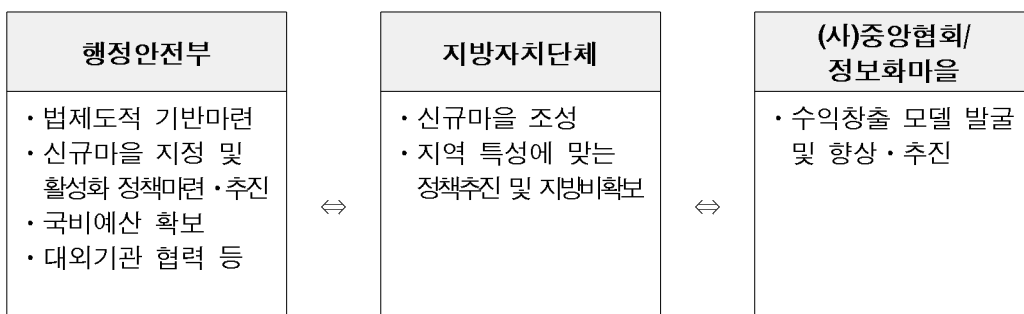
담당부서	정보문화과	담당자	심창수 주무관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등 정보소외지역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정보이용생활화로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사업규모 : 기 조성된 364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정보화마을 콘텐츠 유지·관리, 전자상거래(www.invil.com) 지원
  - 주민대상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마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마을별 수준진단, 차등관리 등
- 추진체계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35,838	0	8,591	1,361	45,790
'10	363곳	-	-	5,598	-	1,221	-	6,819
'11	364곳	-	-	5,258		1,526	305	7,089
'12	364곳	-	-	5,197		1,948	352	7,497
'13	364곳	-	-	11,105		1,948	352	13,405
'14	364곳	-	-	8,680		1,948	352	10,98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64곳	-	-	5,258	-	1,526	305	7,089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일반국민· 주민참여도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마을수	건	7,770	7,981	102.7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주민 역량강화 교육(정보화, 운영) 및 e-Commerce를 통한 직거래 추진으로 마을 공동수익 신장('10년 209억 → '11년 301억)
- '11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등 지속 성장가능한 모델로 세계가 인정  
※ 해외벤치마킹 방문 지원(105개국 2,751명), 국제컨설팅(브루나이, 온두라스)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b>3-3-3-2 (계속)</b>	<b>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유통·경영 업무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제고효과 발생
-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산경영정보시스템 및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보급으로 경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1년까지 기투자액 115억원)
- 사업규모 : 농어업경영체 u-IT 자동화시스템 구축지원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국고 40%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263	-	-	-	6,000	3,000	19,263
'10	5개소	2,095	-	-	-	1,300	650	4,045
'11	5개소	1,898	-	-	-	1,000	500	3,398
'12	5개소	1,990	-	-	-	1,200	600	3,790
'13	5개소	2,090	-	-	-	1,200	600	3,890
'14	5개소	2,190	-	-	-	1,300	650	4,14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개소	1,898				1,000	500	3,398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지원	이용자만족도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만점 으로 환산	점	82.8	83.5	100.8
	업무처리절감율	업무처리시간(구축전 구축후)/업무처리시간 (구축전)*100	%	36.0	37.9	105.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이용자 확대 및 만족도 향상 달성
- 경영체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입생산비를 비교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경영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농수축산분야에 u-IT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공모사업 과제 발굴 실시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3-3-3-3(계속)	<b>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를 통한 농어업인 상호간 정보교류로 농어업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1년까지 기투자액 746억원)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농어업인정보화교육 실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일부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592	-	-	-	694	-	32,286
‘10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6,246	-	-	-	427	-	6,673
‘11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5,896	-	-	-	267	-	6,163
‘12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6,180	-	-	-	-	-	6,180
‘13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6,480	-	-	-	-	-	6,480
‘14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6,790	-	-	-	-	-	6,79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5,896				267		6,163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지원	이용자만족도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만점 으로 환산	점	82.8	83.5	100.8
	업무처리절감율	업무처리시간(구축전 구축후)/업무처리시간 (구축전)*100	%	36.0	37.9	105.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농어업·농어촌 콘텐츠를 제공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정보격차지수 지속적 감소에 기여
- 농식품CEO를 대상으로 경제·사회 등 여러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제4절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1-1-1(계속)	<b>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관리 (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박상호(주무관)

##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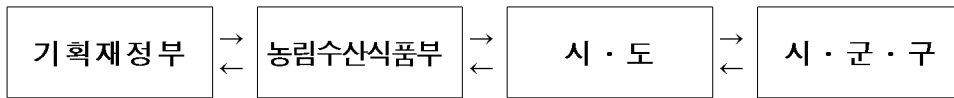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 \* 사례 : 농산물(1차)을 가공한 식품과 민예품(2차)을 판매하고, 농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탐방 및 관광서비스(3차) 제공을 결합
  - ※ 지자체에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 등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향토자원 : 지역성, 역사성, 차별성을 가진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유·무형 자원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등

## 2. 사업내용

### 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4,791억원)
- 사업규모 : '11년 기준 17개 내역사업에 대해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 지자체 예산한도내에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예산신청을 하여 사업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추진체계



- |                          |                                   |                      |                  |
|--------------------------|-----------------------------------|----------------------|------------------|
| ○ 예산편성지침<br>송부<br>○ 예산확정 | ○ 가이드라인 제시<br>○ 예산신청용검토<br>○ 성과평가 | ○ 예산신청<br>○ 사업관리, 집행 | ○ 예산신청<br>○ 사업집행 |
|--------------------------|-----------------------------------|----------------------|------------------|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나.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국고) : 1,169억원)
- 사업규모 : '11년 기준 86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사업주관), 시·군·구청장(시행기관)
- 지원내용 :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 + H/W 포괄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기존 사업의 체계를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목표에 부합토록 내역사업을 재편성하여 사업유형별로 예산 편성  
\* ('10) 17개 내역사업 → ('11) 17개 내역사업 → ('12) 5개 내역사업
- 기획재정부의 예산한도(ceiling)내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도 자율편성사업)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151			11,151		22,302
'10			2,356			2,356		4,712
'11			2,435			2,435		4,870
'12			2,031			2,031		4,062
'13			2,133			2,133		4,279
'14			2,196			2,196		4,406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435	-	-	2,435	-	4,870

#### 나. 향토산업육성사업

- '07~'08년 시범사업 실시, '09년부터 1개 세부사업당 3년간 30억원 (국고 15, 지방비+자부담 15)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68			2,068		4,136
'10			345			345		690
'11			406			406		812
'12			409			409		818
'13			456			456		912
'14			452			452		90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02	-	-	402	-	804

※ 사업포기(1개)지구 발생에 따라 당초 406억원 보다 2억원이 적은 402억원 집행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10%)에 비해 63.0% 증가한 16.3%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10	49.0	
향토산업육성사업				10	△16.4	
계				10	16.3	63.0

\* 계산식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3,493\text{억원}-9,053)/9,053)\times 100$ ],  
향토산업육성사업[ $((55.12\text{억원}-65.92)/65.92)\times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내용의 유기적 연계, 사업추진방식 체계화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정체성 확보

- 생산·유통·가공·판매·체험·관광을 연계하여 1-2-3차 산업을 융복합화
- 시군별 중장기 계획 수립·개별사업 설계(중대규모사업 사업성 검토)-예산반영-사업추진-평가 및 피드백
- '10년도 결산 국회 농식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 등에 적극 대응 및 개선 추진
  - (지적)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국고 50%)에 따른 지방비 등 부담 미이행
  - (조치)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준보조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정('11.10.21)
- 특히,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합동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사업단 및 지자체 상호간 사업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역량 강화(6월, 11월)

○ 미흡한 점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다소부족
  - \* 내역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사업 발생
- 특히,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수가 많고 관련부서가 많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시·도)차원의 구체적·체계적인 사업관리 필요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신청 시부터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대상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자금배정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평가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필요

4-1-1-2(계속)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정명철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자원을 선발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1년(6년간)
- 사업규모 : 43개 지역(시군), 1,015백만원('11년 165백만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 매년 3~10개 지역(시군)
  - 지역 향토자원 중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향토자원 사업화 가치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 조사대상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및 지원전략 개발을 통한 지자체 향토산업 지원체계 구축
- 2011년 사업 추진내용

### 가. 향토자원 발굴

- 사업 대상 지역 : 4개 지역(태백, 여주, 금산, 순천)
- 사업 결과 : 향토자원 288건 발굴
  - 장소마케팅을 위한 전통지식 발굴 : 112건(태백, 여주)
  - 스토리텔링을 위한 구전자원 발굴 : 176건(금산, 순천)
- 향토자원 활용 장소마케팅 우수사례 조사 : 10개소

유형	조사대상
볼거리	영덕 나라골보리밭, 양양 철산마을
먹을거리	양평 보릿고개마을, 예천 삼강주막마을, 정선 5일장
체험거리	사천 비봉내마을, 진도 소포검정쌀마을, 남원 부절마을
살거리	청송 송소고택, 고령 개실마을

- 향토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우수사례 조사 : 9개소

유형	조사대상
문학(고전)	평창 효석문화마을, 양평 소나기마을,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곡성 심청이야기마을
건축 및 공예	정선 아라리촌, 울주 외고산옹기마을
민속문화	강릉 해살이마을, 충주 목계마을, 양양 송천민속떡마을

- 유망자원 선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회 : 4지역, 총 4회
- 향토상품 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향토상품 디자인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 44개 브랜드
  - 향토상품 디자인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조사 : 국내외 16개 브랜드

### 나.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 장소마케팅을 위한 마을 콘텐츠 개발 : 5종
  - 마을이미지 Visual Identity 디자인 : 로고타입, 캐릭터, 공예품 디자인
  - '사시랭이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 전통지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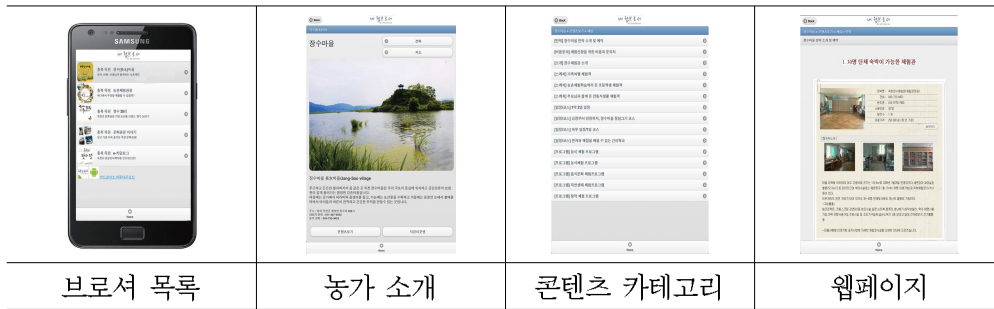


<마을 이미지 디자인>

<사시랭이 동영상>

<스토리텔링북>

- 농촌관광정보 모바일 웹서비스 툴 및 모바일 웹브로셔 개발 : 육천 1종



브로셔 목록

농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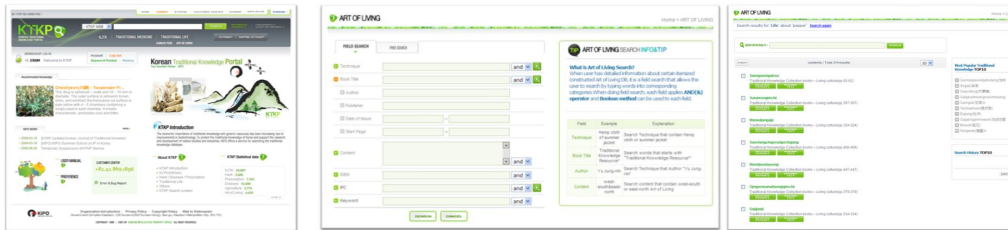
콘텐츠 카테고리

웹페이지

- 향토자원의 이야기를 활용한 광고콘텐츠 개발 : 홍천жат 6종

- 향토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서비스

-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DB 국제화 : 국제특허분류 4,000건, 영문화 2,040건
- 향토자원 DB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털 연계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향토자원 발굴 및 지역마케팅 활용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			927			927	
'10	10			207			207	
'11	4			150			150	
'12	4			170			170	
'13	4			200			200	
'14	4			200			2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개소			130			130	

나. 향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250			250	
'10	3			50			50	
'11	3			50			50	
'12	3			50			50	
'13	3			50			50	
'14	3			50			5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개소			35			35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향토자원 발굴조사 대상 4지역(100%)
  - 향토자원 발굴 건수 288건(960%)

- 향토자원을 활용문화콘텐츠 개발 12건(16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향토자원 발굴 지역	발굴 조사 지역	지역	4	4	100%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조사	산업화유망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 건수	건	30	288	960%
	전통지식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콘텐츠별 시개발 건수	건	10	12	12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연구사업의 방향이 향토자원의 조사·발굴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소득화로 전환됨에 따라, 마을콘텐츠 개발 5종, 모바일 웹 브로셔 개발 1종, 광고콘텐츠 개발 6종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향토자원을 농촌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려고 노력함
- 본 연구사업을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였으며, 향토자원 발굴자료와 콘텐츠 개발 시제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순천, 금산, 태백, 여주)에 정책제안 자료로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미흡한 점

- 전국적인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2010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연구 사업을 중단하여 자원발굴과 DB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원 발굴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임

### ○ 건의사항

- 연구사업의 방향이 '발굴' 중심에서 '콘텐츠 개발'로 바뀔에 따라 기존의 사업명인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에서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최국일(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판매 등 종합적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농어촌생산품의 수요 확대 촉진
- 농어촌생산품 수요확대를 통한 농특산물의 가공확대와 농어촌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촉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가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사업내용

- 농어촌기업 제품의 수요 창출 지원을 위해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여 개발된 우수 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요창출 촉진
  - B2B 프로그램을 강화, '바이어의 날' 행사를 통해 농어촌기업과 유통업체간 상담 및 계약체결 등 성과 거양
    - \* 유통전문가 교육(7.26~27), 유통품평회(8.2~3), 유통역량강화 컨설팅(8.4~31)을 박람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실시
  - 출품 업체 간 정보교환 및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및 참여 업체
- 사업 규모 : 박람회 행사
- 지원금액 및 형태 : 270백만원
- 지원조건 : 행사비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장소 임대료, 홍보비, 심포지엄, 시상식 등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농어촌산업박람회 방문객 증가율(%)	(금년도 방문객 - 전년도 방문객)/전년도 방문객*100	%	10	△40.8	△4.08

\* '10년 박람회(방문객 수 : 106,634명)는 우수축산물페스티벌, 수산물브랜드대전  
행사와 통합 개최하여 단독 행사시보다 방문객이 상당수 증가한 측면이 있음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단순 계약상담 알선이 아닌 실질적 계약체결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농어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

\* 제3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체결 건수 / 금액 : 21건 / 260백만원(건당 평균 13백만원)

○ 건의사항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

4-1-3-1(계속)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최국일(사무관) 임귀상(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서비스 제공으로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체계 구축
  -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사업역량 강화

### 2.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규모 : 총 100개소(매년 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5억원(2년간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시제품생산·품질개선·기술교육 등 기술지원,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추진

#### <농공단지 조성>

- 사업 지원대상 : 민간 및 공영으로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지역 특화농공단지
- 사업 규모 : 33만m<sup>2</sup>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촌 지역별로 정액지원(단지면적 3.3m<sup>2</sup>당 30~70천원)
- 지원내용 :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0개소	-	-	90	-	90	-	180
'10	4개소	-	-	10	-	10	-	20
'11	8개소 신규	-	-	20	-	20	-	40
'12	8개소 신규	-	-	20	-	20	-	40
'13	8개소 신규	-	-	20	-	20	-	40
'14	8개소 신규	-	-	20	-	20	-	4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11	4개소	-	-	20	-	20	-	40

#### ② 농공단지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 해당 없음>

- 광특회계 포괄보조지원사업 특성상 지자체 신청에 의해 사업물량이 정해지므로 연도별 예상 조성 수 정하기 어려움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11	102개소 (조성 43, 개보수 59)	-	526	-	-	964	-	1,490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고용인원 수	전년 인원/금년 목표인원	명	129,806	135,577	104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창업보육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공기술 교육·보급 및 마케팅 교육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
-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과 연계한 농공단지를 조성,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기여

### ○ 건의사항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윤종탁(농업연구사) 박찬순(농촌지도사) 김연아(농촌지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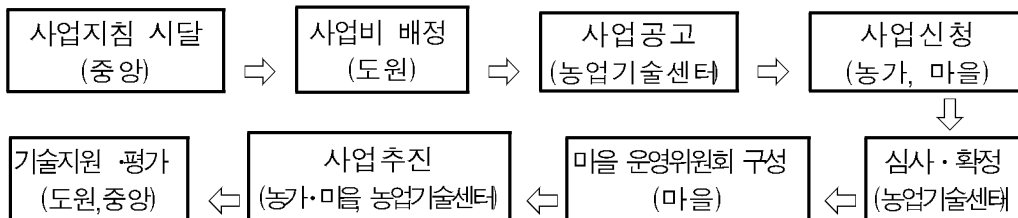
## 1. 사업목표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 및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
-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 기여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21조(식품산업육성), 제22조(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 고유문화, 기술, 특산품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및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2~'17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식품산업 인력교육, 농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어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제14조(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전통 식생활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제29조(권한의 위임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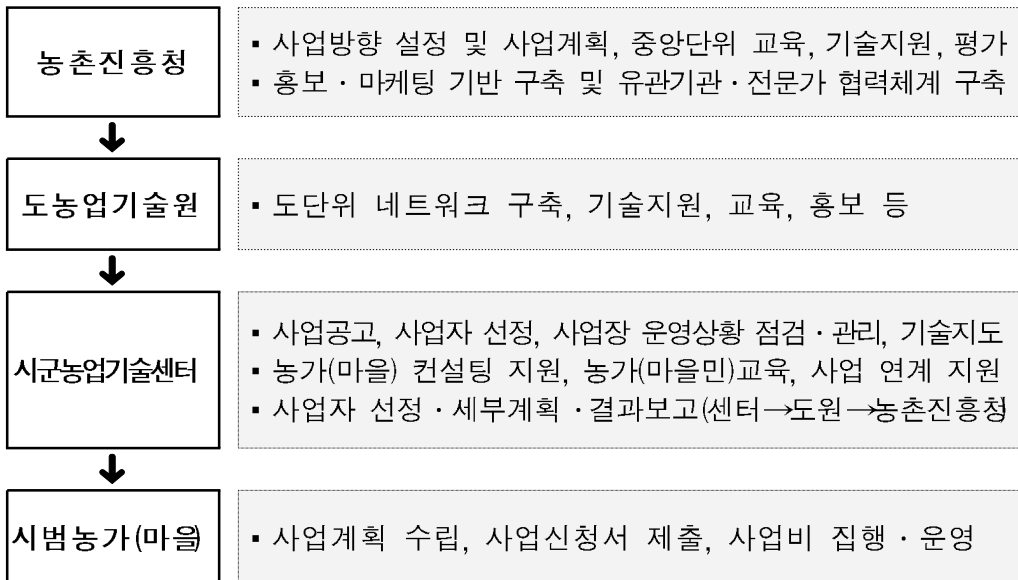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 총사업비 : 289억원('10년까지 기투자액 : 92억원)
- 사업규모 : 3개사업, 600개소(전국 읍면수의 20% 수준)
  - \* 농업인의창의적인손맛지원사업, 농산물종합가공지원, 향토음식자원화사업
- '11사업량 : 39개소 35.5억원(국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 사업추진 절차 >



### < 추진주체별 역할 >



○ 세부내역

- 가공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홍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발굴, 향토음식 자료화,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사업자 역량 개발, 농가 맛집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의 창의적인 손맛지원사업과 향토음식자원화사업 2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전국 읍면수의 20% 수준인 600개소 지원을 목표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제주)	기금등			
합계	278		13,550	530		14,080		28,160
'10	33		1,650			1,650		3,300
'11	39		1,450	120		1,570		3,140
'12	39		1,500	70		1,570		3,140
'13	106		4,200	150		4,350		8,700
'14	133		4,750	190		4,940		9,88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제주)	기금등			
'11	31		1,458.5	120		1,578.5		3,157

#### 4. 성과목표 달성도

- **(사업물량 목표)**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향상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의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사업은 1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향토음식 발굴·상품화를 지원하는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14개소를 추진하여 목표치 대비 100%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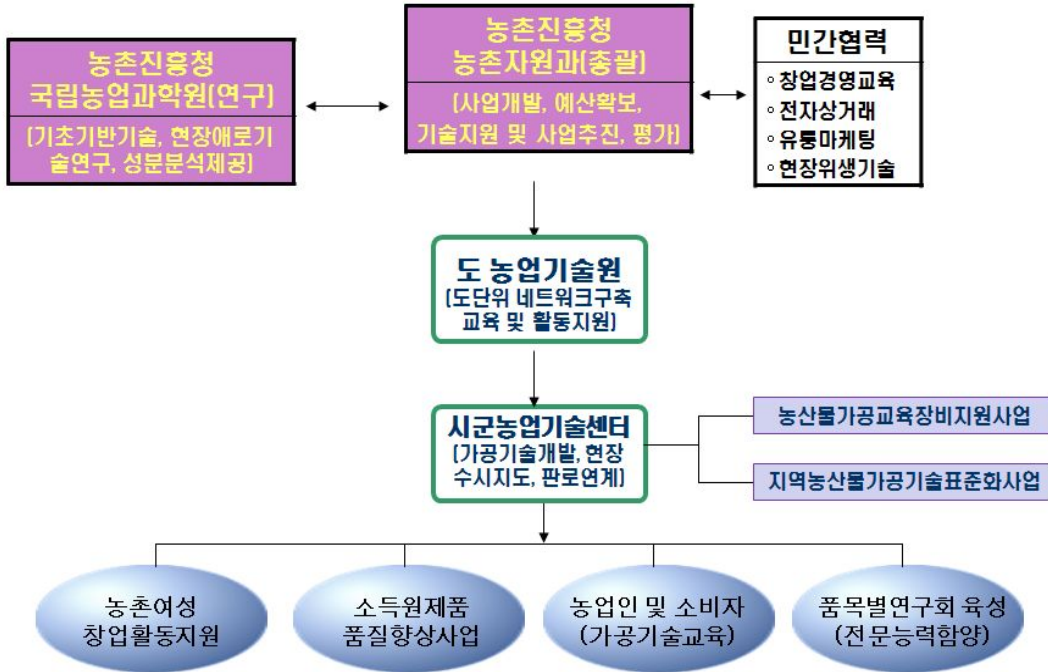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의창의적인 농촌손맛지원사업	사업 계획량 실적	조성실적/조성계획	%	17	17	100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계획량 실적	조성실적/조성계획	%	8	8	100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향토음식자원화사업 계획대비 실적	조성실적/조성계획	%	14	14	100
계				39	39	100

- **(성과지표 목표)**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라는 사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매출액증가율과 향토음식자원화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농업인의 창의적인농촌손맛사업의 성과지표 매출액 증가율은 21%로 목표치 대비 350% 초과달성함
  -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 농촌지역의 향토음식과 숨씨 보유자의 기술이라는 자원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향토음식자원화율”이라는 성과지표를 통하여 향토음식 발굴과 개발, 자료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자원화율”은 계획대비 109%를 초과달성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의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	매출액증가율	((지원후 3년차 사업장의 당년 매출액 - 동 사업장의 전년 매출액) / 동 사업장의 전년 매출액) × 100	%	6.0	21	350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향토음식 자원화율	2개 세부지표의 평균값 ①(향토음식 발굴·개발실적 / 향토음식 발굴·개발 계획) ×100 ②(향토음식 자료화 보급 실적 / 향토음식 자료화 보급 계획) ×100	%	115	125.4	109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인 가공 사업장의 창업에서 자립단계까지 농가창업기술교육, 마케팅활동지원, 농가생산제품홍보 등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음



<기술지원 체계>

- 농업인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인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농진청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 “우먼팜”을 운영
-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밀착형 기술지도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도 및 현장 컨설팅 추진으로 사업장의 역량 강화에 기여
- 전문지도 연구회 및 농산물가공 연구회 육성 지원으로 사업 담당자 및 농업인의 가공역량 및 전문기술 역량 제고

※ 현장지도공무원(564명) 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연구회 현황

- 자격증 보유 : 181명 (식품기술사 18, 기사 128, 산업기사 35)
- 전문지도연구회 : 106명 (농산물가공 56, 전통식품 50)



<창업기술교육>



<전자상거래 우먼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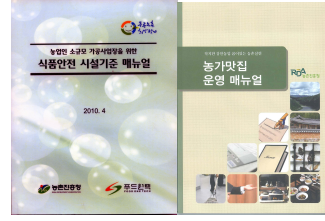
<수요대응 컨설팅>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경영개선 교육>



<사업 매뉴얼>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농업인이 보유한 경험과 솜씨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농외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21% 증가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135개소 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11년도에는 상시고용 2.3명과 비상시고용 612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나타냄
- 지역 농특산물 기초가공기술부터 창업보육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 및 정책수립 협력
  -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제2차 식품산업 기본계획에 포함
- 지역단위 농·공·상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중기청 연계)
  - \* 농촌지역 최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범 설치·운영('11, 문경센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제정

(10. 6)에 근거하여 농업인 가공 사업장의 창업에서 자립단계까지 체계적인 기술지원 실시

- 전통·향토음식과 음식 솜씨 보유자를 발굴하여 문화와 접목한 상품화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의 새로운 식문화 공간 조성
- 미흡한 점
  - 향토음식, 문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상품화를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한정되어 컨설팅 진행에 어려움 발생
  - 사업의 내용이 가공설비, 위생관리, 건축, 디자인, 경영, 음식 등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사업 담당자와 사업 대표자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함
- 건의사항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량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박덕병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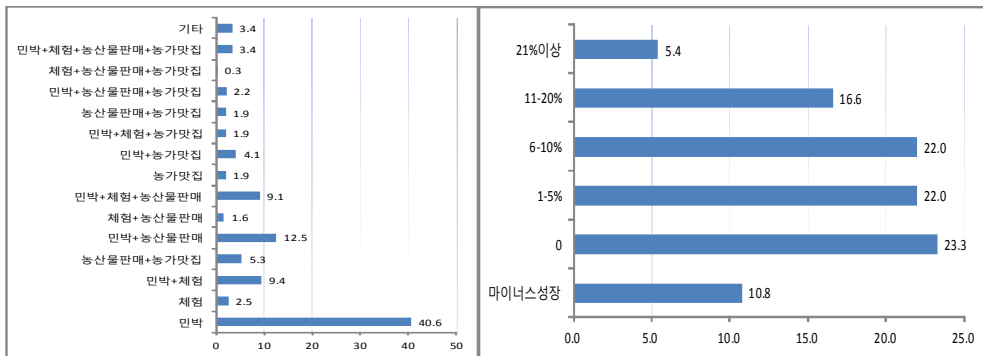
- 농어촌 관광활성화하고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 축제, 농가민박, 교육농장 등 농어촌에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
-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사업을 육성 기반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1년간)
- 사업규모 : 5개 지역(시군), 400백만원('11년 400백만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가민박 경영개선 방안 및 브랜드 이미지 분석 : 5개 지역(시군)
  - 농가민박 홈페이지형 농특산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선호 이미지 분석
  - 농촌관광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한 오토캠핑장 조성 방안 제시
  - 농촌관광마을 디지털콘텐츠(QR코드) 개발 및 현장적용
- 2011년 사업 추진내용

**가. 농가민박 경영 개선 방안 및 브랜드 이미지 분석**

- 농가민박이 농촌관광의 핵심적인 비즈니스로 정착되고 있음
- 농가민박 단독사업(40.6%), 농가민박+기타사업(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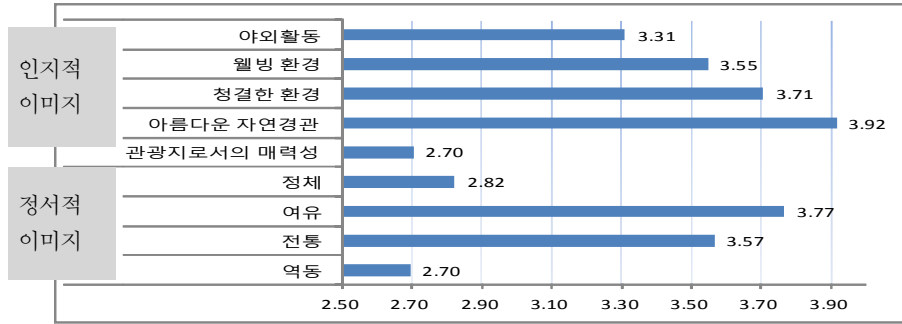


<농촌관광사업 유형>

<매출액 증가분포>



- 농가민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 전통적, 여유로운, 아름다운 경관 등
- 농가민박 매출액 증가율 영향요인 : 학력(+), 사업기간과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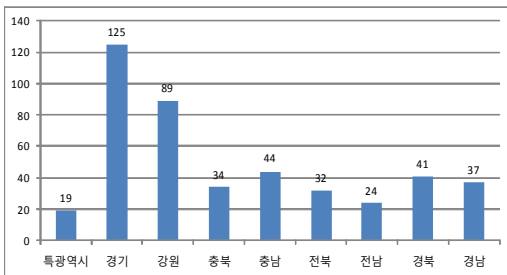
<농가민박 방문객의 이미지 인지정도>

**나. 농가민박 홈페이지형 농특산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선호 이미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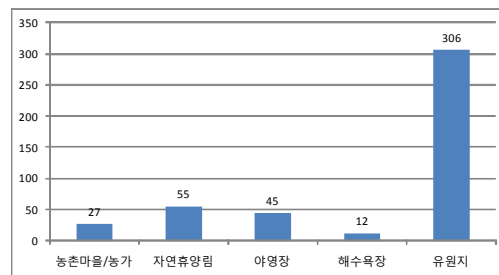
- 선호 포장단위 : 쌀 10kg, 사과·배·마늘·포도 등은 5kg 가장 선호
- 선호 포장디자인 정보 : 품질 > 지역 > 농장 > 판매자 순
- 만족/충성도 높이는 포장 디자인 이미지 : 친환경이미지, 깔끔한 이미지

**다. 농촌관광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한 오토캠핑장 조성 방안 제시**

- 농촌마을/농가 운영 캠핑장 수 : 전체 455개의 5.9%(27개) 수준
- 오토캠핑장 운영 수익 : 40텐트 규모 운영시 년 3,500만원 수준
- 농가단위에서 운영 가능한 오토캠핑장 규모 및 시설 제안
  - 적정 규모 : 부지면적 2,940m<sup>2</sup>(텐트 수 40동, 여분공간 1,500m<sup>2</sup>)
  - 부대시설 : 화장실 7통, 온수샤워 7꼭지, 개수대 12개, 전기시설 등



<지역별 오토캠핑장 분포>



<오토캠핑장 조성 위치>

**라. 농촌관광마을 디지털콘텐츠(QR코드) 개발 및 현장적용**

- 디지털콘텐츠 실태 및 요구도 조사 분석 : 전국 202마을
- 방문객 셀프가이드 지원용 마을소개 QR코드 개발 및 현장적용 : 3마을
  - 대상마을 : 아산 외암민속마을, 남해 다랭이마을, 산청 남사에담촌
  - QR코드의 특징 : 스마트폰을 통해 마을 디지털정보 이용가능
  - 주요내용 : 마을소개, 마을홍보영상, 체험프로그램, 상담전화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농촌관광 품질제고를 위한 농촌관광상품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990				1990
'10	5			400				400
'11	5			400				400
'12	5			390				390
'13	5			400				400
'14	5			400				4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개소			400				400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농가민박 조사 대상 5지역(167%)
  -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2000명(100%)
  - 오토캠핑장 조사 445지역(445%)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가민박 조사	조사대상지역	지역	3	5	167%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조사 대상자수	명	2000	2000	100%
	오토캠핑장 조사	조사지역 건수	건	100	445	445%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조사대상에서 농어촌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가구와 농가에서 민박 사업을 하는 가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농가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농가를 엄선하려고 노력함
  -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선행연구가 매우 적는데, 시설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농촌관광마을이나 농가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함
- 미흡한 점
  - 민박농가가 생산한 소규모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을 잘 하고 있는 농가를 찾았으나, 대상자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음.
- 건의사항
  - 농촌관광사업은 레저, 레크레이션과 결부되어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농촌체험 위주로 이루어져, 도시민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특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핵심비즈니스인 농가민박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이동홍(사무관) 최국일(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산업, 문화관광, 지역특화품목, 향토자원 등의 지역간 연계 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경제정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1, 2, 3차산업의 공동마케팅강화, 특화품목(한방약초, 천일염 등)의 시군간 협력촉진 등을 통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지역경쟁력강화

## 2. 사업내용

<농식품부-지경부 협력업무 추진>

- 사업내용 : ① 동일 농어촌지역 내 지원사업 내용의 연계·조정  
② 지역특구와 양 부처 예산사업 연계를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  
③ 농공단지 육성업무 공조체계 강화, ④ IT 기반 서비스기업 창업을 통한 농어업선진화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중앙)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 중심으로 연계·협력사업 추진
  - (지역) 지자체 공무원 및 보조·출연 사업단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농어촌자원산업화 TF팀에서 연계·협력사업 추진

### <'11년 추진실적>

- MOU체결('11.2.21, 양부처 장관)
- 연계협력 시행지침 시달('11.3.1)
- 시군별 연계협력사업계획서 수립('11.4~5월) → 시군별 계획서 양부처 합동검토('11.6~7월) → 시군별 계획서(12개시군)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지원단」 심의 및 승인(11.7.18)
- 시군 연계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12년 신규사업 중복성 사전검토(10월)
-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 회의 개최(11.7)

### 3. 연차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참고> 광역 연계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시범 추진(지정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사업>

○ 2011년 추진실적

- 한방약초 산업화, 제품 홍보 및 소비촉진 인프라 구축
- 안테나숍 입점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17개 기업, 37개 제품)
- 국내외 박람회(3회) 참가,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쇼핑몰(yackcho.com) 운영  
\* 매출 4.5억원, 안테나숍, 쇼핑몰 방문객 150천명

○ 2012년 추진계획

- 백화점, 대형마트 등 한방약초 오프라인 매장 신규 입점(1개소, 상반기)
- 농어촌기업 및 제품컨설팅, CEO 교육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 해외바이어 초청 포럼 개최, 박람회 참여, 방송·언론매체 홍보
- 스타제품 발굴·지원 및 12개 시·군과 공동법인화 설립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2개 시·군의 80여개 한방약초 생산 기업(350개 상품)
- 사업 집행(규모) : 홍보, 컨설팅, 유통, 마케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3년간 총 사업비 63억원('10.7.1~'13.4.30), 포괄지원  
(국비24억, 지방비 35억, 민간4억)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주관) / 목원대 산학협력단(참여기관)

- 추진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0 (*10.7.1~*11.4.30)	-	1,000	-	-	1,000	1,070	265	2,335
2011 (*11.5.1~*12.4.30)	-	700	-	-	700	1,000	78	1,778
(증△감)	-	△300	-	-	△300	△70	△187	△557

- 중기재정계획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00			3,530	394	6,324
'10 (*10.7.1~*11.4.30)	-	1,000	-	-	1,070	265	2,335
'11 (*11.5.1~*12.4.30)	-	700	-	-	1,000	78	1,778
'12 (*12.5.1~*13.4.30)	-	700	-	-	1,460	51	2,211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체계 운영지원 사업>**

- 2011년 추진실적
  - 열처리 천일염 상품화 및 기술개발 특허 등록
  - 천일염 품질평가 지표 및 등급기준 개발
  - 원산지 음식점 및 가공식품 브랜드 디자인 등 6종 개발 및 상표출원
  - 마포구 염리동 마을기업 유통관리조직 지정, 팸투어 실시
  - 소비자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 2012년 추진계획
  - 품질관리체계·인증시스템 적용을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
  - 체험센터와 염전, 지역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
    - \* 천일염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천일염 해설사 양성 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3개군(고창·영광·무안군) 천일염 생산지역 염전 漁家
  - 사업 집행(규모) : 생산자·소비자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2,981백만원(국비 2,045백만원 지방비 720백만원 현물출자 216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주관)/ 목포대 산학협력단(참여기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0 (*10.7.1~*11.4.30)	-	700	-	-	700	240	72	1,012
2011 (*11.5.1~*12.4.30)	-	540	-	-	540	240	72	852
(증△감)	-	△160	-	-	△160	-	-	△160

○ 중기재정계획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45			720	216	2,981
'10 (*10.7.1~*11.4.30)	-	700	-	-	240	72	1,012
'11 (*11.5.1~*12.4.30)	-	540	-	-	240	72	852
'12 (*12.5.1~*13.4.30)	-	805	-	-	240	72	1,11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	-	-	-	-	-	-

\* 타부처 위탁사업(농어촌공사 수행)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지역 산업 정책시행을 위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부처별 지원체계에 따른 사업의 분산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	이기풍

### 1. 사업목표

-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농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 산·학·연·관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농식품클러스터 육성('17까지 100개), 향토산업육성(매년 30개소)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시설설치시 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 20%)
- 사업추진체계 : 산·학·연·관 사업단 구성→지자체→농식품부 선정(사업단), 평가 및 국고보조금 지원 →지자체(보조금 교부 및 사업단 관리 등)
- 지원내용 :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 산업화 및 마케팅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1,647억원)
- 추진실적 :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 67개소, 향토산업사업단 109개소 선정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지원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9,970		317,740		642,950
'10	94			61,470		61,320		122,790
'11	134			69,200		69,160		138,480
'12	133			59,160		58,960		118,240
'13	122			67,920		67,000		134,920
'14	82			62,220		61,300		128,52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지원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33			684		682		1,366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011년도 매출액 증가율 목표 15.5%, 실적 23.3%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클러스터특화제품 목매출액증가율	2011년도 사업 단 참여업체 매 출액	%	15.5	23.3	15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단순 생산·유통 중심의 사업단은 배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
  - 일정금액 이상 집행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여 투명성 확보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1.12)로 민간투자 유치 기회 제공
- 건의사항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

4-2-1-1①(계속)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최원(사무관)

**1. 사업목표**

-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106		443			426		869
'12	110		410			390		800
'13	110		420			400		820
'14	120		420			400		820
'15	120		420			400		82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06		443			426		869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당초 계획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체험관광인프라 조성	테마공원조성	사업장 수	개소	45	45	100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장 수	개소	6	6	100
	체험마을조성	사업장 수	개소	55	55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잘된 점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11년도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제도 개선·시행('10)
  - 예산신청 전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의무이행, 총사업비 규모 30억원이상 사업 사업성검토 실시, 조성규모는 시·군당 1개 지구 조성 원칙 등
- '12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계획 수립·시행 ('11.4.9)
  -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검토(4.15) 및 지지체 결과통보(4.22)
  - \* 검토결과 6개 시·도 15개 지구 중 14개 지구는 사업성이 있어 예산반영 추진
- '12년 신규 지구 예산신청(안) 적정성 검토('11.6)
  -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한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예산신청
- '12년 신규 및 계속지구 예산신청(안) 검토('11.8)
  - 신규 12지구 : 4,220백만원, 계속 33지구 : 27,891백만원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서면 모니터링 실시(7.25~8.22)
  - 46개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점검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진지구 현장점검 실시(9.5~10.15)
  - 서면모니터링 결과 사업부진 32개 지구에 대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 \* 사업중단(2개 지구) : 전북 완주(화산지구), 제주 서귀포(강정지구)

< 신문화공간 조성 >

- 동기화교육 실시('10.4.7~8, 마을대표 등 30명 참석)
- 사업추진 현지점검 실시('10.5월)
  - 용지매수·보상 시기 : 시행계획 승인 → 기본계획 승인 후 우선 추진 가능토록 조치
- 워크숍 개최('10. 7.13~14,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담당자 등 53명 참석)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본 사업화를 위한 설문조사('10.9.27~10.6, 39명)
-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11.7.6~7.7, 7.12~7.14)
  - 충북 옥천, 전북 완주, 충남 서산, 강원 횡성, 경북 의성, 제주 서귀포
-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11.7)
  - 시행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범위 명확화, 소득사업 허용 등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워크숍 개최('11.11)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 체험마을리더 및 시·군 담당자 연찬회 개최(3월)
- 체험마을 방문객 대상 상해보험 지원 실시(3월)
- 외국인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역 20개소 선정(3월)
-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계획 수립(1월)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10월)
  - 269개 마을에 대한 평가결과 체험마을 운영의지가 없는 28개 마을 퇴출 조치

-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사무장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4~12월)
- 체험마을 기초자료 통합관리 전산프로그램(RUCOS) 개발 완료(12월)
- 체험마을별 통합 관광, 세무 등 컨설팅 추진(4~6월)
- 녹색농촌체험마을 55개소 신규 조성(1~12월)
  - 11개 마을에 대한 추가지원 병행 추진
- 농촌체험마을사무장(350명) 지원(1~12월)
- 농촌체험마을(231개 마을) 방문 체험객 상해보험 지원(1~12월)

미흡한 점

-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농식품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도농교류 인프라를 조성한 것으로 특이하게 미흡한 점이 없음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2-1-1②(계속)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담당자	우만수 사무관

### 1. 사업목표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생산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해 우유 소비촉진
  - 국산 유제품에 대한 인식 강화로 낙농산업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8~'12년
- 총사업비 : 20,386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5,337억원)
- 사업규모 : 3개소(개소당 135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무이자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낙농진흥회
- 추진체계 : 목장(사업신청) → 시군(대상자 추천) → 시도(대상자 추천) → 낙농진흥회(대상자선정) → 시도(선정통보)

### 3. 연차별 추진계획

- '08년부터 '11년까지 매년 4개소 선정·지원
  - '12년 : 3개소 × 135백만원, 총 405백만원 지원('13년 일몰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1,345			1,345
'10	4				400			400
'11	4				540			540
'12	3				405			405
'13	-							
'14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				540			54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목표치 200천명, 실적 201천명으로 100.5%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낙농체험관광 조성	낙농체험목장방 문객수	낙농체험목장방 문객수	천명	200	20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강원지역 체험목장 선정으로 전국적인 운영기반 조성(전국 21개소)
  - 구제역에도 불구하고 낙농체험목장 방문객 지속 증대, 질적 양적 성장('10년) 91천명 → ('11) 201
- 미흡한 점
  - 낙농가 대상 홍보 부족에 따른 낙농체험관광사업 신청자 저조 (4개소 선정에 4개소 신청)

4-2-1-1③(계속)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강윤석 서기관

###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에 대한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도농교류촉진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798억원)
- 사업규모 : - 개소(개소당 50억원이상)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시설비(3~4년에 걸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 추진체계 : 시·군(사업신청) → 시·도(대상자 추천) → 기재부·농식품부(대상자선정) → 시도(선정통보) → 시·군(사업집행·관리)

### 3. 연차별 추진계획

- '04년부터 '11년까지 어촌관광개발사업 12개소 완료
- '12년 : 6개소, 총 84억원 투자(지방비 포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12,278			12,278		24,556
'10	10		5,044			5,044		10,088
'11	6		3,034			3,034		6,068
'12	6		4,200			4,200		8,400
'13	-							
'14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		4,200			4,200		8,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목표치 200천명, 실적 201천명으로 100.5%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관광개발사업	사업권역내 주민 만족도(%)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67	68.1	1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생활의 활력을 어업인에게는 소득증대
- 미흡한 점
  - '10년부터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지자체에서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어촌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 후순위로 밀려나 계획된 사업추진 차질 발생

<b>4-2-1-2(계속)</b>	<b>산림휴양공간 조성(산림청)</b>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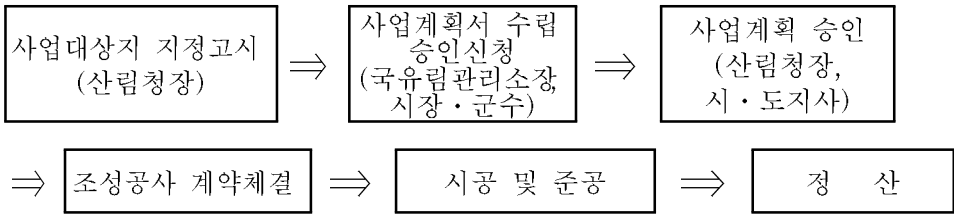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당자	김 위 동

**1. 사업목표**

- 산림휴양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2005)
- 2013년까지 총 362개소의 산림휴양시설(휴양림 176, 산림욕장 186)조성 (대통령 공약사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8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5,441억원)
- 사업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유자연휴양림(직접), 공유자연휴양림(국고보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조건
    - ┌자연휴양림(50억 기준) : 국유(국고100%), 공유(국비50%, 지방비50%)
    - └공유산림욕장(4억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절차



- 2011년도 추진 내용
  - 자연휴양림 설계 : 4개소(국가 1, 지방자치단체 3)
  - 자연휴양림 조성 : 20개소(국가 1, 지방자치단체 19)
  - 자연휴양림 보완 : 73개소(국가 37, 지방자치단체 36)
  - 산림욕장 조성 및 보완 : 17개소(지방자치단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0	-	1,869	1,712	-	1,869	-	5,450
'11	312	-	318	281	-	318	-	917
'12	333	-	334	316	-	334	-	984
'13	359	-	390	365	-	390	-	1,145
'14	377	-	407	370	-	407	-	1,184
'15	400	-	420	380	-	420	-	1,220

※ 연도별 사업개소는 누적치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12	-	318	281	-	318	-	91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림휴양 공간조성	자연휴양림 운영 이용자수 증가율	(당해년도 운영 휴양림 개 소당 이용자수-전년도운영 휴양림 개소당 이용자수)/전 년도 운영휴양림 개소당 이 용자수)×100	%	10.0	13.6	136.0
	국립자연휴양림 가동률	(연간 실 운영 객실수/연간 운 영 가능 객실수)×100	%	55	65	118.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조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07~'08 산림휴양시설재정사업모니터링'과 '08주  
요재정사업성과평가(한국조세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매년)'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사업 전체에 대한 수행과정 및 실적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에 맞는 성과지표 측정기준을 정성적·정량적으로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의 신뢰성을 증가시켰음.

○ 미흡한 점

-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및 자연휴양림조성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일부 개소 예산집행부진(이월예산 발생)

○ 건의사항

- 정상적인 예산집행(이월예산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별 긴밀한 협조 필요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이지현(주무관)

## 1. 사업목표

### ○ 사업 목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 ○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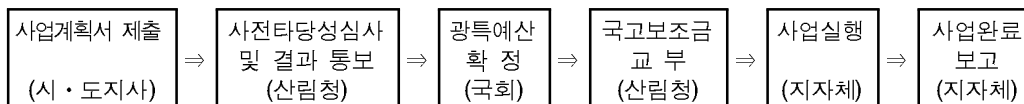
- 「산림기본법」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2.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 추진체계



###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지방수목원 : 60억원,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산림박물관 : 40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 추진내용 : 국가식물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집·증식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박물관을 확대 조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3,028억원(10년까지 투자액 : 1,724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82			1,180		2,362
'11	38		278			278		556
'12	34		238			236		474
'13	35		222			222		444
'14	35		222			222		444
'15	35		222			222		44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8		278			278		556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누적 평균 확보량	공립수목원의 식물 자원 확보량 평균	종	1,900	1,903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산주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주변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 수목원 무료관람 및 음악회, 미술품 전시회 등 문화행사시 초빙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특산물 사주기(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밤·야생화 재배, 수목관리 기술을 지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집행 대책회의, 현지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도모
- 보유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식물종관리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
  - (10년까지) 국·공·사립수목원 36개소 → (11년) 공립수목원 등 6개소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증식·보전 및 자원화와 연구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지원 필요

4-2-2-1(계속)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 1. 사업목표

-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력 회복 및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고100%), 지자체보조(국고·지방비 각 50%, 사무장채용지원은 국고50%, 지방비40, 마을10)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77	-	-	-	325	34	1,236
'11		169	-	-	-	72	5	246
'12		158	-	-	-	51	5	214
'13		170	-	-	-	57	6	233
'14		177	-	-	-	58	6	241
'15		179	-	-	-	59	6	24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	168	-	-	-	72	5	245

- 집행잔액 75백만원 발생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10.11월부터 '11년4월까지 계속되는 구제역 영향으로 방문객은 계획 보다 줄었으나 매출액은 계획보다 증가됨
  - 도농교류는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지표인 매출액이 계획을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달성을 하였다고 평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6.0	86.5	100.6
	체험마을 평균 방문객 증가율(%)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방문객수 전년도 체험마을 평균 방문객수)*100	%	20.0	14.6	73.0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증가율(%)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수 전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수)*100	%	10.0	11.5	115
	인적역량강화 교육 만족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에 대한 설문을 종합하여 측정	%	82.0	83.2	101.5

\* 방문객이 미달된 것은 '11.4월까지 계속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체험마을 방문 제한을 하였기 때문임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11년도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제도 개선·시행
  - 예산신청 전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의무이행, 총사업비 규모 30억원이상 사업 사업성검토 실시, 조성규모는 시·군당 1개 지구 조성 원칙 등
- '12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계획 수립·시행
  -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검토 및 지지체 결과통보
  - \* 검토결과 6개 시·도 15개 지구 중 14개 지구는 사업성이 있어 예산반영 추진

- '12년 신규 지구 예산신청(안) 적정성 검토
  -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한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예산신청
- '12년 신규 및 계속지구 예산신청(안) 검토
  - 신규 12지구 : 4,220백만원, 계속 33지구 : 27,891백만원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서면 모니터링 실시
  - 46개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점검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진지구 현장점검 실시
  - 서면모니터링 결과 사업부진 32개 지구에 대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 신문화공간 조성 >

- 동기화교육 실시('10.4.7~8, 마을대표 등 30명 참석)
- 사업추진 현지점검 실시('10.5월)
  - 용지매수·보상 시기 : 시행계획 승인 → 기본계획 승인 후 우선 추진가능토록 조치
- 워크숍 개최('10. 7.13~14,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담당자 등 53명 참석)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본 사업화를 위한 설문조사
-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 충북 옥천, 전북 완주, 충남 서산, 강원 횡성, 경북 의성, 제주 서귀포
-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
  - 시행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범위 명확화, 소득사업 허용 등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워크숍 개최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 체험마을리더 및 시·군 담당자 연찬회 개최
- 체험마을 방문객 대상 상해보험 지원 실시
- 외국인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 지역 20개소 선정
-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계획 수립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269개 마을에 대한 평가결과 체험마을 운영의지가 없는 28개 마을 퇴출 조치
-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사무장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체험마을 기초자료 통합관리 전산프로그램(RUCOS) 개발 완료
- 체험마을별 통합 관광, 세무 등 컨설팅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 55개소 신규 조성
  - 11개 마을에 대한 추가지원 병행 추진
- 농촌체험마을사무장(350명) 지원
- 농촌체험마을(231개 마을) 방문 체험객 상해보험 지원

<포탈이용자 만족도 제고>

- 농어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보사이트 개발·운영(연중)
  - 도농교류활성화 및 지역개발 교육수요자 편의성 도모
- 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농어촌체험마을 상품 추가 개발·판매('10.12월)
  - 40개 마을 100개 체험마을 여행상품 개발·판매 서비스 제공
- 농어촌 생활·문화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그린리포터, 여행작가가 제공하는 전문화된 콘텐츠 제공(1,000여건)
  - 체험마을과 귀촌생활에 관심있는 도시민에게 동영상 제공(100여편)
  - 월별 지역축제 등 농어촌 관련 뉴스레터 제공(800여건)

<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

- 체험마을 사무장 및 지자체공무원(180명) 대상 워크숍 개최(3월)
- 체험마을 사무장 379명 채용지원(연중)
- 체험마을 상해보험 가입 233개 마을 지원(3월~12월)

<인적역량강화 교육 만족도 제고>

- 상향식 지역개발을 주도할 인력육성을 위해 총 3,767명에 대해 리더·사무장·외국인유치마을 지도자 과정 등 교육 실시
  - \* 마을리더 : 627명, 사무장 : 788명, 퍼실리테이터 : 90명

-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 초·중·고급으로 단계를 구분한 리더과정 개설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해 경력별로 차별화된 과정 개설

□ **미흡한 점**

- 정부에서 조성한 체험마을 중 사무장지원 필요한 마을이 654개소이나 사무장 지원마을이 350개소로 미지원마을이 많아 도농교류 활성화에 어려움
- 체험마을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마을여력으로 하지 못하여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다소 낮음
-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개발 필요

□ **건의사항**

- 농어촌체험마을이 농어촌의 농외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 지원 필요

4-2-3-1(계속)	슬로시티 녹색관광자원화(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녹색관광과	담당자	장정미

### 1. 사업목표

- 슬로시티 지역을 활용한 체류형·체험관광 활성화
- ‘느리고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문화 정착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관광기금)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추진내용 : 슬로시티 지역의 자연자원, 전통문화 및 생활방식 등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3. 연차별 추진계획

- 슬로푸드 및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계속)
- 슬로시티 지역 관광인프라 조성(계속)
  - 방문자 안내센터, 주차장, 화장실 등 기초관광 인프라 조성지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1	9				2,000	2,000		4,000
'12	10				1,850	1,850		3,700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10				2,000	2,000		4,000
'14	10				2,000	2,000		4,000
'15	10				2,000	2,000		4,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9개소	-	-	-	2,000	2,000	-	4,0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목표 4%, 실적 9.5% 달성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방문객
    - ('10년) 226백만명, ('11년) 247백만명 (21만명, 9.5% 증가)
  - 생태관광 및 걷기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철학을 소재로 한 슬로시티 지역 축제(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담양 '달팽이 축제', 예산 '시골장터' 등)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동반상승, 관광객 증대 효과 유발
  -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른 가족단위 체험객 증가 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슬로시티관광자원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지 방문객 증가율 (%)	관광객 이동통계	%	4	9.5	23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슬로푸드 및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체험형 관광 문화를 전파하고, 전통문화 및 음식에 대한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유발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김경호(지도사)

## 1. 사업목표

### ○ 목 표

- 농촌체험관광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품질관리 강화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농촌 자원을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유도로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형성 및 품질관리, S/W개발 등 명소·명품화

###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1조(농어촌산업 진흥),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총사업비 : 501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103.7억원, 국비 50%)
- 사업규모 : 4개 사업, 1,680개소
-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 명품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 '11년 사업량 : 105개소 22.2억원(국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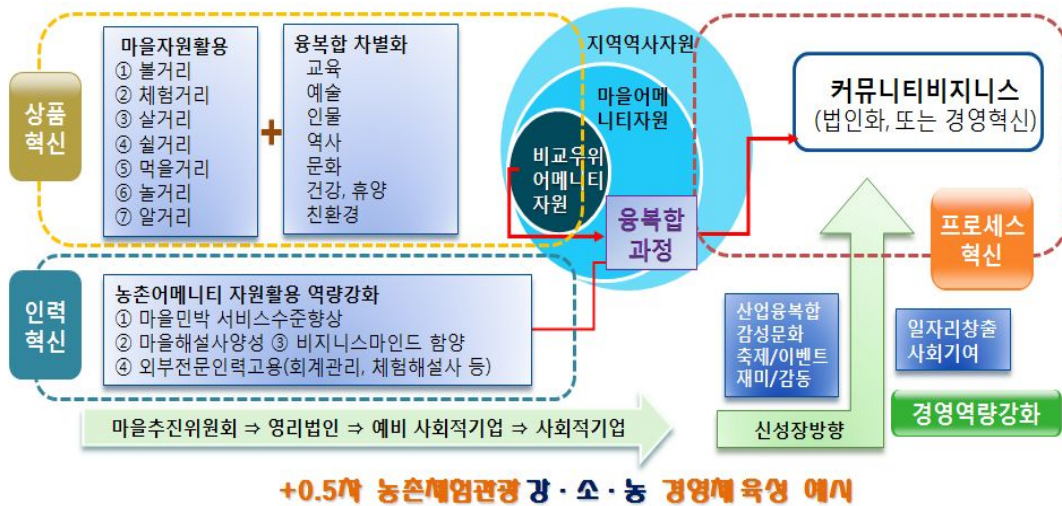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기관별 역할 분담

기 관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평가</li> <li>○ 전문교육, 지도자료 지원, 사업 홍보 등</li> <li>○ 중앙단위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li> </ul>
도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주관, 기술지원, 홍보 등</li> <li>○ 도단위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li> </ul>
시군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주관, 사업추진 지원</li> <li>○ 농업인 교육, 홍보 등</li> </ul>

○ 세부사업내용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 농산어촌체험관광 지역 협의체 구성 및 one 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농촌관광대학 운영 등) 및 컨설팅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개발
- 농촌교육농장 육성
  - 전문가 컨설팅,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교구교재 및 워크북 제작
  - 농장주의 운영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 농촌체험 명품화
  - (상품혁신) 환경친화적 시설정비, 마을갤러리 등 H/W, 명품체험 S/W
  - (운영체계) 커뮤니티 비즈니스체계구축, 법인화 또는 사회적 기업화
  - (인적자원) PBL 문제중심학습교육, 어메니티자원활용 기술능력 배양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체험관광 수요자에 대한 수용능력과 기 조성된 농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4개 사업 1,680개소를 목표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77		181.5	7.6		189.1		378.2
'10	109		20.5			20.5		41
'11	105		20	2.2		22.2		44.4
'12	84		19	0.9		19.9		39.8
'13	154		47	2		49		98
'14	225		75	2.5		77.5		15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05		20	2.2		22.2		44.4

#### 4. 성과목표 달성도

- '10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대상자 만족도 : 87.2
  - '11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만족도 : 91
  - '11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만족도 : 91.6
- ⇒ 3개 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 89.9%로 목표대비(78%) 115.3% 초과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수혜자 만족도	3개 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 (첨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 - 대상지만족도 당해년도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대상자) - 방문객만족도 당해년도 농촌체험방문객) - 교육생만족도 당해년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생)	%	78	89.9	115.3
	사업량	4개 사업(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명품화,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개소	105	105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실태 점검(170개소)으로 명소·명품화(2개소) 기반 마련
    - ※ 성공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 진단하여 수준별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 ※ 농촌테마 팸투어 프로그램(1일·1박2일, 20지역) 및 테마마을 어플리케이션 개발
  - 휴가철 가볼만한 농촌마을 홍보, 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 가이드북(테마마을, 교육농장 등) 제작 배부로 농촌체험관광 확산 기여
    - ※ 행안부, SK 등 23기관, 삼성 SERI, 옥탑CEO 등 동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농촌체험관광 리더 자율 협의체 조직으로 민간자원봉사단체와 MOU, 일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협회 등 집단지성 거버넌스 구축
    -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농촌교육농장 전국협의회 조직 : 2개 회 412명

**【농촌체험활성화 추진사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6.15)>**

- 협약단체 : 농촌전통테마마을 전국협의회,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농촌진흥청
- \* 농촌전통테마마을 : 농촌체험 정보 및 기획 제공, 품질관리 및 홍보
- \*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 농촌체험사업 활성화 조력, 재능기부 및 봉사, 문화활동 제공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6.23~26, aT센터)>**

-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교육농장, 지역별 체험관 및 전시부스 설치 홍보
  - \* 오색떡체험, 짚공예, 한과체험만들기 체험 등, 홍보리후렛 및 알림장 15,000부 제작 배부
- ⇒ 『농촌체험네트워킹사업』 추진 지역 공동홍보로 시너지 효과 거양 : 16개소 33부스



<업무협약>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 미흡한 점

- 기 조성된 농촌체험마을 콘텐츠의 다양성 및 차별화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부족
  - ※ 대상별, 연령별 다양한 농촌체험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단계별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
- 농촌교육농장, 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사업주체간 조직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교환 노력 미흡
  -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농촌교육농장 전국협의체의 자율 운영기반 구축 필요
- 기 개발된 우수한 농촌자원콘텐츠(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등)의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시스템이 미약

○ 건의사항

- 농촌체험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단계별 성장 관리 및 브랜드화 추진, 차별화된 콘텐츠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농촌 체험 명품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현상 가속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무장 및 인턴제도 등의 지원이 필요함

4-2-4-2(계속)	초·중·고·대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최국일

### 1. 사업목표

-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중·고·대학생에 대해 농어촌을 체험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농어업 우호세력 및 미래의 건전한 농수산물 소비자 육성

### 2. 사업내용

-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의 1교1촌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된 농어촌 체험학습(팜스쿨) 운영
  - 사업기간 : '10년 ~
  - 사업 지원대상 :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국 초등학교(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예정)
  - 사업 규모(사업량) : 2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1)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교내 텃밭 공간 조성 및 운영, 농촌 체험마을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연 최소 1회 이상)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팜스쿨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	9					9	
'10	20	1					1	
'11	20	2					2	
'12	30	3					3	
'13	30	3					3	
'14	30	3					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0개소	2						2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팜스쿨	운영학교 개소수	운영학교 개소수	개소	20	2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팜스쿨의 경우 단순히 체험마을 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교내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교내 텃밭을 통해 가꾼 작물로 교내 급식에 활용하는 등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 농어촌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높은 효과를 가져옴
- 건의사항 : 없음



제5절

문화·여가여건 개선





<b>5-1-1-1. (계속)</b>	<b>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b>
----------------------	---------------------------------

담당부서	도서관진흥팀	담당자	박광주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방향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개관 건립 목표
  - 수요자 예측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규모의 적정성 유도
  -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 권장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성장 촉진지역 등의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사업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지자체) → 예산신

청서 검토(문화부) → 정부지원예산 확정(기획재정부) → 예산 확정(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문화부) → 예산집행 및 정산(지자체)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지원조건 : 지방비 및 부지 확보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 주요내용
  -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건립비의 80%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1관당 한도액: 16억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개관 건립 목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7		509			476		985
'10	19		146			162		308
'11	15		111			71		182
'12	11		60			43		103
'13	6		96			100		196
'14	6		96			100		196

※ '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농어촌공공도서관 포함)' 사업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 사업 내에 통합되어 국가에서 사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15		111			71		18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수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신규개관수	관	6	7	117-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건립·운영 내실화 도모
  -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건축·개관 준비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11년 농어촌 공공도서관 5개관)
- 연 2회 사업추진실적 현황 분석, 수시 점검 및 현장조사, 워크숍 등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한 추진 도모

○ 미흡한 점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11년 말 기준 6.4만명당 1개관)
  - ※ 미국 3.2만명('08년), 영국 1.3만명('09년), 독일 0.9만명('09년), 일본 4만명('09년)

○ 건의사항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한도액 증액('04년 이후 동일) 필요
  -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율: 총 건립비의 80%, 최대 16억원 한도
  - 일반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율 : 총 건립비의 40%, 한도액 없음

담당부서	과기인재기반과	담당자	오판동사무관

## 1. 사업목표

- 지역특성을 고려한 테마중심의 중·소규모 과학관 설립을 통해
  -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5호 및 제2차 과학관 육성기본계획

##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특별시, 광역시 및 국립과학관·공립 전문과학관(BTL 과학관) 설립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선정·지원
  - ※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없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별·시설별 균형을 고려, 주변관광·문화시설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관람객 유치에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 선정
- 사업기간 : 2004 ~
- 지원규모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이내(2~3년간 단계적 지원)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매칭 투자 사업
  - 지원내용 : 과학관 건립 및 장비구입 지원
  - 기 투자액 : '11년까지 341억원 지원(39개 과학관)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붙임 참조

### 3. 연차별 추진계획

- 제1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04~'08) 반영('03.12)
  - 시·군·구별로 중소규모 공립 「테마과학관」 건립
  - 시·군·구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와 시·도가 소요예산의 일부 지원(2012년까지 23개(전국 233개 시·군·구 중 10%) 건립)
-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09~'13) 반영('09.6)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 중심의 소규모 과학관 건립 지원
  - 매년 수요조사 및 심사 평가를 통해 5~6개의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사업을 선정·지원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립과학관 및 공립 전문 과학관 설립 지역은 제외
- '04~'11년까지 총 39개 과학관(개관 23개, 건설 16개) 341억원 지원  
 < 지방테마과학관 지원 현황('04~'11) >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지원금액	34억원	44억원	60억원	54억원	40억원	39억원	40억원	30억원	341억원
지원 수	계	6	10	10	11	12	10	9	39개
	신규	6	6	7	5	6	3	2	
	계속		4	3	6	6	7	7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	202		332
'10					40	45		85
'11					30	109		139
'12					20	48		68
'13					20			20
'14					20			20

\* 지방비는 '13년 이후 중기 투자계획 미정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 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0 (9)				30	109		139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계속과제('08년 2개, '09년 1개, '10년 2개) 5개 과학관 및 신규과제 4개 과학관 지원(7개 지자체에서 신청)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테마과학관 지원 수	계속·신규과제 지원 수	개	9	9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원과학관 선정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청(국회 등)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
    - ※ 부지확보 현황 및 사업운영계획 평가 비중 35% → 40% 확대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신규과학관 건립보다는 기존에 건립·운영중인 과학관 운영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이 중요

[붙임]

□ 사업추진 절차

업 무 명	내 용	추진주체 및 일정
수요조사실시	○ 각 지자체별 계속·신규사업 수요조사 ※ 계속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등	○ 주관 : 교과부 ○ 일정 : 1월
↓		
기본방향결정	○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본방향 결정	○ 주관 : 교과부 ○ 일정 : 1월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요청	○ 주관 : 과학창의재단 ○ 일정 :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 사업계획서 승인	○ 승인 : 교과부 ○ 일정 : 2월
↓		
협약체결	○ 연구재단(기금관리)↔창의재단 협약체결	○ 주관 : 양 재단 ○ 일정 : 2월
↓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지원대상 및 규모 확정	○ 주관 : 창의재단 ○ 일정 : 2월~3월
↓		
협약체결	○ 지원 대상 지자체와 협약 체결 추진	○ 주관 : 창의재단 ○ 일정 : 3월~4월
↓		
관리 점검	○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실사 및 예산집행 중간점검	○ 주관 : 창의재단 ○ 일정 : 3월~11월
↓		
최종 점검	○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실적 최종점검	○ 주관 : 창의재단 ○ 일정 : 12월

## □ 테마과학관 현황

○ '04~'11년 까지 총 39개(준공 23, 건립중 16) 지방테마과학관 지원

(단위 : 억원)

연번	주체	사업명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비고(개관일)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	무주군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7	2							9	23	32	개관('08.5)
2	서귀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8	2							10	10	20	개관('06.6)
3	장흥군	장흥정남진천문과학관	5	3							8	27	35	개관('06.7)
4	양구군	양구국토정중앙천문대	4	3							7	24	31	개관('07.5)
5	영양군	영양반딧불이천문대	5								5	14	19	개관('05.9)
6	곡성군	곡성섬진강천문대	5								5	9	14	개관('07.9)
7	의왕시	의왕조류탐사과학관		2.28					5	2.72	10	77	87	건립중('12.2)
8	청양군	청양칠갑산스타파크		6			4				10	29	39	개관('09.7)
9	영천시	영천보현산천문과학관		6							6	24	30	개관('09.5)
10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6	2	2					10	37	47	개관('08.9)
11	충주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5	5						10	29	39	개관('08.5)
12	순천시	순천만천문대		6	4						10	18	28	개관('08.11)
13	의정부	의정부과학도서관천문우주체험실			7						7	17	24	개관('07.10)
14	화천군	화천광덕산천문과학관			7	3					10	40	50	건립중('12.6)
15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7	3					10	60	70	개관('09.4)
16	서산시	서산천문기상과학관			7	3					10	34	44	개관('10.9)
17	남원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6		3				9	37	46	개관('09.10)
18	부안군	부안곤충탐사과학관			8	2					10	25	35	개관('10.5)
19	하동군	하동지리산생태과학관			7	3					10	18	28	건립중('12.6)
20	정읍시	정읍첨단과학관				4	3	3			10	10	20	개관('10.2)
21	목포시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5	2	3			10	107	117	건립중('12.9)
22	고흥군	고흥천문과학관				6	2	2			10	30	40	개관('11.2)
23	영천군	영천최무선장군과학관				8		2			10	39	49	건립중('12.4)
24	예천시	예천우주환경체험관				8	2				10	15	25	개관('08.8)
25	함양군	함양지리산악초체험과학관				7		3			10	16	26	개관('10.7)
26	당진군	당진삼교호해양테마과학관					3		7		10	15	25	개관('10.12)
27	원주군	원주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4		2	4	10	20	30	건립중(10착공)
28	울진군	울진생태곤충체험과학관					5	5			10	55	65	개관('09.7)
29	구미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3	7			10	20	30	개관('11.3)
30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5		5		10	10	20	개관('11.10)
31	증평군	증평짜구산천문대						5	5		10	40	50	건립중('12예정)
32	보령시	보령서해갯벌생태과학관						5	5		10	25	35	건립중(10착공)
33	고성군	고성공룡테마과학관						4	3	3	10	15	25	건립중('12.3)
34	장흥군	물과학관							3	3	6	24	30	건립중(11착공)
35	영주시	공세계과학관							2	3	5	40	45	건립중
36	포천시	천문우주과학관								5.28	5.28		5.28	건립중
37	거창시	천문과학관								2	2		2	건립중
38	동해시	에너지과학관								5	5		5	건립중
39	순창시	건강장수과학관								2	2		2	건립중
계		39개 지방테마과학관	34	41.28	60	54	36	39	37	30	331.28	1,033	1364.28	

※ 신청철회('10년) : 고창(신바람 에너지과학관, '08선정), 군산(녹색미래에너지체험과학관, '10선정)



5-1-2-1(계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홍의석

## 1. 사업목표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규모 : 5개소지원(10년도까지 33개소 지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개소당 6억원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 추진체계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 2010. 12월 ○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②	지원 신청서 접수	○ 2011. 1. 10.까지 ○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	평가 실시	○ 2011. 1월 ○ 정량평가,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2011. 1월 ○ 문화체육관광부⇒시·도(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⑤	기금 교부·관리·정산	○ 2011. 1월~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시·도⇒시·군·구⇒교육청(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 서비스가 빈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체육활동 여건을 연차적으로 개선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50			150
'10	5	-	-	-	30	-	-	30
'11	5	-	-	-	30	-	-	30
'12	5	-	-	-	30	-	-	30
'13	5	-	-	-	30	-	-	30
'14	5	-	-	-	30	-	-	3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	-	-	-	30	10	-	40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1개소당 6억원 정액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복합체육 시설지원	지원개소수		개	5	5	100
	지원액		억원	30	30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차별없는 균등한 체육인프라 확충(도·농간 격차 완화)을 위해 공공체육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 지역적 특성, 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여 적은 예산 투자에 비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미흡한 점

- 일부 사업의 경우, 부지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건의사항 : 지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5-1-3-1	<b>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문화체육관광부)</b>
---------	------------------------------

담당부서	도서관진흥팀	담당자	한숙희

### 1. 사업목표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13년까지 153개소 조성)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서관법 제27,28조(공공도서관 설치, 업무)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 격차 해소의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12개월)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시·도에서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
- 추진내용 : 농산어촌 등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유휴 공공시설 및 노후문고 리모델링 조성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조성지원계획 수립 통보 : '11. 9월
- 신청 접수 : '11. 9. 21(수) ~10. 10(월)
-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 '11. 11월

- 사업비 시도 교부 : '12. 1~2월
- 조성사업 시행 : '12. 1~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접수 : '13. 1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			40		24		64
'10	14			8		5		13
'11	19			11		6		17
'12	22			11		7		18
'13	10			5		3		8
'14	10			5		3		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9			11		6		17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작은도서관조성	농어촌 작은도서관 개소수	읍면지역 작은도서관 신규개소수	개소	19	19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정보의 획득과 이용이 취약한 농산어촌지역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간,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의 장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고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간 균형 및 사업추진의 안전화 도모
- 미흡한 점 : 작은도서관 조성이후 운영에 어려움
- 건의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지원 필요

5-1-4-1(계속)	<b>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문화체육관광부)</b>
-------------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영미
			S

### 1. 사업목표

-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문화 역량 강화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연간 4억원('10년까지 기투자액 : 32.6억원)
- 사업규모 : 매년 14개 내외 컨설팅 연구용역  
(‘11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125건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50% 매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지역소재 대학)

### 3. 연차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사업 컨설팅, 지자체간 연계 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광특회계(부처편성사업) 편성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	-		21.46	-	21.46	-	42.92
'11	14	-		4.30	-	4.30	-	8.60
'12	12	-		4.29	-	4.29	-	8.58
'13	12	-		4.29	-	4.29	-	8.58
'14	12	-		4.29	-	4.29	-	8.58
15	12			4.29		4.29		8.5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4개			4.30		4.30		8.6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14개 과제 대비 14개 과제 수행(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개수	사업실적 보고	개	14	1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대학을 주체로 하여 지자체와 문화예술활동가가 공동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현안 해결로 선순환 구조 확립

<b>5-2-1-1(계속)</b>	<b>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문화체육관광부)</b>
--------------------	------------------------------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황순헌

### 1. 사업목표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전국 문예회관 및 연계된 소외시설 등을 통한 공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 사업규모 : 10개 국립예술단체 참여 51개 지역 123회 공연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공연당 20~40백만원 지원(국고, 정액)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주요내용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 및 연계시설 파견 공연
- 시도별 배분내역 : 지역별 문예회관 대상 공모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전국 각지역의 문화예술회관과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
  - \* 지방문예회관(재정자립도 40%미만지역) 및 인근 소외시설(서울 및 광역시 문예회관, 독립문예회관 제외)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	
'10	55,000명			25.00				25.00
'11	72,000명			33.75				33.75
'12	75,000명			35.00				35.00
'13	75,000명			35.00				35.00
'14	75,000명			35.00				35.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7,000명	-	-	33.75	-	-	-	33.75

- 당초 계획대로 집행 완료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수혜자수	관람객 조사	천명	72	67	93.1

- 소외지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레퍼토리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파견하여 소외지역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 참여 지역문예회관 : 80개소/연계소외기관 : 46개소
  - 공연 횟수 : 160회(참여기관 : 12개)/수혜인원 : 67,000명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수준높은 국립예술단체 공연프로그램의 소외지역 주민대상 공연을 통해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방문화예술 수준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	김영란 권수현 신명희

## 1. 사업목표

- 도서관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 독서기반을 제공하고 정보 문화 격차를 해소함
- 박물관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축소된 형태의 작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학교에 문화 교육 확대

## 2. 사업내용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업기간 : 2007년 ~
- 총사업비 : 7.5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14억원)
- 사업규모 : 전국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아동센터 및 보육원 대상 도서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지원  
( '11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261개소/5,385명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국립민속박물관>

- 사업기간 : 2011. 3. 16 ~ 12. 9
- 총사업비 : 84,000천원
- 사업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 지원형태/조건 : 직접수행/전액 국고
- 추진내용 : 전국의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전시버스관람, 체험교육 운영

※ 2011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결과 : 총 48회, 4,855명 참여

차수	교육일	지역	학교	참여인원
1차	3.16(수)	전남 순천	인안초등학교	26
2차	3.17(목)	전남 곡성	오산초등학교	33
3차	3.18(금)	전남 화순	사평초등학교	78
4차	3.30(수)	충북 음성	대장초등학교	52
5차	3.31(목)	충북 괴산	영풍초등학교	106
6차	4.1(금)	충북 충주	강천초등학교	43
7차	4.13(수)	강원 고성	오호초등학교	58
8차	4.14(목)	강원 고성	도학초등학교	56
9차	4.15(금)	강원 양양	회룡초등학교	51
10차	4.27(수)	전남 담양	담주초등학교	57
11차	4.28(목)	전남 담양	봉산초등학교	73
12차	4.29(금)	전남 구례	문척초등학교	79
13차	5.18(수)	충북 청원	수성초등 구성분교	70
14차	5.19(목)	충북 괴산	백봉초등학교	49
15차	5.20(금)	충북 청원	외천초등학교	39
16차	6.15(수)	전남 영광	불갑초등학교	49
17차	6.16(목)	전남 화순	청풍초등학교	44
18차	6.17(금)	전남 영암	도포초등학교	81
19차	6.29(수)	경북 문경	신기초등학교	87
20차	6.30(목)	경북 문경	호계초등학교	70
21차	7.1(금)	경북 안동	남선초등학교	62
22차	7.20(수)	경남 창녕	남지도서관	250
23차	7.21(목)	경남 밀양	성우애육원	89
24차	7.22(금)	경남 통영	통영육아원	60

25차	8.10(수)	충남 보령	보령도서관	150
26차	8.11(목)	충남 청양	청양도서관	270
27차	8.12(금)	충남 홍성	홍성도서관	270
28차	8.24(수)	전북 완주	대승한지마을	70
29차	8.25(목)	전남 신안	신안군립도서관	60
30차	8.26(금)	전남 목포	목포어린이도서관	1,000
31차	9.28(수)	전남 보성	낙성초등학교	66
32차	9.29(목)	전남 광양	골약초등학교	110
33차	9.30(금)	전남 고흥	대서초등학교	68
34차	10.12(수)	충북 충주	세성초등학교	37
35차	10.13(목)	충북 영동	상촌초등학교	76
36차	10.14(금)	충북 보은	종곡초등학교	39
37차	10.26(수)	전남 구례	토지초등학교	106
38차	10.27(목)	전남 광양	세풍초등학교	90
39차	10.28(금)	전남 나주	공산초등학교	83
40차	11.9(수)	전남 진도	고성초등학교	94
41차	11.10(목)	전남 순천	주암초등학교	83
42차	11.11(금)	전남 고흥	풍양초등학교	67
43차	11.23(수)	충남 서산	강당초등학교	70
44차	11.24(목)	충남 태안	화동초등학교	76
45차	11.25(금)	충남 태안	이원초등학교	76
46차	12.7(수)	충북 충주	산척초등학교	85
47차	12.8(목)	충북 청원	남이초등학교	105
48차	12.9(금)	충북 보은	수한초등학교	42

###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기간 : 2011. 2. 22.~12. 15.
- 사업주체: 국립중앙박물관
- 총사업비 : 16,4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 국고
- 사업규모 : 총 76회 82개 단체(기관) 방문 운영, 40,392명 참여

※ 2011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결과

회차	기관명	참여자(명)	운영일
1	서울 용산 미8군 영내	300	02.22(화)
2	서울 송파구 잠현초등학교	632	03.22(화)
3	서울 강동구 상일초등학교	520	03.24(목)
4	전북 완주군 삼례중앙초등학교	480	03.29(화)
5	전북 군산시 미룡초등학교	190	03.30(수)
6	충남 서천시 서도초등학교	255	03.31(목)
7	서울 강서구 개화초등학교	465	04.05(화)
8	서울 노원구 상천초등학교	210	04.06(수)
9	서울 광진구 중광초등학교	534	04.07(목)
10	전남 목포임성초등학교	150	04.13(수)
11	전남 목포인성학교	160	04.14(목)
12	전남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2,600	4.15(금)~16(토)
13	경기 동두천시 미2사단	300	04.22(금)
14	인천 동구 동명초등학교	310	04.26(화)
15	인천 중구 운남초등학교	200	04.27(수)
16	경기 군포시 한얼초등학교	461	04.29(금)
17	서울 용산구 미국인초등학교	800	05.03(화)
18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 내	2,000	05.05(목)
19	경기 용인시 문화유적전시관	1,050	05.12(목)
20	경기 용인시 동천초등학교	680	05.13(금)
21	서울 마포구 성메작은도서관	560	05.14(토)
22	경남 함안군 산인·문암·법수초등학교	130	05.17(화)
23	경남 의령군 의령중학교	250	05.18(수)
24	경남 거창군 경남민속예술제	1,250	05.19~20
25	서울 강서구 염감초등학교	280	05.24(화)
26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432	05.26(목)
27	경기 포천시 가산초등학교	381	05.31(화)
28	경기 동두천시 평화박물관	520	06.02(목)
29	경기 안산시 성호문화제	1,500	06.04(토)
30	서울 용산구 남정초등학교	400	06.08(화)
31	강원 가평군 가평초등학교	650	06.15(수)
32	강원 양구군 도솔산전적문화제	1,300	06.17(금)~18(토)
33	서울 중구 봉래초등학교	300	06.23(목)
34	서울 강서구 삼정초등학교	410	06.24(금)
35	전남 영암군 대불초등학교	340	06.28(화)

36	전남 함평군영화학교	250	06.29(수)
37	경기 화성시 해원학교, 장안초등학교	215	07.01(금)
38	경남 고성군 고성동중학교	180	07.05(화)
39	경남 통영시 인평초등학교	406	07.06(수)
40	경남 통영시 원량초, 옥지중학교	150	07.08(금)
41	서울 금천구 영남초등학교	540	07.13(수)
42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	310	07.14(목)
43	충남 금산군 추부도서관	400	07.27(수)
44	충남 금산군 기적의도서관	300	07.28(목)
45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	1,050	07.30~31
46	전남 강진군 청자문화제	1,200	08.6(토)~7(일)
47	경기 시흥시 갯골축제	2,900	08.12~14
48	강원 홍천도서관	750	08.23~24
49	충북 옥천도서관	750	08.30~31
50	전남 곡성군 석곡초등학교	230	09.06(화)
51	전남 광양시 백운초등학교	900	09.07(목)
52	충북 음성군 대소초등학교	620	09.20(화)
53	충북 음성군 무극초등학교	310	09.21(수)
54	충북 음성군 다문화센터	320	09.22(목)
55	경남 양산시 물금초등학교	240	09.28(화)
56	경남 양산시 성산초등학교	910	09.29(목)
57	서울 노원구 연지초등학교	410	10.06(목)
58	대구 달서구 달서구청(다문화)	800	10.09(일)
59	대구 남구 대구보건학교	210	10.10(월)
60	경기 여주군 능서초등학교	160	10.12(수)
61	경기 양평군 창인학교	350	10.13(목)
62	경기 파주시 새얼학교	245	10.18(화)
63	경기 양주군 봉암초등학교	120	10.20(목)
64	충남 당진군 우강초등학교	196	10.25(화)
65	충남 천안시 새꿈학교	150	10.26(수)
66	충남 천안시 은석초등학교	190	10.27(목)
67	경기 고양시 행신초등학교	550	11.03(목)
68	서울 서대문구 대신초등학교	340	11.04(금)
69	전남 완도군 고금초등학교	210	11.08(화)
70	전남 완도군 약산중·고등학교	120	11.09(수)
71	전남 완도군 금일초·중학교	260	11.11(금)
72	서울 도봉구 방학중학교	350	11.24(목)

73	서울 강북구 미양초등학교	550	11.25(금)
74	서울 노원구 중계초등학교	300	12.07(수)
75	서울 은평구 진관초등학교	350	12.14(수)
76	서울 강서구 방원중학교	600	12.15(목)
총 참여인원: 40,392명			

### 3. 연차별 추진계획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추진일정 : 2011. 3 ~ 11
- 추진내용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공공도서관 - 이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8개월간 매주 1회 보육원 등에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방문 운영
- 추진실적
  - 90개 운영도서관·이동센터에 2,156회 독서프로그램 운영, 총7,723종 28,918책 도서지원, 책읽기, 동화구연, 독후활동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500명/575개소		-	31.5	-	-	-	31.5
'10	1,500명/75개소		-	4.5	-	-	-	4.5
'11	1,800명/90개소		-	4.5	-	-	-	4.5
'12	2,700명/135개소		-	7.5	-	-	-	7.5
'13	2,700명/135개소		-	7.5	-	-	-	7.5
'14	2,800명/140개소		-	7.5	-	-	-	7.5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800명/ 90개소			4.5				4.5

### <국립민속박물관>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 계속 운영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5,700명/170개소			412.3				412.3
'10	2,000명/25개소			60.6				60.6
'11	3,000명/35개소			85				85
'12	3,200명/35개소			87.7				87.7
'13	3,500명/35개소			89				89
'14	4,000명/40개소			90				90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855명/48개소			84				84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규모 증대

### <국립중앙박물관>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80,000			3.99				3.99
'10	40,000명			2.35				2.35
'11	40,000명			1.64				1.64
'12	60,000명			1.57				1.57
'13	62,000명			1.73				1.73
'14	62,000명			1.90				1.9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11	40,392명 76개소			1.64				1.64

4. 성과목표 달성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공도서관· 아동센터 지원	계획 대비 실적	%	90	90	100
	1인당 지원률	계획 대비 실적	%	1,800	1,800	100

< 국립민속박물관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실적 : 참여기관 35개교/48개 기관, 참여 인원 3,000명/4,855명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규모 증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참여기관	횟수	회	35	48	137
	참여어린이수	참여인원	명	3,000	4,855	162

< 국립중앙박물관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박물관	수행횟수	횟수	횟수	60	76	12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잘된 점

-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들의 변화
  - ‘책읽기’, ‘책읽어주기’ 독서프로그램 참여로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 및 책에 대한 관심 증가, 도서관 방문 횟수 증가
  - 어린이들의 심적 안정감, 창의적인 사고, 감수성 등 형성
  - 듣기, 이해력 및 발표력 향상
  -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사회성, 자아존중감, 문해력 향상
  - 어린이들이 개인도서를 소장하게 됨으로써 책과의 친밀감 형성
- 보육원 등 참여기관의 변화
  - 보육원 등 기관에 도서관이 생기고,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 형성
  - 기관의 도서관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 제공
- 공공도서관 등 참여기관의 변화
  - 사서로서의 역할 및 책임감 발견
  -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지역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책읽기 사업에 대해 홍보

< 국립민속박물관 >

- 잘된 점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확대 운영으로 인한 정책 수혜자 증대

< 국립중앙박물관 >

○ 잘된 점

- 당초 60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많은 요청에 따라 76회 방문 운영, 40,392명 참여를 통해 박물관 교육 및 홍보 효과를 높임
- 박물관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의 방문을 통해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직접 방문의 계기를 마련

○ 미흡한 점

-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수요자의 의견 등을 반영 빠른 대처 필요
- 지역 각 초등학교의 정확한 교육 일정 및 학생 현황 파악으로 교육 운영 시 일선 학교의 체계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5-2-1-3(계속)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미화

### 1. 사업목표

- 추진목적
  - 사회적 은퇴 세대인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년계층의 문화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노년 세대를 소외집단이 아닌 인생과 사회의 적극적 참여 계층으로 유도
-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비('11) : 2,18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문화부) → 교부신청(연합회) → 사업비 교부(문화부) → 사업공모 및 선정(연합회) → 사업비재 교부(연합회) → 사업수행(문화원) → 사업시행/추진상황 모니터링(연합회/문화부) →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정책반영 및 환류(문화부/연합회)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2	-	-	121		-	-	121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02	-	-	22	-	-	-	22
'12	150	-	-	24	-	-	-	24
'13	160	-	-	25	-	-	-	25
'14	170	-	-	25	-	-	-	25
'15	180			25				2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02	-	-	22	-	-	-	22

- 수혜자 확대 및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비 및 자부담 등의 매칭이 추가되어 지원 프로그램수가 당초 목표보다 상향 지원됨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수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개수	150	202	135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수	4,500	7,037	15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
  - 어르신들의 삶의 생활문화를 창조적 문화컨텐츠로 개발 및 전승
- 건의사항
  - 어르신들의 근본적인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이 아닌 향유 계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확대 지원 필요

5-2-2-1(계속)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영미
			s

### 1. 사업목표

-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의 구축과 발전을 위한 자생력 기반 마련 및 생활문화공동체의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확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2억원
- 사업규모 : 25개 단체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 연합회
- 사업내용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 지원대상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 수혜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주민
- 사업추진절차 : 사업설명회(보조사업자)→사업추진단체 공모(보조사업자)→추진단체 심의·확정(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사업계획 보완·협의를(보조사업자·선정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선정단체→보조사업자)→사업비 교부(보조사업자→선정단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5				60			60
'11	25				12			12
'12	20				12			12
'13	20				12			12
'14	20				12			12
'15	20				12			1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개소	-	-	-	12	-	-	1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0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예술단체 지원 개수	지원 단체 수	단체	20	25	125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동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간의 소통 강화 및 화합 도모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5-2-2-2(계속)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성필

###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뛰어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44개 내외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6,7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정률, 50%)
- 지원내용 : 문화관광축제 지원
- 지원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 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시행 및 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3. 연차별 추진계획

- 문화관광축제 지속적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44				72.5	72.5		145
'11	44				67	67		134
'12	45				67	67		134
'13	45				67	67		134
'14	45				67	67		13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4개소				67	67		13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31.5백만명 / 실적 26.9백만명 (목표달성도 85.4%)
  - 구제역으로 인해 1월~3월까지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꽃축제,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5개 축제가 취소되면서 관광객수 감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관광축제 지원	문화관광축제 관광객수	관광객 통계	백만명	31.5	26.9	85.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매년 현장평가 위원을 위촉('11년 15명)하여 현장 평가, 관광객 (축제 참가객) 만족도 조사 실시(축제 당 200명 이상), 담당자의 현장 점검, 경제효과 분석(지자체 실시) 등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
  - 현장 평가 및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요구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축제 선정시 활용
  - 2011년 말 현재 문화관광축제 관광객수 26,857,073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2천6백억 여원으로 투입대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미흡한 점

- 매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1년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 5개축제(화천 산천어, 왕인, 신비의 바닷길, 태백 눈 축제, 제주 들불 축제)가 불가피하게 미 개최됨

○ 건의사항

-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각 지역축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유도, 콘텐츠 확보방안 컨설팅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5-2-2-3(완료)	<b>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b>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 1. 사업목표

- 문화부의 농어촌 문화향수 격차해소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농식품부의 농어촌 삶의 질 제고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총사업비 : 14억원(10년까지 기투자액 : 14억원)
- 사업규모 : 문화이모작 2개마을(경북 영덕, 전남 강진), 대학생문화(20개마을, 200명 대학생), 문화농부키움(매개인력 교육·연수, 공동워크숍, 매뉴얼 제작 등)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 사업기간 : 2010. 1 - 12
  - 재원형태 : 농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문화부(토토기금)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0	700			700	1,400			1,400
2011	-			-	-			-
(증△감)	△700			△700	△1,400			△1,4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이 사업은 '10년도에 농식품부와 문화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11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0년도 농어촌 마을에 문화를 심기위해 농식품부와 문화부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 농어촌의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여 관광과 연결시켜 농외소득원 창출이 필요하다는 가능성 평가
- 미흡한 점
  - 예산사정상 '11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함
- 건의사항 : 없음

5-3-1-1(계속)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최성훈

## 1. 사업목표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 제고, 바른 인성 함양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 2. 사업내용

###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예술강사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총 11,419개교)
- 사업규모 : '11년도 5,772개교(수혜학생 176만명), 예술강사 4,164명 파견
- '11 예산 : 총 사업비 620억원(국고 322억원 지방비 58억원 지방교육채정 240억원)
- 지원조건 : 신청학교 심사를 통해 강사파견 학교 선정
- 지원내용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시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나.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 지원대상 : 농·산·어촌 등 소외/취약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사업규모 : '11년도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26개교 지원  
\* 예술교육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원
- '11 예산 : 국고 25억원
- 지원조건 : 공모 실시 후 지원대상 학교 선정
- 지원내용 : 1인 1예능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문 예술강사 배치, 교육 프로그램, 교육 기자재 지원고교에 파견시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본 방향

-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 농산어촌 등 소외·취약지역 학교 선정 확대

####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예술강사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708개교			1,637		1,575		3,213
'10	5,436개교			313		302		615
'11	5,772개교			322		298		620
'12	6,000개교	-	-	322	-	295		618
'13	6,200개교	-	-	330		330		660
'14	6,300개교	-	-	350		350		7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772개교	-	-	322		298		620

#### 나.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4	-	-	112		-	-	112
'10	-	-	-	-	-	-	-	-
'11	26	-	-	25	-	-	-	25
'12	26		-	25	-	-	-	25
'13	30	-	-	30	-	-	-	30
'14	32	-	-	32	-	-	-	3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6개교	-	-	25	-	-	-	25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수혜자의 만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수혜자만족도	수혜자 설문조사	점	77	82	10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국악·연극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지원  
으로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양성
-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을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력을 제공



제6절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1-1-1(계속)	경관보전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현숙(주무관)

### 1. 사업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439억)
- 사업규모 : '11년 기준 13,741ha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3. 연차별 추진계획

<시행계획 추진계획>

	사업규모 (ha)	국 비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6,600	15,679				6,684		22,363
'11	13,741	13,903				5,958		19,861
'12	13,833	7,475				3,204		10,679
'13	18,538	21,280				9,120		30,400
'14	18,538	21,280				9,120		30,4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3,741	13,903	-	-	-	5,958	-	19,86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관보전직불제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당해연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100 - 100	%	5	14.7	294

\* '11년에는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를 성과지표로 설정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작물을 이용한 축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축제 개최로 방문객 증가 및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활성화 및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
- 농촌경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농촌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능 외에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한 점

- 주민 자발적인 경관가꾸기, 마을가꾸기의 확산·발전이 부진하고, 경관직불제를 단순히 소득보전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마을경관협약이 형식화되는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소극적
- 사업계획이 마을단위로 수립되어 사·군단위 경관계획과의 연계·통합효과 부족

○ 건의사항 :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토록 적극 추진

총괄부처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박은철사무관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제3항 제4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비('11년) : 55,048백만원(국비 38,762, 지방비 16,286)
  - \* 행정비 등을 제외한 순사업비 : 53,093백만원(국비 37,165, 지방비 15,928)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거주 실경작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규모 : '11년도 조건불리지역 107,737ha
- 지원형태 : 자체단체 경상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조건 :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
- 추진기관 : 지자체(이행점검 교육 및 지원은 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 조건불리 법정리의 농지 및 초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논·밭·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도서지역은 경지율과 경지경사도에 관계없이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농지관리 등 실천의무 부과
- 조건불리직불 추진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11년도 시행계획>

<단위: 백만원>

	지원면적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7,737	37,165				15,928		53,093
대구	37	13				6		19
인천	2,048	716				307		1,023
울산	51	18				7		25
경기	653	228				97		325
강원	19,192	6,600				2,828		9,428
충북	7,986	2,774				1,189		3,963
충남	2,110	731				314		1,045
전북	3,673	1,269				544		1,813
전남	18,851	6,579				2,820		9,399
경북	19,571	6,820				2,923		9,743
경남	7,636	2,664				1,142		3,806
제주	25,929	8,753				3,751		12,504

\* 지원면적은 '11년 예산 산출 자료임

\* '11년 예산 중 교육·홍보비, DB관리비 및 시·군 행정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예산임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지원면적 (ha)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9,939	34,346				14,720		49,066
대구	36	13				6		19
인천	1,854	648				278		926
울산	42	14				6		20
경기	621	217				93		310
강원	18,119	6,130				2,627		8,757
충북	7,394	2,572				1,102		3,674
충남	1,962	678				291		969
전북	3,172	1,099				471		1,570
전남	17,199	6,001				2,572		8,573
경북	18,356	6,394				2,740		9,134
경남	6,929	2,416				1,035		3,451
제주	24,255	8,164				3,499		11,663

\* 지원면적은 '11 보조금 교부 산출 자료임

\* '11년 예산 중 교육·홍보비, DB관리비 및 시·군 행정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예산임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11년 조건불리 지역 중 정주농 비율 목표를 98.5%로 설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이탈농 저지율	최근5년간 정주 농비율 /당해년 도 정주농비율 *정주농비율 =금 년 농가수 /작년 농가수×100	%	98.5	100.9	105.3

6-1-2-1(계속)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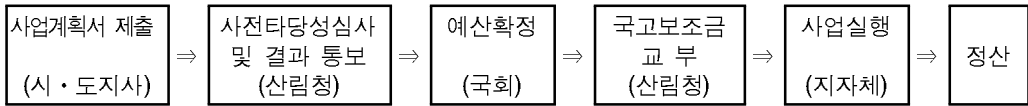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이지현(주무관)

### 1. 사업목표

- 사업 목적
  -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산림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
  - 산림생태계의 연구·교육 및 탐방·체험을 위한 국민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
- 추진 근거
  - 「산림보호법」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자생식물원 : 15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지역생태숲 : 30억원,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추진내용
  - 자생식물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자생식물의 조사·증식·보존 및 서식지내 복원·적용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797억원('10년까지 투자액 : 780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41	98		539		1,078
'11	33		83	18		101		202
'12	32		88	20		108		216
'13	33		90	20		110		220
'14	33		90	20		110		220
'15	33		90	20		110		22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3		83	18		101		20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0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개수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개수	개소	44	44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인근 농촌전통 테마마을과 체험학습 교류 활성화 : 목공예, 꽃누르미, 솔방울공예, 나뭇잎 천연염색 등

- 생태숲내 농산물판매점을 설치하여 직거래 장터 마련
- 인근 산촌마을 등 안내 및 홍보
- 주변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 생태숲 무료관람 및 음악회, 미술품 전시회 등 문화행사시 초빙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도모
- 보유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식물종관리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 : 2개소('11년)
- 「타당성심사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생식물원 조성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투명성 확보('10.5.23)
- ※ 총 17개소중 지원대상자 8개소 선정 : '12년이후 예산반영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지역 고유 자생·향토식물의 체계적인 보존·육성을 위하여 자생식물원 확대조성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안완기

## 1. 사업목표

- 마을개발 사업전 마을의 생태·환경·문화 등에 대해 사전 분석 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중심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스템 정착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4조

##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지구 : 2012년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지역 중 도별 1개소, 총 7개소 시범 시행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총괄계획가의 임무 : 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의 총괄 조정
  - 기본계획 수립시 주요 내용을 검토 조정
  - 마을개발 사업의 기획안을 수립하고, 용역발주 방식 등을 협의 결정
  - 관련 분야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자문 요청
  - 지역주민에게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 시장군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총괄계획가 운영기간 : 마을개발사업 전 과정(최소 5년차)
- 총괄계획가 시범운영 기간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분석
- 총괄계획가의 보수 :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여부 결정

<'12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	2.45						2.45
강원	1	0.35						0.35
충북	1	0.35						0.35
충남	1	0.35						0.35
전북	1	0.35						0.35
전남	1	0.35						0.35
경북	1	0.35						0.35
경남	1	0.35						0.35

※ '11년도 시행계획을 각 시·도별로 기재

<'11년도 추진실적 > : 해당없음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충남								

### 4. 성과목표 달성도

○ '12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총괄계획가 운영	총괄계획가 운영율(%)	당해연도 총괄계획가운 영슈시범목표수×100 *12년시범권역7개권역	%	-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1-4-1(계속)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김상범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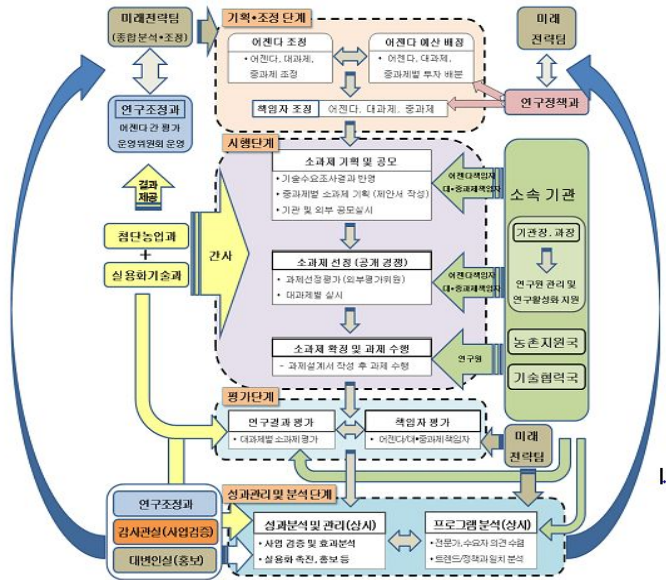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 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 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조사),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 총사업비 : 330백만원
- 사업규모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기술 6과제
- 지원형태 : 국비 100%
- 지원조건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선정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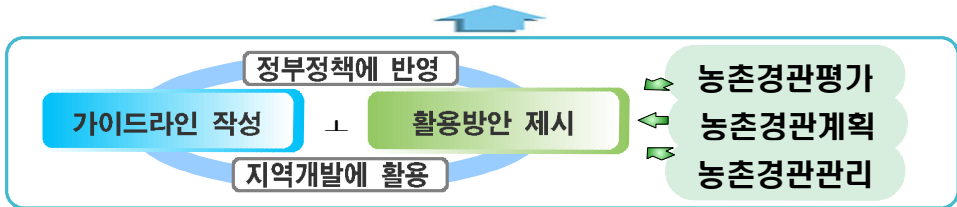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 사업추진절차



○ 사업 추진 계획

-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보서비스 구축 연구
-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
- 농촌경관의 원형보전 및 복원연구
- 농산어촌지역의 대표경관 선정 및 활용연구
- 녹색경관 형성을 위한 체험공간 및 환경시설물 디자인 현장적용 연구
- 그린로드 발굴 및 조성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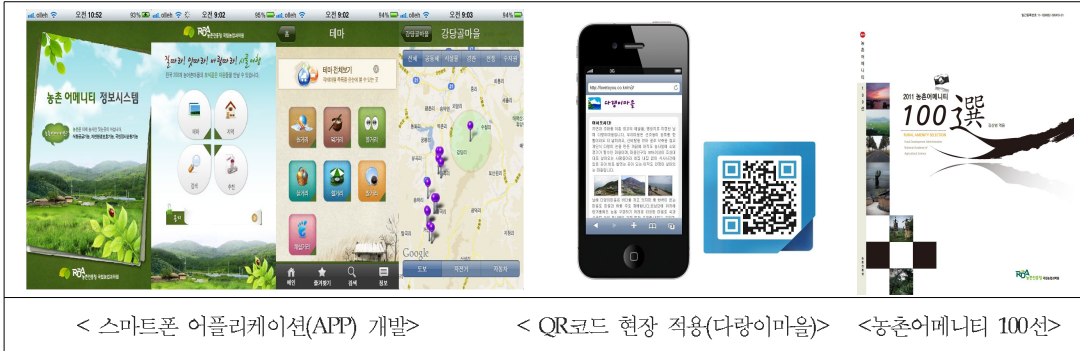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관리기반 구축**



○ 사업 추진실적

-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보서비스 구축

- (11)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DB구축 : 125읍면, 31,274건
- IT기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200마을), QR코드(3종) 개발
- 농촌어메니티 경관 100선 발간, 홍보 활용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 QR코드 현장 적용(다랑이마을)>

<농촌어메니티 100선>

-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

- 경관작물을 활용한 녹색경관 조성 : 충북 옥천군 청선면 장수리, 산리
- 한옥, 돌담을 주제로 농촌전통경관 조성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2011. 11. 03 수상)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남사에담촌 경관만들기”

- 녹색경관 형성을 위한 체험공간 및 환경시설물 디자인 현장적용 연구
- 농촌경관형성을 위한 환경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



<경관작물을 활용한 녹색경관 조성계획(옥천)>

<전통경관 조성계획(경관대상, 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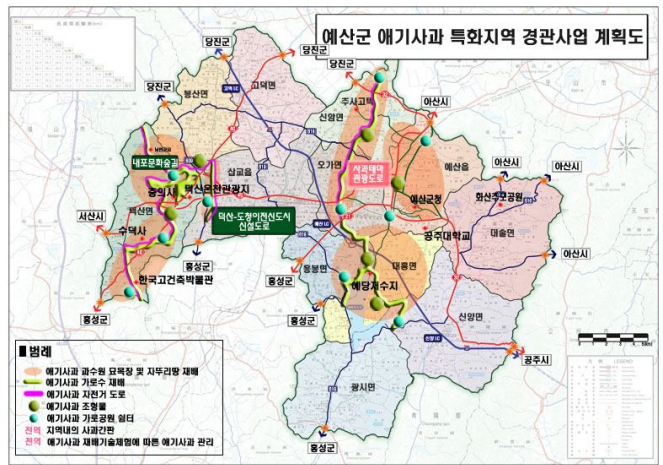
<환경시설물 매뉴얼>

- 농촌경관의 원형보전 및 복원연구

- 농촌 원형경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현장적용 : 3개 마을
- 농촌원형경관지구 제안 : 원형 보전·복존, 복원·정비, 재생·활동 지구

**<나주 도래마을 농촌원형경관지구(안)>**      **<농촌 원형경관 보전 및 복원 가이드라인>**

- 농산어촌지역의 대표경관 선정 및 활용연구
- 우수경관 선정시법을 활용한 우수경관사업 제안(예산군)



<예산군 우수경관 사업계획도(사과특화지역)>

- 그린로드 발굴 및 조성기술 개발
- 농촌어메니티 테마연계형 그린로드 발굴 및 조성기술 개발
- 어메니티를 주제로 경관길, 체험길 등 그린로드 개발 : 10개소

**<농촌어메니티 테마연계형 그린로드>**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역사체험길,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감동길 >**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4/505	-	-	33	-	-	-	33
'10	179/140	-	-	7/7	-	-	-	7/7
'11	145/140	-	-	7/7	-	-	-	7/7
'12	125	-	-	7	-	-	-	7
'13	50	-	-	3	-	-	-	3
'14	50	-	-	3	-	-	-	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45	-	-	7	-	-	-	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04%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조사 읍면지역수	자원조사보고서	읍면	125	125	100
	농촌경관관리 및 조성 현장지원 수	현장지원 보고서	지원 건수	15	20	13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사업추진시 사전 여론수렴(2011 녹색어메니티자원분야 과제평가('10.12.07), 중간진도관리('11.07.19), 연말평가('11.12.07) 등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지침에 의거 일정대로 추진하였으며,

- 농업농촌유산제도, 경관사전검토제도 등 농식품부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추진대책”을 통한 정책적 교류와 농촌경관포럼, 농촌경관연구회를 통한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달성하였음
- 연구성과는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농촌경관워크샵 등 행사에서 일반인 및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 및 홍보하였으며 특히 국토해양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농산어촌 경관부분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남사에담촌 경관만들기”로 우수상(2011. 11. 03)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대외적 평가를 얻었으며, ‘농촌어메니티 전시관’에 상시 전시되고 있음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2-1-1(계속)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환경부)
-------------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조석훈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통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 63조(국고보조)
  -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계속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추진체계
  - 사업신청(시·군→시·도) → 대상사업 신청(시·도→환경부) → 대상사업 선정(환경부) → 예산지원(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정산 → 시설운영(시·군)
- 사업체계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농특회계 면단위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과 환특회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 ※(농특사업)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농어촌 지역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다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환특사업) 구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07년부터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10~'14년(5개년) 동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조 8,764억원을 투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51	125	7,139		5,935		18,764
'10	279	1,050	23	983		881		2,937
'11	402	825	24	1,486		1,343		3,678
'12	314	955	22	1,567		1,320		4,178
'13		1,181	26	1,440		1,134		3,781
'14		1,240	30	1,663		1,257		4,190

- '11년, 402개소의 농어촌마을하수도 확충사업에 3,678억원 투자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02개소	825 (71개)	24 (8)	1,486 (323개)	-	1,343	-	3,678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율 : 목표 55%, 달성 56.5%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율	군지역 하수도 보급률 통계	%	55	56.5	10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보급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음
- (미흡한 점) 도시지역에 비해 산재해있는 농어촌 마을의 특성상 단기간에 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나 정부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일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재원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6-2-1-2(계속)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환경부)
-------------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윤봉희 사무관

### 1. 사업목표

- (목 표)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근 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단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 규모 : '11년까지 투자액 2,897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15억원/개소)
- 지원조건 : 정액(15억원/개소)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의 매립지 여유용량 확보와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소각,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지역을 선정·결정하고 국고지원하여 추진
- '11년 84억원 투자하여 13개소에 지원(신규사업7, 계속사업 6개소)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	512						512
'10	13	101						101
'11	13	84						84
'12	11	80						80
'13	14	95						95
'14	14	95						9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3	84						84

4. 성과목표 달성도

- '10년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율은 73.2%로 전년 대비 0.7%p 증가되어 목표 달성
- '11년도 13개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계속 6, 신규 7) 설치사업 진행하여 9개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율	자치단체 폐기물처리량	%	73.0	73.2	10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증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가처리 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지속적인 예산집행점검 등을 통해 '11년 예산 100% 집행완료
- 미흡한 점
  - 사업추진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남비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일부반대 상존
- 건의사항
  - 추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13년 예산 수립시 예산 증액 및 지속적인 지원 필요

<b>6-2-2-1(계속)</b>	<b>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농식품부)</b>
--------------------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항립(주무관)

**1. 사업목표**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환경 보전
- 추진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유기질비료('99년 ~ 계속), 토양개량제('57~ 계속)
- 총사업비 : '11까지 투자액 14,132억원(토양개량제 7,006, 유기질비료 7,126)
- 사업규모 : '11까지 지원물량 26,574천톤(토양개량제 11,624, 유기질 14,950)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고보조 70%(지방비 3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농특회계	기금등			
합계	17,111			10,640		1,512		12,152
'10	3,311			2,314		216		2,530
'11	3,300			2,006		324		2,330
'12	3,500			2,106		324		2,430
'13	3,500			2,107		324		2,431
'14	3,500			2,107		324		2,431

\* '11년 까지는 일반회계로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농특회계	기금등			
'11	3,300			2,006		324		2,33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맞춤형비료 지원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목표(5% : 267) 대비 228%(249)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5년(06~10년) 평균의 5%감축 (281kg/ha -267)	화학비료 사용량(kg)/전국 경지이용면적(ha)	% (감축율)	5	11.4	22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제 도입 및 등급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과 퇴비 부숙도 기준설정, 퇴비 종류의 합리적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11년 감사원 우수모범 사례로 선정
- 미흡한 점
  - 전년 대비 '11년 토양개량제지원 예산 108억원 감소
  - \* 토양개량제 지원 : ('10) 864억원 → ('11) 756
- 건의사항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지원 예산 확대 필요

6-2-2-3(계속)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구축(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수진

**1. 사업목표**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조성 및 '15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300개소 조성
- 추진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총사업비 : - ('11년까지 기 투자액 : 1,347억원)
- 사업규모 : 농경지가 10ha 이상,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11년까지 지구조성 : 1,048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신청(사업자→시장·군수→시도)→ 사업계획 자체심의 후 평가 순위 선정(시·도지사) → 시·도 예산통지(농식품부→시·도) → 사업지구 확정(시·도지사→시장·군수)→ 사업지구 확정 보고(시도→농식품부) → 사업진행(사업자)

- 추진내용 :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 등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15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300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60개소 육성·지원 계획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4		239			398	159	796
'10	29		24			40	16	80
'11	28		24			40	16	80
'12	17		26			43	17	86
'13	50		75			125	50	250
'14	60		90			150	60	300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8		24			40	16	80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		1,327			1,574	666	3,567
'10	7		295			240	69	604
'11	7		341			311	108	760
'12	8		242			327	142	711
'13	7		226			368	157	751
'14	7		223			328	190	741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		341			311	108	760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0년도에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양적 육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인증품의 질적 가치 상승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관리 강화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행 인증취소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당초 목표인 7.4%에 미달하는 6.8%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친 환 경 농 산 물 인증면적 /전체 경지면적*100	%	7.4	6.8	92.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안정적 기반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
  - 친환경농업 이행농가, 인증면적 확대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 사업지구는 전국 평균 보다 인증면적(무농약 이상)이 7배 이상 높게 나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등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 미흡한 점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영농비용의 부담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일부농가 사례 발생
  - 지구내 참여농가의 경영여건 변화(사망, 진출 등)등으로 인증면적 확대 부진 및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에 어려움
- 건의사항 : 없음

6-2-2-4(계속)	<b>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환경부)</b>
-------------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곽성근(주무관)

### 1. 사업목표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농촌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10원/kg) 지급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주체 : 한국환경공단
- 사업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95,000톤
- 지원금액 및 형태 : 1,950백만원,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 지원조건 : 한국환경공단(사업소)이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수집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내용 : 영농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경작 후 발생한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환경개선을 기하고자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10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예산반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한국환경공단(사업소)이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후 수집전표를 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수집전표 및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민)에게 수거보상금 지급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만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7.5			97.5				97.5
'10	19.5			19.5				19.5
'11	19.5			19.5				19.5
'12	19.5			19.5				19.5
'13	19.5			19.5				19.5
'14	19.5			19.5				19.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만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9.5			19.5				19.5

4. 성과목표 달성도

- 영농폐기물 181,609톤을 수거하여 목표치 대비 93.1% 달성
  - 민간수집상에서 취급하지 않은 저급폐비닐 위주로 수거함에 따라 수거실적 감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지원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톤	195,000	181,609	93.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수거보상금 지원 및 농촌폐비닐 수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간수집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저급폐비닐 수거율 제고로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
    - \* 양질의 폐비닐은 민간수집상에 수거·처리
- 미흡한 점 : 지자체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필요
- 건의사항
  - 사업비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13년 예산 수립시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6-2-3-1(계속)	<b>해양폐기물 정화(국토해양부)</b>
-------------	------------------------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정진용 사무관

### 1. 사업목표

- 연근해 주요해역·항만 및 어항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로 해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대행사업,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민간대행(국고100%), 지자체 보조(국고 50~60%)
- 사업시행주체 :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지자체
- 사업내용
  -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구매사업
  - 해양폐기물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6	104		700
'11	11개 지자체				136	23		159
'12	"				124	21		145
'13	"				112	20		132
'14	"				112	20		132
'15	"				112	20		13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1개 지자체				136	23		159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추진율	실시설계 계획대비 수거실적	%	100	100	100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평균수매량 대비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 등 어민의 생활터전을 친환경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촌정주여건 개선
- 연근해 주요 해역의 해양 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기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 가능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을 통해 어민들의 해양 환경 정화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과 어업인의 인식제고

○ 미흡한 점

- 해양에서 수거된 폐어구·어망 등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경제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장비 개선·보완 등 필요

○ 건의사항

- 지자체 수요가 많고 일자리 창출 및 해양환경개선효과가 큰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예산 반영 필요

※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 '09년(96억), '10년~12년(예산 미반영)

6-2-3-2(계속)	소하천정비(소방방재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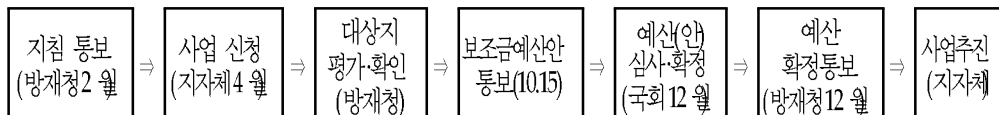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당자	박정운(주무관)

## 1. 사업목표

- 소하천정비 등을 통한 수해 방지 및 생태계 보전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 추진근거
  - <비용보조 및 재정지원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소하천정비사업 지원 대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가. 읍·면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2호 시·군·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 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35,157km, 26조1,132억원('10년까지 14,769km정비, 42.0%)
  - '10년까지 : 14,769km, 2조9,531억원(국비 1조1,650, 지방비 1조7,881)
  - '11년추진 : 368km, 4,143억원(국비 2,072, 지방비 2,071)
  - 잔여 사업 : 20,020km, 22조7,458억원(국비 11조3,729, 지방비 11조3,729)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지방비 50% Matching Fund)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
- 사업추진체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소하천 정비율을 '09년 40%에서 '14년까지 45% 수준으로 제고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정비율 (누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82	11,652				11,652		23,304	
'10	414	2,071				2,072		4,143	42.0
'11	368	2,072				2,071		4,143	43.1
'12	250	2,269				2,269		4,538	43.8
'13	300	2,495				2,495		4,990	44.6
'14	350	2,745				2,745		5,490	45.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68	2,072				2,071		4,143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재해예방사업 집중투자를 통해서 총 4,143억원(국비 2,072, 지방비 2,071)을 투자, 계획대로 소하천정비 등을 통한 수해방지 및 생태계 보전 효과 거양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추진연장 계획연장	km	368	36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 지역개발과 연계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의 정착
- 그동안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치수위주의 획일적인 제방쌓기, 직선화, 옹벽 등 비탈면 수직화 등으로 친수기능이 미흡하던 소하천을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소하천 특성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
- 치수·이수 및 주변경관 맞춤형 정비로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당기관·공무원 및 설계·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표창 및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수혜도를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소하천정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미흡한 점

- 소하천정비 투자 확대 미흡으로 국가·지방하천에 비하여 소하천 정비율이 낮아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인 삶의 질 및 생활안전 제고 필요
  - \* 최근 10년간('02~'11) 소하천 피해복구비용이 정비사업비보다 1.5배 소요
  - 최근 5년간('07~'11) 하천피해의 43%가 소하천에서 발생
-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50%)이 과중하여 지방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
  -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보조율이 60%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소하천 정비사업은 50% 지원으로 타 사업에 비해 국고 보조율이 적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 \* 지방하천정비 60%, 생태복원하천정비 70%, 재해위험지구정비 60%

○ 건의사항

- 피해발생 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현 예산 운영 방식을 재해 발생 전 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투자(국비 지원)로 피해저감 및 예산절감
-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 정비율이 낮은 소하천의 정비율을 10년내 지방하천 정비율(제방정비 완료 - 57.6%)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이상의 사업비 증액투자가 필요함
  - \* '12년 예산(국비) 2,269억원 수준으로 투자시 ⇒ 2061년 완료 예상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비추어 현행 국고보조율 50%를 상향 조정(60%) 절실

6-2-3-3(계속)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환경부)
-------------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담당자	안중기 사무관

### 1. 사업목표

-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하구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쾌적한 한반도 조성
  - ※ 매년 반복되는 홍수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대강 전 권역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체결('09.5.18)
- 추진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9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 총사업비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245억원)
- 사업규모 : 집중 호우 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76억원 내지 89억원을 지자체에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광역시 40%, 일반 시·군 70%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5대강 대권역의 6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 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쾌적한 한반도를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시·군)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09	31개			89		89		178

	사업규모 (시·군)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46개			80		72		152
'11	45개			76		58		134
'12	62개			86		64		150
'13	62개			86		64		150
'14	62개			86		64		15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시·군)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5개			76		58		134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등의 하천·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134억원(국고 76, 지방비 58)을 투입

#### 4. 성과목표 달성도

- 한강, 낙동강 등 쓰레기 적기·적정처리를 통해 하천·하구의 환경을 개선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4대강사업구간에 대한 하천쓰레기 처리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쓰레기 56천톤 수거·처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쓰레기 수거량	계획 대비 달성 실적	%	40	56	14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집중 호우시 하천·하구로 다량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등을 초래하는 부유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처리
- 미흡한 점
  -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한계
  - 4대강 보 적체 쓰레기 신속처리를 위한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 분담 협약체결 추진 예정('12년)

6-3-1-1(계속)	목재펠릿 사용 확대(산림청)
-------------	-----------------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담당자	안의섭

## 1. 사업목표

- 숲가꾸기 사업장이나 제재소 등에서 발생된 산물을 활용하여 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생산·보급하여 고유가 대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이용증진 등)
  - (관련공약) 저탄소 녹색 성장을 산림바이오매스가 선도할 수 있도록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이용하는 목재산업 육성

## 2.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09년~계속
총사업비	억원(억원)
사업규모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운영 1식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313대 - 산업용 40대, 가정용 2,800대, 편의시설 200대, 난로 70대, 집중난방 3대 목재펠릿제조시설조성 1개소
지원조건	목재펠릿보일러보급 - 산업용 : 국비 50%, 가정용 : 국비 30%, 지방비 40%, 자 30% - 편의시설 : 국비 50%, 지방비 50%, 펠릿난로 : 100% - 집중난방 : 국비 50%, 지방비 20%, 자 30% 목재펠릿제조시설조성(국비 50%, 지방비 20%, 자 30%),
사업시행주체	산림청, 지자체, 산림조합중앙회, 민간단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천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제조시설8 보일러4	11,600				9,630	8,010	29,240
'11	제조시설2 보일러4	10,858				10,019	8,640	29,517
'12	제조시설1 보일러3	9,664				8,236	5,998	23,898
'13	제조시설1 보일러3	9,664				8,236	5,998	23,898
'14	제조시설1 보일러3	9,664				8,236	5,998	23,898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제조시설2 보일러4	10,858				10,019	8,640	29,517

### 4. 성과목표 달성도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달성율	전년도 실적
목재펠릿 공급량대비 달성율	2%	2.2%	110%	1.2%

\* '목재펠릿 공급량대비 달성율'은 '09년부터 '20년까지 100만톤 공급목표 대비 '11년 실제 공급량으로서 '10년 12,000ton 대비 83% 증가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① 목재펠릿 수요 확대를 위한 보일러 보급사업의 다양화

- 산업용 펠릿보일러 (5개소) 및 정부대전청사, 대학, 교도소 등 공공부문 보일러 (5개소) 시범보급 추진
- '12예산에 산업용 40대, 집중난방 3개소 등을 반영 신규 수요처 확대
  - \* 산업용 보일러(1,000톤/년)는 가정용(4톤/년)에 비해 펠릿소비량이 커 탄소배출 저감에 탁월하고 목재펠릿 산업화에 효율적
- ②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대책 추진
  - 펠릿보일러 품질인증제('11.9) 및 목재펠릿 보급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 \* 가격심사제, 보일러 개선명령제 등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
  - 070 무료상담 콜센터, 모니터단 운영 및 국제 펠릿세미나 개최(2회)
- ③ 목재펠릿 합리적 이용 촉진을 위한 융합행정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을 위하여 동서·남동발전과 MOU 체결(2건)
  -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정부부처 합동 제도개선 협의
    - \* 폐기물관리법 개선(환경부), RPS 제도개선 (지식경제부)에 합의
- 미흡한 점 및 건의사항 : 없음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담당자	안형근(사무관)

## 1. 사업목표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난방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발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 2020
- 사업비('11) : 1,004억원('10년까지 기 투자 1,200억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수산(양어장)
- 사업규모 : 전국 210ha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지원
- 주요사업 내용
  - 시설원예, 축산, 수산분야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보급하여 난방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436		1,479	1,479	7,394
'10	250	-	-	1,200	-	400	400	2,000
'11	210	-	-	1,004	-	335	335	1,674
'12	155	-	-	744	-	248	248	1,240
'13	155	-	-	744	-	248	248	1,240
'14	155	-	-	744	-	248	248	1,240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28	-	-	614	-	205	205	1,024

- 사업초기 단계를 감안 사업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초기 투자비가 매우 커 보조율 80%(국비+지방비)를 지원하여도 농가 부담금(사업비 13억원/ha, 자부담 26억원)이 많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전체 예산 1,004억중 614억원만 집행

### 4. 성과목표 달성도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유류사용 절감비율 목표 20%보다 75% 높은 34.9%로 조사
- 지열 냉난방기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보급확대와 설치 농어가의 본격 운영에 따른 유류사용 절감을 상승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리온실 등에 지열 냉난방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 농어가 유류사용 절감율(%)	(전년도 유류사용량 - 금년도 유류사용량)/전년도 유류사용량] ×100	%	20	34.9	175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지열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당초 시설원예분야 중심에서 수산·축산분야에까지 확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
- 연간 면세유 50만리터 이상 사용농가에 '15년까지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하였으며, 미설치시 면세유 배정 단계적 축소 및 정부 지원사업 배제 방침을 '12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침에 반영하는 등 지열냉난방기의 확대 보급에 노력
- 지열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지원으로 면세유 등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 ○ 미흡한 점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시 농가의 자부담(사업비 13억원/ha, 자부담 2.6억원)이 많고 지자체에서의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수요 저조

### ○ 건의사항

- 최근 농촌진흥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동개발한 하천 강변의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시스템의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향후 지원여부 검토 계획

6-3-1-3(계속)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환경부)
-------------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곽명안주무관 이재덕사무관

### 1. 사업목표

-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방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

### 2. 사업내용

#### < 가축분뇨 자원화 >

- 사업기간 : '09~계속
- 총사업비 : '11년까지 기투자액 8,587억원(국고기준)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설치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및 가동중인 공공처리시설 중 개선·증설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8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자체)⇒ 국고 지원(환경부)⇒사업시행(지자체)

#### < 가축분뇨 에너지화 >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4,968톤/일(29개소)
- 총사업비 : 6,763억원(총국고 2,361백만원 중 '11까지 915억원 기 투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8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자체)⇒ 국고 지원(환경부)⇒사업시행(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 가축분뇨 자원화 >

- '12년 13개소(1,085톤/일)등 '15년까지 26개소 1,740톤/일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94		1,233		5,757
'10	34			821		221		1,042
'11	32			770		193		963
'12	33			1,101		293		1,394
'13	32			1,056		264		1,320
'14	35			1,046		262		1,038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2		-	770	-	193	-	963

#### < 가축분뇨 에너지화 >

- '12년 6개소(1,380톤/일), '13년 5개소(790톤/일) 등 '15년까지 27개소, 6,598톤/일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가축분뇨(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13년까지 1개소(150톤/일) 완공 추진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개소			1,436		671		2,107
'10	4			59		17		76
'11	5			87		27		114
'12	11			168		95		263
'13	12			547		293		840
'14	14			575		239		81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		-	49	-	21	-	70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가축분뇨(병합)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예산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가축분뇨 오염물질삭감량 (BOD, 톤/일)	삭감부하량-유입 부하량-배출부하량	톤/일	107.2	107.8	100.6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 수	당해연도 완공 시 운전 착수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집계	개소	-	-	-

※ '12년 시행계획부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 수 지표를 신규 설정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그간 정화처리 중심에서 자원화중심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 기반 조성 추진(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 시범사업 실시 중)
- 음식물류폐기물과 병합(혼합)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를 70%까지 상향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토록 촉진하여 시설 설치·운영 예산절감 도모

○ 미흡한 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입지선정지연 등으로 일부사업의 집행 부진
- 일부 지역의 가축분뇨(병합)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주민, 의회 등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지연 및 취소 등 부진

○ 건의사항

- 가축분뇨의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제도 필요
- 현행 지자체 보조사업을 민간시설까지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촉진 및 축산농가 에너지 자립을 제고 필요

담당부서	방역관리과	담당자	이덕진 주무관

## 1. 사업목표

-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시설확충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실현
- 추진근거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 추진경위

- 농림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04.11)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07.6)
- 국정과제, 녹색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으로 채택('08, '09)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1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 ('11년까지 14,069억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및 융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 등
- 지원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

3. 연차별 추진계획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12년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구축
    - 공동자원화(누계) : ('09) 39개소 → ('10) 56 → ('11) 69
    - 액비유통센터(누계) : ('09) 101개소 → ('10) 122 → ('11) 147
    - 액비저장조(누계) : ('09) 5,646기 → ('10) 6,524 → ('11) 7,508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78	83	-	-	2,090	375	6,326
'10		773	18	-	-	428	85	1,304
'11		781	20	-	-	416	81	1,298
'12		693	15	-	-	388	65	1,161
'13		785	15	-	-	440	74	1,314
'14		746	15	-	-	418	70	1,249

< 시행계획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781	20	-	-	416	81	1,298

4. 성과목표 달성도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구축 등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함에 따라 자원화율이 증가하고, 해양배출량이 감소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달성도)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87.6%로 100.3% 초과 달성하였으나, 해양배출량은 73만톤으로 목표 대비 53만톤 초과 하였음.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1 목표) 87.5% → ('11 실적) 87.6%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 ('11 목표) 200천톤 → ('11 실적) 732(△532)
- \* 해양배출량 : ('10) 1,070천톤 → ('11) 732 (△338천톤, △31.6%)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11년 목표치 53만톤을 초과한 사유

- 구제역 발생('10.11~'11.5월)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지 못하고 이를 해양투기함으로써 증가하였으며, '12.1.1일 이후 해양투기 금지 대비, 기존 해양투기 농가들 대부분은 분뇨처리시설을 기 준비되어 있으나, 연말까지는 저장용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해양투기 하는 경향에 따른 것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축산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율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 전체 가축 분뇨 발생량) × 100	%	87.5	87.6	100.3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	만톤	20	73	27.4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구축,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함에 따라 자원화율이 증가
- 사업비 확대 : ('08) 664억원 → ('09) 754 → ('10) 791 → ('11) 801
  - \* 공동자원화(누계) : ('08)19개소 → ('09)39 → ('10)56 → ('11)69
  - \* 유통센터(누계) : ('08)78개소 → ('09)101 → ('10)128 → ('11)158
- 자원화율 : ('08) 84.3 → ('09) 85.6 → ('10) 86.6 → ('11) 87.6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및 수요처 확대 필요  
→ 가축분뇨법 개정('11.7.28)
- 생산된 액비의 살포지역 확대(현행 : 농경지·초지 → 추가 : 골프장·시험림) 등

### ○ 미흡한 점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07.6)」에 따라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11년 해양배출량 목표치 20만톤을 초과
- 구제역 발생('10.11~'11.5월)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지 못하고 이를 해양투기함으로써 증가하였으며, '12.1.1일 이후 해양투기 금지 대비, 기존 해양투기 농가들 대부분은 분뇨처리시설을 기 준비되어 있으나, 연말까지는 저장용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해양투기 하는 경향으로 목표대비 초과

### ○ 건의사항 : 해당없음.

6-3-1-5-①(계속)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정훈 서기관

## 1. 사업목표

- 농촌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을 위한 요소기술 및 기반 확보
- 추진근거 :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 연구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

## 2. 사업내용

- 바이오매스에너지작물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지원
  - 사업기간 : '07 ~ '18
  - 사업주체 : 산·학·연 연구팀
  - 사업 규모 : '11년도 11과제(기획과제 7, 일반과제 4)
  - 지원금액 및 형태 : 4,265백만원(기획과제 3,800, 일반과제 465), 출연
  - 지원조건 :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Matching fund
  - 추진내용 : 가축폐기물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에너지생산 실증 플랜트 개발, 고오일 함유 바이오매스 종자개발, 농임축산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 모델 구축, 고품질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리그닌 생합성 조절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생산용 형질전환 식물 개발

###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까지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기술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11	43					10	53
'12	12	46					11	57
'13	13	49					11	60
'14	14	52					12	64
'15	15	56					12	68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43					10	53
경기	1	8					1	9
충남	1	2					1	3
전북	1	5					1	6
경북	1	7					1	8
대전	2	6					1	7
서울	4	12					3	15
경남	1	4					1	5

- 계속과제 : 비메발론산 터핀 생합성 유전자 과발현을 통한 식물 바이오매스 증대, 바이오매스 생산용 형질전환 식물 개발, 농산 바이오매스를 이용 환경친화적인 녹색 복합소재 개발, 고품질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리그닌 생합성 조절 기술개발 등
- 신규과제 : 고오일 함유 바이오매스 종자개발, 농·임·축산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Biopia) 모델 구축 및 사업지침서 개발, 에너지 저장 및 순환형 온실시스템 개발, 가축폐기물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에너지생산 실증플랜트 개발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43				10	53	
경기	1	8				1	9	
충남	1	2				1	3	
전북	1	5				1	6	
경북	1	7				1	8	
대전	2	6				1	7	
서울	4	12				3	15	
경남	1	4				1	5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생명산업기술개발	특허출원건수	국내특허출원실적	건	1	1	100
	논문게재건수	SCI논문게재건수	건	6	6	100

6-3-1-5 ②(계속)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자원환경과	담당자	차태황서기관

**1. 사업목표**

- 해조류 대량생산·수거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해조류로부터 에너지화 주성분 및 다양한 유용물질, 희귀금속 등을 회수하는 통합적 활용기술 개발
  - 성과목표 : '20년까지 해조류양식장 50만ha 조성, 에탄올 22.7억리터 생산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 산업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총사업비 : 276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20억원)
- 사업규모 :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연구 용역 1식  
( '11년까지 1차 연구용역 추진 완료 및 2차 용역 수행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단계(기반구축 : '10~'12)  
: 해조류 신제품 개발, 통합활용 원천기술 및 요소기술 개발
  - 2단계(기술통합 : '13~'16)  
: 해조류 대량생산 기술개발 에너지/유용성분 및 부산물활용 통합공정 개발
  - 3단계(실증/상용화 : '17~'20)  
: 외해용해조류 양식구조물 설치/제어기술, 실증 및 상용화 연구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	150	-	-	-	150
'10	1식		-	10	-	-	-	10
'11	1식		-	10	-	-	-	10
'12	1식		-	10	-	-	-	10
'13	1식		-	50	-	-	-	50
'14	1식		-	70	-	-	-	7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11	1식	-	-	10	-	-	-	10

- '10년 신규사업으로 제1차 연구용역 완료('10.10월 ~ '11.8월)
  - (에너지 기술개발) 생물친화형 전처리 및 혐기성 소화공정 이용 혼합 알코올 생산기술 개발
  - (통합활용 기술개발) 해조류 생리활성 물질 이용 건강 신소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복합재료 개발 등
    - \* 추진성과 : 특허출원(9건), 논문발표(14건), 국내외 학술발표(33건), 홍보(8건), 에너지화 수율 향상(VFA 생산 수율 18g/L, 바이오오일 수율 40% 이상 달성)
- '11년 계속사업으로 제2차 연구용역 수행중('11.10월 ~ '12.8월)
  - (해조류 그린 에너지화) 해조류 유래 당으로부터 또는 해조류에 포함된 탄수화물로부터 바이오 알코올, 유기산 및 혼합알코올, 기초 화학물질 생산
  - (해조류 통합활용 분야) 해조류에 포함된 유용물질을 회수하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처리 및 당화와 관련된 원료분석, 정제 핵심 기술 개발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대비 평균 200%이상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 서류	건	3	9	300
	학술논문발표(건수)	발표논문 확인	건	9	14	156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0년 신규사업임에도 연구목표에 대한 성과가 뚜렷함
    - 연구결과 : 특허출원(9건), 논문발표(14건), 국내외 학술발표(33건), 홍보(8건), 에너지화 수율 향상(VFA 18g/L, 바이오오일 수율 40% 이상 달성)
- 미흡한 점
  - 해조류 대량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은 확보되었으나 Pilot Plant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
- 건의사항
  - 현재 예산 지원 추이로는 '17년 이후 실용화 단계가 불가하여 민간 자본 참여가 곤란하므로 예산 확대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만으로는 현재 경제성이 없어 민간에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세계적으로 동 연구에 대한 추진이 활발하나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으로 국제적 빠른 기술선점을 위해 연구지원 확대가 절실함
  - 미국의 BAL(Bio Architecture Lab) 연구소 : 미국 DOE로부터 9백만달러와 칠레로부터 15백만달러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해양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의 BioMara 연구그룹 : 6백만유로를 지원받아 2020년까지 운송연료 10% 대체를 목표하고 있으며, 해양 바이오매스 대량배양 및 바이오연료 개발 연구 수행중임

6-3-2-1①(계속)	<b>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행정안전부)</b>
--------------	---------------------------

담당부서	지역녹색성장과	담당자	최종기 주무관

**1. 사업목표**

- 바이오매스·지열·태양력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 추진근거 :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경축사(‘08.8.15)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 총사업비 : 92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54억)
- 사업규모 : 2개소(공주시, 포천시)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개소			46		46		92
‘10	1개소			4		4		8
‘11	1개소			23		23		46
‘12				19		19		38
‘13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개소			23		23		46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대상 마을선정	선정마을수	개소	2	2	100
	실시 설계용역	계획 대비 실적	개소	2	1	50

- 주민동의를 미흡한 상황에서 주민반대와 시범사업 철회요청으로 공주시 사업대상 마을(월암리→금대2리) 및 사업내용(바이오매스플랜트→지열, 태양광 활용시설) 변경 승인으로 사업 추진 지연.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랜트시설 설치,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기반 마련

○ 미흡한 점

- 충분한 사전검토 기간 및 지역의 마을에 대한 녹색성장 인식확산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함으로 주민 상호간 갈등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및 사업내용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변형되어 추진

○ 건의사항

- 사업초기 녹색마을 조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성공적 모델을 확보하여 주민갈등 사전예방
- 국비지원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유도

6-3-2-1②(계속)	<b>저탄소 녹색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녹색미래전략과	담당자	신우식사무관

### 1. 사업목표

-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농촌의 에너지 자립도 증대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 2012년
- 총사업비 : 2,771백만원('11년까지 기투자액 : 2,498백만원)
- 사업규모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1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전북 완주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주체 : 전라북도 완주군

### 3. 연차별 추진계획

- ('10년) 녹색마을 조성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시행
- ('11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12년) 녹색마을 조성 공사 완공 및 녹색마을 운영·관리방안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	28				22	6	56
'10	1개소 설계	6				5	1	12
'11	1개소 조성	19				15	4	38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1개소 완공	3				2	1	6
'13	-							
'14	-							

- 당초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개의 녹색마을 조성 계획이었으나, 녹색위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를 통해 보완대책 마련('11.10.31)

\* (녹색위 보완대책 내용) 시범사업은 '12년 종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 활용 방식으로 전면 개편(환경부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예정)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	19				15	4	38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 (실적) 공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추진 중(12월)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녹색마을 조성 1개소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100	90	9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매분기 「저탄소 녹색마을 중앙부처 협의회」 개최(총12회)를 통해 녹색마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소통 강화 도모

- 각 부처별(우리부,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담당자, 시행기관(지자체) 담당자 및 신재생에너지 총괄 기관인 지경부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
- 지경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태양광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을 전북 완주군에 우선 지원토록 협의하여 개별주택 태양광 49기 설치완료

⇒ 매월 가구당 평균 1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이 활성화 되는 효과 발생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4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발굴하여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마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
- 마을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점검(5회) 강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장급 간부 주재 현장 점검 실시(9월)

○ 미흡한 점

- '10년도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의 지방비 추경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순연되고 있음

○ 건의사항 : 없음

6-3-2-1③(계속)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윤봉희 사무관

### 1. 사업목표

- (목 표) 농어촌 지역에 버려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 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 VIP 보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 사업 지원대상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25억원, 지방비 matching 지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 보조(50%)
- 사업 주요내용
  - 마을 내에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 VIP 보고)에 따라 부처별로 유형에 따라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10년부터 2~3년간 부처별로 시범 사업 추진 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보급하는 본 사업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조성하며 본 사업기간인 '13년부터 '20년까지 사업지역을 선정하여 국고지원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39.6		73.2		212.7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			23.4		23.4		46.7
'12	-			-		-		-
'13	2			2.8		1.2		4
'14	4			37.8		16.2		54
'15	4			75.6		32.4		108

\* 13년 이후 예산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12년까지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13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초 '12년 사업계획을 '13년으로 연기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			23.4		23.4		46.7

#### 4. 성과목표 달성도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마을 1개소 조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개수	1	1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부처별 시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정기 운영(분기)
- 시범사업의 계획 변경 및 주민동의 미흡 등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

- 미흡한 점 : 지자체 소극적인 사업참여로 사업일정이 지연

- 건의사항

- 저탄소 녹색마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타 부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연계 및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지경부), 녹색 생활 실천 사업(행안부), 저탄소 친환경 농업생산·브랜드 개발 등(농식품부) 등

<b>6-3-2-1④</b>	<b>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b>
-----------------	-------------------------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권태원 사무관

**1. 사업목표**

-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목재 이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주택 개선을 통해 산촌 지역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 ~ '14년
- 총사업비 : 1개소 당 50억원 이내('10년까지 기투자액 : 2.2억원)
- 사업규모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 대상으로 시범사업 '10년까지 사업지(봉화군)1개소, '11년 사업지(화천군)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	419.2	-	-	-	216.6	140	775.8
'11	2	15	-	-	-	7.8	5	27.8
'12	2	25.8	-	-	-	15	10	50.8
'13	17	134	-	-	-	69.5	45	248.5
'14	24	224.5	-	-	-	122	80	426.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	15	-	-	-	7.8	5	27.8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설계 용역 추진/설계 용역 추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2개소 추진	시범사업 2개소 추진 여부	2개소	2	2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0년 사업(봉화군) : 조성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민 협력으로 1년차 사업 완료되었음
  - '11년 사업(화천군)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협의회를 상반기에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주민의견 수렴
- 미흡한 점
  - '10년 사업(봉화군) : 바이오메스 수급을 위한 관·민 협의회 구성 못함
  - '11년 사업(화천군) : 기본계획이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음



담당부서	에너지개발팀	담당자	박태진

## 1. 사업목표

- 전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목표에 준정부 기관으로서 적극 참여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및 잉여수를 활용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수리시설유지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 추진근거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장려 등)
  -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33조(사업의 범위)제2항 제3호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 총사업비 : 50,000억원('11년까지 기출자액 : 13,050억원)
- 사업규모 : 법정자본금 5조원 범위내 현금 및 현물 출자  
(‘12년 건설중인 지구 10개소, 신규 4개소 기본계획)
- 지원형태 : 출자금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부터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 출자금 투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지구 8,145kw			18,060			14,171	32,231
'10	4지구 1770kw						8,510	8,510
'11	5지구 1500kw						2,527	2,527
'12	4지구 1410kw			5,700			3,134	8,834
'13	4지구 1690kw			6,000				6,000
'14	4지구 1600kw			6,360				6,360

※ 지구별 착공년도 기준 자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지구,규모)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지구 1665kw				-	-	2,264	2,26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발전소 건설 개소수	소수력 발전착공	개	5	6	12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기존의 농업용저수지만을 이용한 사업개발에서 취입보를 활용한 사업개발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에너지개발』 출자금 코드 신설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 모색

○ 미흡한 점 : 없 음

○ 건의사항 : 없 음

제7절

지역역량 강화



<b>7-1-1(계속)</b>	<b>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김춘기 손윤하

**1. 사업목표**

- 농어촌 주민과 마을 리더 등에 대해 전문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리더로 육성

**2. 사업내용**

가. 리더양성, 사업동기화 주제별 특화과정 등 운영(총 10개 과정)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공사 도농교류지원본부
- 사업 규모(사업량) : - 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154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나. 농업인 교육훈련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농업인재개발원, 농고, 농대, 품목·농업인단체, 민간교육기관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 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35,754백만원(민간·지자체보조, 농특)
- 지원조건 : <민간보조> 국고 70~90%, 정액  
<지자체보조> 국고 50~100%

- 지원내용 :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업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가. 리더양성, 사업동기화 주제별 특화과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967명	63.1						
'11	3,767	11.5						
'12	3,800	12.6						
'13	3,800	13.0						
'14	3,800	13.0						
'15	3,800	13.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767명	11.5						

#### 나. 농업인 교육훈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9,218명	2,009.51						2,009.51
'11	25,000	350.16						350.16
'12	26,500	357.54						357.54
'13	27,825	393.3						393.3
'14	29,216	432.63						432.63
'15	30,677	475.88						475.8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832	254.73						254.73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체험마을 대표, 주민, 사무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대로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인적역량강화	교육 인원 수	교육인원	명	3,470	3,767	108.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실질적으로 도농교류와 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전년도 교육내용을 대폭 개편한 인적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수립('10.1, 총 10개 과정, 3,470명 교육 목표 수립)

<주요 개편 내용>

-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리더양성 과정 개설
  - 기존의 '농촌지역개발 리더십'과 '도농교류 리더십'은 양 과정의 교육 내용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수준별 맞춤형 과정이 없어 효과 미미
  - 양 과정을 통합하여 초·중·고급으로 단계를 구분한 리더 양성 과정 개설(전 단계를 수료해야 다음 단계 이수 가능)
    - \* 초·중·고급 과정 단계별 교육 인원을 피라미드형으로 설계함으로써 피 교육자의 상위단계 교육 성취욕구 유도
- 지역의 핵심인력인 사무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별로 차별화된 과정 개설(신규 사무장 - 초급과정, 경력사무장 - 중·고급 과정 개설)
  - \* 기존의 체험마을 사무장 및 마을종합권역 사무장 교육과정 통합

- 리더양성 과정(농어촌 마을리더 양성+사무장 양성) 교육 실적
  - 마을리더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리더의 경우 중급 과정에 '마을경영 및 법인 관리 방안', 고급과정에 '투명한 관리 역량 개발, 발표력 향상 기법, 지역 네트워크 만들기' 등의 내용 포함
  - 사무장의 경우 실무적 역량을 갖추면서 추후 리더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제공을 위해 '회계장부 관리, 마을 해설기법, 마을 디자인 기법' 등의 교육 제공

교육과정	교육내용	'11년 교육실적 (25회 735명)
초급	농어촌 마을 운영과정 이해	14회 400명
중급	리더십, 의사소통, 홍보 등	10회 350명
고급	마을 사업기획서 작성 등	1회 20명

- 교육이수자 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웰촌포탈(www.welchon.com)에 교육수료자, 교육과정, 수료자별 수료 과정 및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

□ 미흡한 점

- 체험마을 주민의 경우 생업으로 인하여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움

□ 건의사항

- 체험마을 주민 교육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는 좋은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7-1-2(계속)	<b>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

### 1. 사업목표

- 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활성화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품질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09-386호)”

### 2. 사업내용(비예산사업)

- 인증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인증절차 : 인증신청(기관단체) → 인증심사(농식품부, 전문가) → 인증서 발급(농식품부→기관단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건							
'11	8							
'12	10							
'13	10							
'14	10							
'15	1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8건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계획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프로그램 및 과정 인증건수	인증건수	건수	8	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별도 예산 수반없이 인증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교육기관이 농어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
  -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2건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완료
      - \* 인증신청 기관 : (사)한국지역활성화포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분단
  -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 총 6건 인증(체험지도사 4, 마을해설가 2)
      - \* 인증신청 기관 : 대구대학교 동아시아관광연구소,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주)지역아카데미, (주)지역활성화센터
  - 인증된 교육과정을 통해 '11년 총 257명이 교육 수료
- 인증한 과정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미흡한 점
  - 민간기관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홍보 추진 필요
- 건의사항
  - '12년도 하반기 부터는 지방이양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행해 왔던 인증업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이 어려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 사무관

## 1. 사업목표

- 지역개발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기반한 보다 효과적인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도, 지역자율의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 2. 사업내용

- 지역주도, 지역자율의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 구성)
  - 구성 및 운영자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장 및 위원 : 50명 내외(위원장 1, 부위원장 1명 포함)
    -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역할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

## 3. 연차별 추진계획

- '11년도 : 지자체에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을 권고하고, 각종 평가 시 협의회 구성·운영 여부를 평가
- '12년도 :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정도를 각종 점검 및 평가시 반영

## 4. 추진실적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년도 준공권역 종합평가지 평가 항목에 반영
  - 현장평가 및 실태조사 일시 : '11.5.23 ~27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장현경 사무관

## 1. 사업목표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개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 2.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의 외연 확대

## 3. 연차별 추진계획

- '11년도 :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분기별 1회) 워크숍 개최
- '12년도 : 농어촌 지역정책 포럼 운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2012년 운영계획 수립(2월)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운영(연중)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자체, 언론, 대학, 지방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운영

## 4. 추진실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족을 위한 학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1.31)
  - '농어촌지역정책 포럼' 정식 발족을 위한 발표주제 선정 및 운영 방식 등 논의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족 간담회 개최(3.7)
  -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리, 포럼 발족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총4회 개최(분기별 1회)
  - 매회 약 50~60명 참석하여 지역정책, 자원 등 농어촌지역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포럼 결과집 발간
  - \* 제1회(4.12), 제2회(7.4), 제3회(10.14), 제4회(12.8)

7-3-3-1(계속)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웰촌 포털 활성화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48	-	-	-	-	-	48
'11	-	8	-	-	-	-	-	8
'12	-	10	-	-	-	-	-	10
'13	-	10	-	-	-	-	-	10
'14	-	10	-	-	-	-	-	10
'15	-	10	-	-	-	-	-	1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8	-	-	-	-	-	8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체험여행상품 개발·판매 서비스 제공, 차별화된 콘텐츠 온라인 정보제공을 위한 활용도 높은 콘텐츠 제공 등으로 포털이용자 만족도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6.0	86.5	100.6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웰촌포탈 콘텐츠 확충, 마을사무장 채용,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도농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현으로 도시민의 여가문화 정착 및 농촌 활성화 유도」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함
    - 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농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 추가 개발·판매(40개 마을 100개 여행상품)
    - 농어촌 생활·문화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1,600여건)
  - 농어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보사이트 개발 및 정보 제공
    - 도농교류활성화 및 지역개발 교육수요자 편의성 도모
  - 체험마을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농어촌체험마을 상품 개발·판매
    - 100개 마을 300개 체험여행상품 개발·판매 서비스 제공
  - 차별화된 콘텐츠 온라인 정보제공을 위한 활용도 높은 콘텐츠 제공
    - 그린리포터, 여행작가가 제공하는 전문화된 콘텐츠 제공(900여건)
    - 체험마을과 귀촌생활에 관심있는 도시민에게 동영상 정보 제공(100여편)

- 월별 지역축제, 농어촌 관련뉴스, 농어민복지정보 등 실질적 콘텐츠 제공(600여건)
- 농어민 및 귀농·귀촌을 위한 도시민에게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개발·무상제공
  - '11년말 기준 : 50,000여개 설계도면(71종 개발) 제공
- 대형포털, 언론매체 등 홍보를 통한 포털 대외인지도 제고
  -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및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 획득('11.3월)
- 미흡한 점 : 해당 없음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7-4-1-1(계속)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담당자	황규광(사무관)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 총사업비 :     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88억원)
- 사업규모 : 25개 시·군  
- ('07~'09) 10개 시·군 → ('10) 22개 시·군 → ('11) 25개 시·군
-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 도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2007~200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시범사업 시·군 선정 지원(10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성과 평가, 문제점 발굴·개선 ·'10~'12년 추진사업 신규 시군 선정(22개 시·군) 등	2007~2009	50억원 (1년차 10, 2~3년차 각20억원)
2010	·22개 시·군의 사업성과 평가 *우수 및 미흡 시군은 '11년 예산 차등지원 ·'11~'13년 추진사업 신규 참여 시·군 공모	'10.8월  '10.12월	15억원



2011	·'11~'13년 추진사업 신규 시·군 선정 -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남 하동 ·25개 시·군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11.1월 '11.11월	23억원
2012	·'12~'14년 지원사업 신규 참여 시·군 공모 ·27개 시·군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12.2월 '12.12월	26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	119				119		238
'10	22	15				15		30
'11	25	23				23		46
'12	27	26				26		52
'13	30	23				23		46
'14	30	32				32		6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	23	-	-	-	23	-	46

- '11년도 귀농귀촌 페스티벌('11.4~6)과 연계하여 도시민유치 등 귀농귀촌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11.11), 17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년도 예산의 일부를 차등 지원

\*'11~'13까지 추진할 신규 3개 시군을 선정

\*25개 시군 : 강원(화천, 양구, 양양), 충북(단양, 옥천), 충남(금산, 청양), 전북(남원,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전남(순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영광, 장성, 완도), 경북(안동, 봉화, 상주), 경남(하동)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1년도까지 25개 시·군에서 8,670명의 도시민을 유치하여 목표치 (4,500명) 대비 93%를 초과 달성
- 25개 시군이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상담 및 정보제공,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체험, 교육, 커뮤니티 형성, 귀농귀촌 박람회시 홍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치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도시민 농촌유치(명)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추진시군에 귀농귀촌한 인원수 = (전년도 귀농귀촌 인원수 + 당해년도 귀농귀촌인원수)	명	4,500	8,670	19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지자체의 도시민유치지원 및 귀농귀촌 업무의 부서 일원화를 성과평가 등을 통해 유도함으로써 정책시너지 효과를 높임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의지가 높고 추진체계 등이 잘 갖춰진 시·군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신규 및 2년차 시·군에서는 사업초기의 애로사항을 기존의 계속 시·군의 벤치마킹 및 조언을 통한 해소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농촌 이주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농촌체험, 농업교육,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에 기여

\* 대부분 사업 추진시군은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상담요원(관내 귀농·귀촌자 등)도 배치되어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귀농귀촌 활성화로 지자체장의 관심도도 증가

#### ○ 건의사항

- 기존 도시민 유치사업 참여 시·군 이외에도 다소 관심도가 낮더라도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 확대 등

7-4-2-1(계속)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1. 사업목표**

- 농작업 등 농어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기술자, 예술가, 농작업 인력 등)의 인력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활력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 및 단체, 농작업 인력 등) 또는 귀농·귀촌인을 농어촌 마을·단체 등과 연계해주는 중개제도를 마련하여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민 일자리 창출 도모

**3. 연차별 추진계획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잘된 점

- 1사1촌 운동 및 농촌사랑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시농어촌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함
  - 1사1촌 자매결연 기업 및 단체 증가('10 : 82백개소 → '11 : 87백개소)
  - 도농교류활동이 우수하여 타마을의 벤치마킹대상이 될 1사1촌 우수마을 선정(102개소)
- 농촌사랑봉사활동신청자(1,197명) 현황(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봉사분야 : 일손돕기(698명), 소년소녀가장 후원(76명), 이미용 및 청소 등(66명), 교육·문화(47명), 재해복구(14명), 의료(4명), 기타(264)

- 지역별 : 서울(250명), 경기(204명), 대구(95명), 부산(87명), 광주 등(561명)

○ 농촌사랑봉사활동 실적 현황

- 일손돕기 : 부산 42회 등 전국적으로 103회 2,754명

- 의료활동(마사회 적립금) : 경남 19회 등 전국적으로 67회, 1,172명

- 농어촌 공부방 운영(마사회적립금) : 강원, 전남 등 농촌지역 12개 마을 대상으로 54명의 자원봉사자가 농촌지역 학습도우미방 운영

○ 1사1촌 자매결연 8,500개소로 확대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협연수원을 통한 도시민교육 추진

-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및 공부방운영 활동 지원

미흡한 점 : 해당없음

건의사항 : 해당없음

참고

지방자치단체



## 1. 부산광역시

2-1-6-1(종료)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부산광역시교육청)
-------------	---------------------------

담당부서	창의인성복지과 (교육복지팀)	담당자	류정임

### 1. 사업목표

-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연계방안 논의
- 추진근거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3. ~ 2012. 2.(3년간)
- 사업주체 : 해운대교육지원청
- 사업내용 :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계획 안내
- 구 성 : 교육장, 군수, 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담당, 기장군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 담당, 일광·정관·철마면장, 사업학교 및 유치원장 6명, 한국수력원자력고리본부 지역협력팀장(총15명)

###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명					104만원		104만원
'10	15명					52만원		52만원
'11	15명					52만원		52만원
'12						-		
'13						-		
'14						-		

- 2012. 2월말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장군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종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5명					52만원		52만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교육발전 협의회	회의개최 실적	횟수	횟수	1	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개최로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활성화에 기여



2-3-2-4(계속)	<b>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부산광역시)</b>
-------------	----------------------------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철희

**1. 사업목표**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농어촌 학교 무료통학버스 운영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당초계획) >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회계)	학교 자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84					1,755	376	2,131
'10	9교/16대					291	72	363
'11	9교/17대					366	76	442
'12	9교/17대					366	76	442
'13	9교/17대					366	76	442
'14	9교/17대					366	76	442

※ 학교 자체 예산은 인근 공기업,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운영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회계)	학교 자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0교/18대					366	116	48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통학차량 지원	지원 학교수	통학차량 지원학교수	교	9	10	111

- 주성초 : 당초 지원계획이 없었으며, 학교 발전기금(기장군 지원)으로 통학버스 운영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대구광역시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대구광역시)
-------------	----------------------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상민

### 1. 사업목표


- 열린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학교 역할을 정립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평생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자녀이해를 증진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 시설의 이용),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제30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 11개교(금포초, 남동초, 논공초, 매곡초, 반송초, 용계초, 죽곡초, 화남초, 화동초, 화원초, 왕선초), 중 5개교(가창중, 달성중, 서재중, 천내중, 포산중)
- 사업 규모(사업량) : 16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00천원(지방비)
- 지원조건 : 지방비100%
- 지원내용 : 특화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활용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2010 ~ 2011	→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li> <li>▪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화</li> <li>▪ 양성된 인력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li> <li>▪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화</li> <li>▪ 학부모교육 강화</li> </ul>

○ 연차별 사업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목표(학교수)	15	16	17	18	19
소요예산(천원)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16개교					80		80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16개교					80		80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평생교육 기반확충	‘학교평생학습관’ 지정 확대 (학교 수)	설치계획 ÷ 추 진 실적	%	16	16	100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은경

### 1. 사업목표

- 학교 교육발전·농어촌 교육복지 업무 지원
- 추진근거 : 2011년도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6교(현풍초, 옥포초, 금계초, 구지초, 동곡초, 하빈초), 중3교(경서중, 구지중, 가창중)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371,000,000원,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원금 486,500,000원
- 지원조건 : 면지역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선정(가창면의 용계초 제외)
- 지원내용 :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안전망구축, 기초학력신장, 심리·정서발달, 특기·적성개발, 사회·문화적 소양 증진 사업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통합적인 교육복지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9년 교과부 3년 계획사업으로 추진: 초1교, 중1교 (사업비: 29,900만원)
- 2010년 : 초1교, 중1교 (사업비: 33,296만원)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15개교			168		1,015		1,183

#### 4. 추진실적

#####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9개교			371		486.5		866.5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복지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해당학교(15개교) 중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9개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5. 성과목표 달성도

#####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복지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해당학교(15개교) 중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9개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육발전협의회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계획 ÷ 실적	%	15	9	60

달성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팀 노영주

### 1. 사업목표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 추진근거 : 『공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의거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현풍초등학교, 유가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하빈초등학교, 용계초등학교, 가창초등학교, 도림초등학교, 논공초등학교, 금포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에게 무료 통학버스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0년 11월 : 학교회계 전출금 계획
- 2011년 2월 : 2010학년도 차량운영비 조사
- 2011년 3월 : 2011학년도 차량운영비 지원
- 2011년 4월 : 2011년 차량운영비 계약 및 지원비 추가 조사 및 추가 지원 결정

####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8개교					150		150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10개교					182		

- 당초 계획 8학교에서 금포초, 동곡초 2개 학교 추가 실적 달성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8개 학교, 실적 : 10개 학교
- 관내 원거리 통학학교 2개교 선정 추가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무료통학버스지원 확대 (학교수)	계획 ÷ 실적	%	8	10	125



### 3. 인천광역시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팀)	담당자	김경아
------	----------	-----	-----

#### 1. 사업목표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 진료 제공
- 추진근거 : 『웅진군병원선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관리운영』 보건복지가족부 규정

####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웅진군 4개면 11개 도서(무의도서) 1,052세대 2,254명
- 인력현황 : 13명(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2명, 선원 8명)
- 지원금액 : 450백만원
- 진료과목 : 내과, 치과, 한방 등
- 지원내용 : 내과 한방 치과 진료 및 투약 건강교육 실시,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300명					2,150		2,150
'10	6,854명					500		500
'11	7,946명					400		400
'12	7,000명					450		450
'13	7,000명					400		400
'14	7,000명					400		4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7,946	0	0	0	0	400		400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병원선운영	내,한방 치과 순회진료 인원	진료인원	명	6,800	7,946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내부 리모델링 공사 실시로 인해 진료환경 개선
- 내과·치과·한방실 및 약국 확장·개선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주민들의 만족도 증가.
- 전자차트 개발(환자 진료시간의 단축, 진료차트 보관 및 분실 가능성 감소)
- 진료 외 구강보건사업 등 보건사업 실시(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 증가)

○ 미흡한 점

- 보건진료소 소재 도서지역 증가로 인한 내과진료 실적 감소.
  - 장봉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로 승격 예정(5월)
  - 소연평, 문갑, 울도 진료소 설치 운영 예정(9월)
- 방사선실 실적 저조
  - 방사선실 관리 인력 부족.
- 건강검진차량 방사선 검사 실시로 병원선 방사선실 운영의 비효율적
- 보건사업의 연계 부족
  - 각 팀별 사업 운영 시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구강보건사업외 다른 보건사업의 경우 병원선 개별 실시로 다양한 혜택이 어려움.
- 치과진료의 어려움
  - 치과장비의 병원선 내부설치로 인하여 이동진료가 어려워 거동 불편 주민들에게 치과 진료가 어려움.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인천광역시)
-------------	----------------------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담당자	강혜원

### 1. 사업목표

-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체계적 양성
- 추진근거 : 강화군조례 제1613호(강화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매년 3~12월
- 사업주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주관 : 강화군
  - 실시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추진내용
  - 농업대학 : 환경원예과 80명, 향토자원개발과 40명
  - 농업대학원 : 마케팅과 40명, 관광농업과 40명

### 3. 연차별 추진계획

- 1998년 강화군농업대학 설립 계획 승인
- 1999년 강화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4년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 2005년 강화군농업대학원 설립 계획 승인
- 2005년 강화군농업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7년 농업대학 운영 전국 최우수상 수상
- 2011년 총 졸업생(누계) 1,403명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71명, 4개학과			0.4		0.9	0.6	1.9
'11	200명, 4개학과			0.3		1.1	0.5	1.9
'12	160명, 4개학과			0.3		0.8	0.2	1.3
'13	160명, 4개학과			0.3		0.8	0.2	1.3
'14	160명, 4개학과			0.3		0.8	0.2	1.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00명, 4개학과			0.3		1.1	0.5	1.9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대학 및 대학원운영	교육의 질	교육횟수	회	40	40	100
	교육참여도	교육(졸업)인원	명	200	189	9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시설로 교육만족도 매년 상승되고 있음
- 농업대학 교육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농업기술센터 군 농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해외연수 및 현장견학 시 내실 있는 견학 일정으로 학생들의 교육 파급효과 높았음

- 향토자원개발과는 “발효”중점 교육으로 발효식품 및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음
- 미흡한 점
  - 입학 시 오리엔테이션 실시로 학사일정에 대한 이해와 학생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 외래강사 섭외 시 우수강사의 요구 금액과 농업대학 강사기준의 차이로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 학습 집중력 강화 및 학생 복지를 고려하여 교육시설에 적합한 교육정원 조정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인천광역시)
-------------	---------------------

담당부서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창수

### 1. 사업목표

- 지역의 특성상 교육대상자가 통학하기가 불편하고, 각종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운영,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 추진근거
  - 「기본교육법」 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계속 사업)
- 사업주체 : 각급학교(예산은 교육청 지원)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면지역 소재지 초·중학교 18교(초-15교, 중-3교)
  - 2011년도 지원 예산 : 883백만원
  - 지원조건 : 통학방법이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넓은 통학구역에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인도 및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학교
  - 지원내용 : 노후차량교체비, 통학버스 임차료, 통학버스 기본운영비, 승차지도원 인건비,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5개교					7.55		7.55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8개교					8.84		8.84
'12	18개교					11.99		11.99
'13	18개교					13.10		13.10
'14	18개교					14.05		14.0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8개교					8.84		8.84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추진실적

- 2011년도 884백만원 지원목표 대비 100% 달성
- 세부 지원 내역
  - 강화관내 초·중학교 18개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유류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 131백만원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43백만원
  - 초등학교 승차지도원 인건비 지원 : 93백만원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363백만원
  - 노후차량교체비 지원 : 254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통학버스운영비지원율	지원액/학교신청액	%	94	94	100
	노후차량교체지원율	교체수/내용연수경과차량수	%	80	80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2011년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지원을 하여,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향상

○ 미흡한 점

-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자체재원이 전무한 상황이고, 학생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승차지도원 인력 증가, 노후차량 교체비 등 각종 운영비 증가가 예상됨

○ 건의사항

- 2011년도까지 무료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소요예산 또는 필요인력 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군청-학교 간 활발한 소통, 교류 등이 필요



#### 4. 울산광역시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울주군보건소)
-------------	-----------------------

담당부서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진료지원팀	담당자	신수연 주무관
			-

##### 1. 사업목표

- 한방순회 진료사업을 통하여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방진료 대중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고 보다 건강한 삶 향상코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 19조, 한의약육성법 제 16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조

##### 2. 사업내용

- 목 적 : 퇴행성질환 및 만성질환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대 상 : 의료취약계층, 경로당, 복지관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일 시 : 2011. 1 ~ 12월
- 내 용
  - 침 시술,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
  - 한방관련 건강 상담
  -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교육
  - 잘못된 한방상식 소책자 배부
  - 만성질환자 대상자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등록·연계
- 인 력 : 한방공중보건 의사 1명, 담당자 1명
- 예 산 : 4,000천원 (군비 100%)

○ 추진상황

구분 (보건소명)	추진업무명 (프로그램명)	장소명	소재지	운영 횟수	인원 (명)	비고
남부통합 보건지소	한방순회 방문진료	계		21	314	
		남부 노인복지관	온양읍 발리	6	120	
		음달경로당	온양읍 운화리	4	65	
		덕신 노인회관	온산읍 덕신리	5	59	
		신덕하 노인회관	청량면 상남리	5	53	
		저리 경로당	웅촌면 대대리	1	17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0.175	-	0.175
'11	314명/5개소					0.04	-	0.04
'12	400명/5개소					0.045	-	0.045
'13	400명/5개소					0.045		0.045
'14	400명/5개소					0.045		0.04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14명 5개소 300명 5개소	-	-	-	-	0.04	-	0.0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방순회 방문진료	한방순회 진료인원	실적/계획	명	300	314	104.7 (초과달성)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의료소의계층을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미흡한 점
  -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높아진 지역주민의 한방진료 요구도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건의사항
  -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로 다양하고 질 높은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 관련 타부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 필요.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울산시 교육청)
-------------	------------------------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담당자	김경철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학부모 및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 제공
- 추진근거 : 2011년도 평생교육 운영 계획

### 2.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51기관(학교+도서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80백만원,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도서관 및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5/255					4.1		4.1
'10	51/51					0.7		0.7
'11	51/51					0.8		0.8
'12	51/51					0.8		0.8
'13	51/51					0.9		0.9
'14	51/51					1		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1/51					0.7		0.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평생교육 참여율 당초 목표('10년도 대비 10% 증가) 초과 달성
    - ※ 기준연도('10) 대비 17%, 당초('11) 목표 대비 7% 초과 달성
  - 공공시설(도서관+학교)을 이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참여인원 증가율	명	12,450	13,300	107

※ 측정기준 : '11년도 참여인원/'10년도 참여인원×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공공시설(도서관 및 학교)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울산시 교육청)
-------------	-----------------------

담당부서	재정과(예산팀)	담당자	김영곤

### 1. 사업목표

-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를 인근 적정규모 학교와의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 추진근거
  -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자체)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 총사업비('98~'14) : 17.9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10.7억원)
- 사업규모 : 농산어촌 통학차량 운영 학교  
( '11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104개 학교 지원)
- 지원형태 : 학교기본운영비 전출금
- 지원조건 : 자부담 100%
- 사업시행주체 : 울산광역시교육청

### 3. 연차별 추진계획

-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통·폐합학교의 통학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학교 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						10	10
'10	9						1.2	1.2
'11	9						1.6	1.6
'12	10						3.8	3.8
'13	10						1.2	1.2
'14	11						2.2	2.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9						1.6	1.6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운영비지원	통학버스보유학교 운영비 지원율	%	9	9	100
	차량구입비지원	통학버스 구입 요구 대응율	%	1	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규모의 학교운영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 5. 경기도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노희정

### 1. 사업목표

-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 친화적 생활 공간 조성여성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 제고 지원

### 2.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지원 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용인,이천,여주)
  - 지원 금액 및 형태 : 327백만원 (도비 20%, 시군비 70%, 자부담 10%)
    - 1개소 당 109백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3개소					294	33	327
'11	3개소					294	33	32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개소					294	33	32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정상 운영 센터	정상 운영 센터 개소수	%	3	3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영농 및 자녀 보육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 고충 상담, 보육 및 방과 후 학습 지도, 교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음

2-1-5-1(계속)	<b>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경기도)</b>
-------------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담당자	연종희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립 능력 함양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 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 2. 사업내용

-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
  - 사업 지원 대상 : 경기 동·북부 지역 12개 시·군
  - 사업 규모(사업량) : 개소별 30천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시설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 25백만원·장비구입 5백만원/1시·군 당
-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추진
  - 사업 지원 대상 : 사회적·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학습 마을 당 1억원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750백만원 내외 (전액 도비)
  - 지원 내용 :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경기도만의 특화 모델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

	사업규모 (기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49개					1,250		1,250
'11	3개소					375		375

<연도별 시행계획 -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8개소					750		750
'11	8개소					800		800

<시행계획 추진실적 -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개소					375		375

<시행계획 추진실적 -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8개소					375		375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평생교육시설 인프라확충	사업별 지원 개소수	사업별 지원 개소수	%	16	8	50
경기행복학습 만들기교육	사업별 지원 개소수	사업별 지원 개소수	%	2	8	3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 지역의 열악한 평생 교육 환경으로 인해 영농 및 자녀 보육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농촌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 6. 강원도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강원도)
-------------	-------------------

담당부서	농어업정책과	담당자	김광영

###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및 삶의 질 제고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총사업비 : 218백만원('11년까지 기투자액 : 2,920백만원)
- 사업규모 :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종사,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시설을 확보한 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도비 10%, 시군비 75%, 자부담 15%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1,018	181	1,199
'10	3	-	-	-	-	278	49	327
'11	2	-	-	-	-	185	33	218
'12	2	-	-	-	-	185	33	218
'13	2	-	-	-	-	185	33	218
'14	2	-	-	-	-	185	33	21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		-	-	-	185	33	218

- 2011년 1개소(평창) 사업 포기에 따라 2개소(횡성, 양구)만 지원하게되어 사업비 감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개소당 지원액	지원액	%	218	21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국비 지원이 없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 여성농업인센터 적극 운영
- 미흡한 점
  -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차등 지원 요청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강원도교육청)
-------------	------------------------

담당부서	학교정책과	담당자	윤문상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실무원 배치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의 장으로 활용
- 추진근거
  - 제2차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2010년~2014년)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 제12조 2항 및 시행령 제7조

### 2.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운영 내실화 : 4개 시·군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강릉시, 삼척시, 횡성군, 화천군)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 22개관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및 문화센터화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사업 규모(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361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3,068,500천원(교육비특별회계)
  - 지원조건 : 학교도서관 개방 및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권장
  - 추진일시 : 2011. 3월(계속)
  - 내 용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361개교)

- 지원액 : 3,068,500천원(교당 8,500천원)
- 재 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240교					20.40		20.40
'11	361교					30.69		30.69
'12	355교					30.18		30.18
'13	355교					30.18		30.18
'14	355교					30.18		30.1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61					30.69		30.69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361교 / 실적 : 372교)
  - (사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11명 배치하였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평생교육 기반확충	농어촌 평생학습 도시 지정확대운영	지정도시수	시·군	4	-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액	백만원	488	-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배치	배치학교 수	교	361	372	103%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사업은 교과부 특교 사업으로 교과부의 특별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됨.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평생교육정보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없음.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교수-학습의 공간으로 개방
- 미흡한 점
  - 학교마다 실무원 배치 기간이 상이하여 지속적인 도서관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 장기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확대 배치



2-1-5-1(계속)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강원도교육청)
-------------	-------------------------

담당부서	교육진흥과	담당자	전용철

## 1. 사업목표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 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추진근거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7개 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300천원 ~ 1,560천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협의회 재구성 : 2011. 1월 ~ 3월
    - 규정 제(개)정 : 2011. 1월 ~ 12월
    - 위원 수 : 8명 ~ 15명
    - 회의개최 : 2011. 1월~ 12월 중 정례회 1회 개최 후 시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지원조건 : 위원회 참석수당, 간담회 및 협의회비, 회의자료 준비 등
- 지원내용
  - 교육시설 확충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 우수 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
  -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 기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교육발전 협의회 개최

-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현안 사항 등을 매년 1~2회 협의
- 학습능력 제고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타사업에 관한 교육 경비 보조금 확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지역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1	0.57	371.57
'11	4청					78	0.10	78.10
'12	5청					80	0.11	80.11
'13	6청					72	0.12	72.12
'14	6청					70	0.12	70.12
'15	6청					71	0.12	71.1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지역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7청					371	0.57	371.5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각 지역청별 평균 2회의 회의 개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군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시·군교육발전 협의회	연간 협의회 개최횟수	회	2	2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각 시·군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교육환경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음.
- 미흡한 점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미흡함
- 건의사항 : 해당없음.

2-1-5-1(계속)	<b>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강원도교육청)</b>
-------------	-----------------------------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안성수

### 1. 사업목표

- 중·고등학생 야간 통학편의 제공으로 교육효과 증대
- 학부모의 생업지장 및 재정적 부담 경감
- 통학차량 활용도 증대로 학생·학부모 학교에 대한 만족도 증가
- 추진근거 : 제2차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2010년~2014년)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미운행으로 귀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자율에 의해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통학여건 개선 및 교육효과 증대
- 사업 규모(사업량) : 17개교, 52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88,323천원, 활용 가능한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 지원조건 : 고등학교 중 인근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활용 가능한 학교
- 지원내용 : 계약직 운전원인건비, 차량운영비

###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숙사 준공으로 입사 되는 학교는 연차별 제외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7	14.07
'10	26교						2.93	2.93
'11	17교						2.61	2.93
'12	16교						2.91	2.93
'13	15교						2.81	2.93
'14	15교						2.81	2.9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7						2.61	2.6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대비 실적 100% 달성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원학교 수	지원학교 수	교	17	1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고등학생의 야간 통학편의 제공으로 교육효과 증대
  - 학부모의 생업지장 및 재정적 부담 경감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이 필요.

## 7. 충청북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청북도)
-------------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보건8급 정미순

### 1. 사업목표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산부인과 병의원 없는 시·군을 위한 출산환경 대책 마련으로 의료취약지인 농촌지역의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사업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 대 상 :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및 노인, 건강위험 요인 있는 일반 지역주민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시행주체 : 12개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129명의 방문관리사
  - 사업비 : 31억원(기금 50%, 지방비 50%)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대 상 : 산부인과 병의원 없는 시군(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이동 산부인과 전담팀 구성 및 검진 차량 운영
    - 월 2회 이상 산전진료 및 산전검사(20여종) 실시
    - 임신부체조교실, 영양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육아교육 실시
  - 시행주체 : 충주의료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비 : 1.0억원(도비 100%)

### 3. 연차별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관리에서 일반주민으로의 건강관리 범위 확대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 발생시 이동산부인과 확대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규모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34,373	8,395	-	-	-	-	-	8,395
'10	64,000		-	-	15.1	15.1	-	30.2
'11	65,000		-	-	15.5	15.5	-	31
'12	66,000		-	-	15.5	15.5	-	31
'13	67,000		-	-	15.7	15.7	-	31.4
'14	68,000		-	-	15.9	15.9	-	31.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65,000	-	-	-	15.5	15.5	-	31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규모(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국비			
합계	2,034,373	8,395	-	-	-	-	-	8,395
'10	1개소		-	-	23	23	-	46
'11	3개소		-	-	-	1.0	-	1.0
'12	2개소		-	-	-	0.8	-	0.8
'13	2개소		-	-	-	0.8	-	0.8
'14	2개소		-	-	-	0.8	-	0.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개소/70명	-	-	-	-	1.0	-	1.0

#### 4. 성과목표 달성도

○ 방문건강관리사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문건강관리	취약가구등록가구수	계획대비 실적	%	65,000	65,000	100
	취약가구등록관리율	계획 대비 실적	%	41	49	119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운영횟수)	계획대비 실적	%	40	40	100
	운영실적(진료인원)	계획 대비 실적	%	203	218	107

#### 5. 자체평가

○ 잘된 점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농촌지역의 이동산부인과 운영으로 임신 및 출산에 편리한 환경 제공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당자	정속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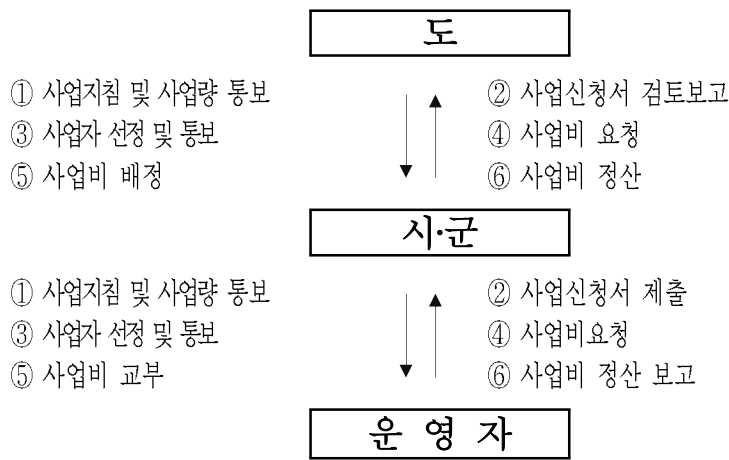
### 1. 사업목표

-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한기 문화 활동·교양강좌, 도·농 교류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젊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촌 정착 유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 사업추진체계도 >



#### - 사업추진절차

- 도 : 사업지침시달, 사업자선정, 사업비배정, 사업실적평가 및 지도감독
- 시·군 : 사업신청서접수 및 이송, 사업비교부, 센터지도감독, 사업비정산



- 사업규모 : 3개소(청주, 청원, 영동)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 사무실·상담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시설을 확보(다만,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하여 이용)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부정기사업비
  - 사업 주요내용 :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안내
    - 여성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도비 11%, 시군비 74%(분권 50%포함), 자담 15%
- 사업비 : 420백만원 (개소당 140백만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					19.5	3.3	22.8
'10	3					3	0.5	3.5
'11	3					3.3	0.6	3.9
'12	3					3.6	0.6	4.2
'13	4					4.8	0.8	5.6
'14	4					4.8	0.8	5.6

####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					3.3	0.6	3.9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연)	상담 건수	계획대비 실적	건	571건	597건	105%
영유아 보육활동(연)	보육 건수	계획대비 실적	명	215명	234명	109%
방과 후 학습지도(연)	학습 건수	계획대비 실적	명	261명	194명	74%
농한기 교육및 문화 활동(연)	활동 건수	계획대비 실적	회	463회	630회	136%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좋으며, 도농교류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이 기대됨.
-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 영유아수 감소, 물가 상승 및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센터 운영 사업비가 편중되어 교육 및 문화활동 위축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청북도)
-------------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배상준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특화 및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농어촌 주민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등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 추진근거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 사업비 : 288백만원(2011년)
- 지원형태 : 출연금(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							
'11	-					1.7		1.7
'12	-					2.8		2.8
'13	-					4		4
'14	-					4		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					1.7		1.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계획대로 17개 공모사업에 72백만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공모사업 지원 실적	건	17	17	113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을 통해 중앙, 도, 시·군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 수립, 평생교육 지원,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선정된 프로그램 기관·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향후 농촌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함.
- 건의사항
  -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 담당자 의견 최대한 반영

2-1-6-1(계속)	시군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청북도)
-------------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담당자	최경분

### 1. 사업목표

- 지역 민·관·학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현안에 대한 상생적인 협력과 합의점 도출
-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cluster) 구축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비 : 비예산
- 사업대상 : 우리교육청, 도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

### 3. 연차별 추진계획

- '11년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 권장
- '12년까지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11개 시군에 대해 적극 권장으로
  - 교육여건 개선,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역내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대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교육현안 해결

###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미흡한 점 : 다양한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 시간·공간적 제약 등으로 활성화 및 우리교육청과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구성 미흡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충청북도)
-------------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담당자	김창식

### 1. 사업목표

- 통폐합 학교 및 통학불편교에 통학차량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비 : 4,777백만원(2011년)
- 사업규모 : 노후차량 교체 10대, 직영차량 운영비 129대, 임차비 89대,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129명
- 지원형태 : 자체예산

### 3. 연차별 추진계획

- '11년부터 면이하 지역 농촌학교 통학차량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35	-	-	-	-	24,573	-	24,573
'10	208	-	-	-	-	3,581	-	3,581
'11	228	-	-	-	-	4,777	-	4,777
'12	233	-	-	-	-	5,071	-	4,777
'13	233	-	-	-	-	5,121	-	5,121
'14	233	-	-	-	-	6,023	-	6,02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28		-	-	-	4,777	-	4,777

- 2011년도 통학차량 지원계획에 따라 225대를 본예산에 편성·지원 하였으며, 통학불편교 3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함.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면이하지역 농촌학교의 통학차량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차량 지원	면이하학교 통학차량 지원	지원률	%	92	99	108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2011년도 면이하지역 농촌학교의 통학차량지원 확대

## 8. 충청남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청남도)
-------------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용란

### 1. 사업목표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 2.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인력 163명)
  - 등록관리 104,792가구, 방문서비스 제공 472,068회
- 병원선 도서주민 운항일수(진료일수) 및 진료실적
  - 운항일수 : 184일(진료일수 : 184일)
  - 진료실적 : 196,753명(내과 192,568, 치과 488, 한방 3,697)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				9,035	12,503		21,538
'10	16				1,663	2,555		4,218
'11	16				1,692	2,342		4,034
'12	16				1,830	2,468		4,298
'13	16				1,900	2,538		4,438
'14	16				1,950	2,600		4,55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6				1,692	2,342		4,03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등록관리가구수	방문서비스 등록관리가구수	천가구	100	104	104
	년간 진료실적	병원선내원진료환자	명	208	196	9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방문전문인력 163명이 방문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약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1-3-3-7(계속)	<b>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충청남도)</b>
-------------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황평하

### 1. 사업목표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 지도
- 농한기에 교양 강좌 및 문화 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도농교류 및 농촌 체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규모(사업량) : 3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360백만원(개소당 12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12%, 시군비 74.5%, 자부담 13.5%
-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 사업추진주체 : 도(시장·군수)

###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36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개소					1,548	252	1,800
'10	3개소					306	54	360
'11	3개소					306	54	360
'12	3개소					312	48	360
'13	3개소					312	48	360
'14	3개소					312	48	36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개소					306	54	36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에 각120백만원씩 100% 운영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 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지원 개소수	여성농업인센터수 대비 지원센터수	개소수	3	3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사업비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영농활동 전념
- 미흡한 점
  -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사업 추진 어려움
  - 영유아 감소로 인한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어려움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충청남도)
-------------	----------------------

담당부서	평생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장래철

### 1. 사업목표

-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 2. 사업내용

- 평생교육기관 역할 강화
  - － 「평생학습기관」 역할 강화
    -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권역대표 및 지역거점 평생학습관 운영 : 20개 평생학습관
  -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 학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 226교 3억 5,256만원
    -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 10교 4,000만원
-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 바른품성 5운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객이 행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 사회 배려대상 프로그램 운영
    -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성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평생교육기관 역할 강화
- 평생교육 기회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		
'10						3		
'11						4		
'12						3		
'13						4		
'14						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평생교육기반 확충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희망학 교/지원학교	학교	236	23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미흡한 점 : 학교 평생교육 자발적 참여
- 건의사항 : 지역주민이 학교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필요

2-1-6-1(계속)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청남도교육청)
-------------	------------------------

담당부서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	김태길

### 1. 사업목표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 사업규모 : 지역별 교육발전지원단 자체 사업
- 지원형태 : 시·군별 자율 시행
- 지원조건 : 비예산 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군 지역교육발전지원단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0년 하반기 지역별 교육발전협의회 자체 구성
- 2010년부터 자율적인 협의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실적>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구성 : 15개 지역교육지원청 총 514명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
인원	58	31	28	17	37	47	33	38	41	38	28	33	33	24	28	514

- 구성기준
  - 학계, 교육관계 종사자
  - 도의원, 기초의원

- 운영위원 협의회, 학부모 단체
- 각종 봉사단체 인사 : 노인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전우회, 장애인 단체, 자율방범대, 새마을 단체 등
- 기타 교육관련 인사 및 단체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협의회 : 총 44회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
개최 횟수	3	3	2	3	3	3	4	3	3	2	3	3	3	3	3	44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시·군별 교육발전협의회 2-4회(100%)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교육발전협의회	협의회개최	횟수/시군	회	40회	44회	11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시급한 사안에 대한 검토 협의
- 다양한 지역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발전 방안 수립

○ 미흡한 점

- 지역별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성과 및 활성화 정도의 편차가 큼

○ 건의사항

- 자율적인 협의체이나 협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별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2-3-2-4(계속)	농산어촌 통학차량 지원(충청남도교육청)
-------------	-----------------------

담당부서	총무과(총무팀)	담당자	남도현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
- 추진근거 : 자체계획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2014년 까지
- 사업주체 : 충청남도교육청
- 추진내용 : 면지역 이하의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학생용 임차버스(예산) 총 60대 지원
- 추진체계 : 예산지원(도교육청)-임차버스 계약 및 운행(각급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대					72		72
'11	51대					16		16
'12	54대					17		16
'13	57대					19		19
'14	60대					20		20

#### <추진실적>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52대					17		17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 52 / 목표치 51대 = 달성정도 101%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통학 버스지원	학생 통학 버스 임차료 지원	임차 버스 51대 확보	대	51	52	101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기존 통학버스 보유학교에서 인근학교와 공동활용 방안을 적용하여 통학버스 활용 폭의 확대와 예산 절감
- 미흡한 점
  -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이 되지 않아 통학에 불편 초래
- 건의사항
  - 일반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을 학생 통학 시간에 맞게 조정
  - 농어촌 지역의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통학버스 출입이 불편하여 학생들이 걸어나와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소도로 여건을 개선
  - 교육회계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통학여건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부모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임차차량 예산을 지원

## 9. 전라북도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전라북도)
-------------	--------------------

담당부서	첨단농업과	담당자	유 윤 희

###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 ~ 12월(1년간)
- 사업량 : 8개소(남원 2, 진안 1, 임실 1, 순창 1, 고창 1, 부안 2)
- 주요내용 : 농업인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보육, 방과후학습 등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자격·시설·인력을 갖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홍보('11. 2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11. 2월, 3월, 6월, 9월)
- '12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대상자 선정('11. 8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					4,572	608	5,180
'10	7					714	126	840
'11	8					816	144	960
'12	8					936	104	1,040
'13	9					1,053	117	1,170
'14	9					1,053	117	1,17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8					816	144	96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8개소, 816백만원 지원(계획대비 100%)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규모	지원센터 수	개소	8	8	100
	지원금액	지원센터수×지방비지원금액	백만원	816	81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센터별 프로그램 개발로 부정기사업 활성화(꾸러미사업 등)
- 업무협약 체결로 재능기부 활용 문화활동 확대

2-1-5-1(계속)	<b>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전라북도교육청)</b>
-------------	-------------------------------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안미경

### 1. 사업목표

- 농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문화·정보의 혜택에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 함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사업주체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
- 사업규모 : 7개 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 운영
- 지원형태 : 지방비(교육비특별회계) 100%

### 3. 연차별 추진계획

- 프로그램 강좌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함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616		616
'10	7					84		84
'11	7					112		112
'12	7					140		140
'13	7					140		140
'14	7					140		14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7					112		11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운영 지원 경비	예산확보액	%	112	112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지역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시, 되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지역사회 소수의 인원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건의사항 : 해당없음

2-3-2-4(계속)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전라북도교육청)
-------------	------------------------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강봉규

### 1. 사업목표

- 교통소외지역 농산어촌 학생 통학문제 해결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의한 통·폐합학교 및 통학여건이 불편한 읍·면지역 초등학교
  - 사업규모(사업량) : 전주팔복초 등 276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0,161,781천원
  - 지원내용 : 통학차량 구입비(17대) 및 운영비(237대), 전세버스 임차료(116대), 직영버스 안전도우미 인건비(240명), 통학비(20교, 택시비)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10,161		10,161
2012						11,974		11,974
(증△감)						1,813		1,813

- '12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교, 대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1	383					11,974		11,974
전주	4	4					94		94
군산	18	18					552		552
익산	31	31					1,069		1,069
정읍	23	33					1,029		1,029
남원	23	28					775		775
김제	29	32					1,280		1,280
완주	30	32					1,146		1,146
진안	14	22					700		700
무주	12	17					628		628
장수	8	13					285		285
임실	16	23					717		717
순창	17	19					737		737
고창	21	26					943		943
부안	23	28					648		648
택시비	21	23					185		185
특수학교	11	34					1,355		1,355

<중기재정 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9,782		9,782
'11							10,161		10,161
'12							11,974		11,974
'13							13,729		13,729
'14							13,729		13,729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학생통학지원에 필요한 경비 확보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생통학지원	농산어촌 무료통학지원	예산확보액	%	10,161	10,161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잘된 점

- 경제, 문화, 의료,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무료통학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에 기여

### ○ 미흡한 점

- 2009년부터 『농산어촌 무료통학지원 사업』으로 통학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소재학교는 전면 지원한 반면, 읍·면지역과 통학여건 등이 비슷한 이른바 통촌洞 소재학교는 통학지원에서 제외되어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반영 검토



## 10. 전라남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전라남도)

전라남도 보건한방과 김태은

### 1. 사업목표

- 방문전담 인력이 투입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체 관리능력 향상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호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규정 제4조, 전라남도병원선운용조례 제4조

### 2. 사업내용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사업대상 : 차상위계층이하 가구의 건강위험군
- 사업범위 : 22개 시군
  - 만성질환, 재가 암환자 등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 서비스내용 : 건강사정 및 진단, 방문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등
- 추진체계
  - 대상자의 건강문제,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방문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방문전담인력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도 향상
  -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적극 활용
  - 지역담당간호사 1인당 집중관리군 적정관리 가구수를 유지하여 서비스 질 향상
  - 관리가구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율 향상

**【무의도서 순회진료】**

- 사업대상 : 도내 무의도서주민
- 사업범위 : 11개시군 188개도서 17,893명
- 서비스내용 : 진료(일반, 한방, 치과),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초음파, 심전도 등
- 추진체계
  - 매월 병원선 출항 전 세부 진료계획을 수립, 사전에 마을 이장 등에게 일정 통보로 주민 홍보 강화
  - 병원선 접안이 곤란한 도서의 경우는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마을에 찾아가서 실시하거나, 병원선 보트 이용하여 병원선으로 이송하여 환자진료 및 처치

**3. 연차별 추진계획**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추진내용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 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2011. 1 ~ 12월
- 사업비 : 5,076백만원(건강증진기금 50%, 시군비 50%)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5				2,538	2,538		5,076
목포시	11				124	124		248
여수시	16				166	166		332
순천시	14				162	162		324
나주시	10				114	114		228
광양시	12				140	140		280
담양군	11				126	126		252
곡성군	9				116	116		232
구례군	5				55	55		110
고흥군	8				95	95		190
보성군	9				107	107		214
화순군	11				129	129		258
장흥군	6				69	69		138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강진군	7				75	75		150
해남군	12				137	137		274
영암군	11				126	126		252
무안군	10				108	108		216
함평군	9				107	107		214
영광군	9				105	105		210
장성군	10				120	120		240
완도군	12				116	116		232
진도군	9				94	94		188
신안군	14				147	147		294

### 【무의도서 순회진료】

- 추진내용 : 도서지역주민 병원선 이용 순회진료
    - 대 상 : 11개시군 187개도서, 17,893명
    - 방문횟수 : 무의도서 연 5회, 보건진료소 설치도서 연 1회
  - 추진일정 : 2011. 1 ~ 12월
  - 사 업 비 : 2,403백만원(도비)
-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전남도	2척					24		24

## 4. 추진실적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5				2,538	2,538		5,076
목포시	11				124	124		248
여수시	16				166	166		332
순천시	14				162	162		324
나주시	10				114	114		228
광양시	12				140	140		280
담양군	11				126	126		252
곡성군	9				116	116		232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구례군	5				55	55		110
고흥군	8				95	95		190
보성군	9				107	107		214
화순군	11				129	129		258
장흥군	6				69	69		138
강진군	7				75	75		150
해남군	12				137	137		274
영암군	11				126	126		252
무안군	10				108	108		216
함평군	9				107	107		214
영광군	9				105	105		210
장성군	10				120	120		240
완도군	12				116	116		232
진도군	9				94	94		188
신안군	14				147	147		294

### 【무의도서 순회진료】

- 사업대상 : 11개시군, 187개도서, 8,561세대, 17,893명
- 사업기간 : 2011. 1월~12월(연간 216일 운항, 180일 진료)
- 추진방법 : 병원선을 이용한 도서주민 순회진료 연 6회
- 진료반 : 병원선 2척 - 전남511호(여수권), 전남512호(목포권)
  - 지원인력 : 32명(내과2, 한의사2, 치과의사2, 간호사4, 의료기사6, 선원진 등16)
- 추진실적 : 22,309명(의과 12,952, 한방과 4,819, 치과 2,112, 검진 2,426)

####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전남도	2척					24		24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목 표 : 114,645가구(취약가구수 × 45%)
  - ※ 취약가구 : 254,768가구  
(건강보험하위20% 193,363,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61,405)
- 실 적 : 112,840가구  
⇒ 달성도 : 98.4%

**【무의도서 순회진료】**

- 목 표 : 17,536명(의과 9,916, 한방과 3,356, 치과 1,983 검진 2,281)
- 실 적 : 22,309명(의과 12,952, 한방과 4,819, 치과 2,112, 검진 2,426)  
⇒ 달성도 : 127%

○ 초과달성 사유

- 도서주민 방문진료 횟수 확대 및 순회진료 강화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맞춤형방문건강 관리	차상위 계층이 하울 가구등록관리율 45%	(등록관리 가구 수/차상위 계층 이 하 가 수)×100	%	45	44.3	98.4
무의도서주민순 회진료	도서지역의료서 비스 제공율 97%	(실 적 / 목 표)×100	%	97	127	131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문연안 주무관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11) : 451백만원(지방비 383, 자부담 68)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4개소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70%(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383	68	451
나주	1					96	17	113
고흥	1					96	17	113
무안	1					95	17	112
장성	1					96	17	113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383	68	451
나주	1					96	17	113
고흥	1					96	17	113
무안	1					95	17	112
장성	1					96	17	113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고충상담, 보육, 방과후 학습,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등 센터별 프로그램운영으로 목표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 프로그램 수 및 이용인원	명	4개분야 22천명	4개분야 22천명	100.0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11) : 10,351천원
- 지원대상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 사업규모 : 평생학습관 25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평생학습관 자체 예산편성
- 지원내용 : 평생학습관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요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생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배려계층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점차적 확대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							
목표	1							
여수	1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나주	2							
광양	2							
담양	1							
구례	1							
곡성	1							
보성	2							
화순	1							
장흥	1							
해남	1							
영암	1							
무안	1							
함평	1							
영광	1							
장성	1							
진도	1							
고흥	1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							
목포	1							
여수	1							
나주	2							
광양	2							
담양	1							
구례	1							
곡성	1							
보성	2							
화순	1							
장흥	1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해남	1							
영암	1							
무안	1							
함평	1							
영광	1							
장성	1							
진도	1							
고흥	1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목표치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수 / 전체 평생학습관수	%	84	100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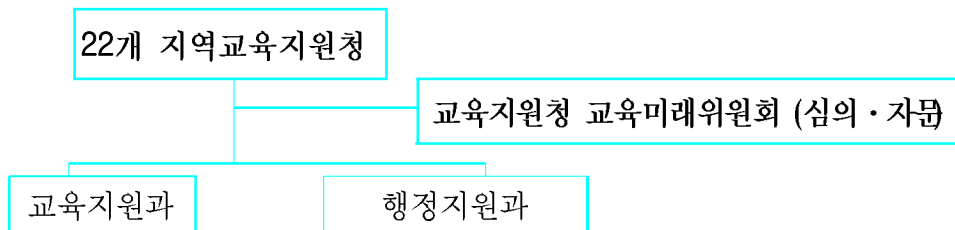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정혜자 장학사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교육의 발전 방안과 미래의 교육시책 수립 및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 추진근거 : 교육규칙 제595호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01.01.~2011.12.31.(1년)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미래위원회 (22청별)
- 추진체계



- 사업비('11) : 지방비 127,270천원
- 사업규모 : 22개 교육지원청별 정기회 및 임시회
- 지원내용 : 지역교육발전 및 미래의 교육시책 자문
- 위원회의 주요기능
  -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미래의 교육시책 수립
  - 교육지원청 수준 교육개혁 과제의 실천방안 수립
  - 그 밖에 지역교육시책 등에 관하여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연차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내용

시기	주요 추진 내용
1월	○ 교육장공모제 추진교육청 관련사안 심의 및 처리
7월	○ 교육장공모제 추진교육청 관련사안 심의 및 처리
12월	○ 차기년도 주요업무계획 외 각종 종합계획 심의

○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기한	비 고
○ 상정안건 제출	- 10일 전까지	
○ 관련(회의)자료 준비	- 7일 전까지	
○ 위원회 개최 알림	- 5일 전	
○ 위원회 추진	- 당일	
○ 회의 결과 추진 및 통보	- 5일 이내	

○ '11년도 시행계획

연번	지역청	정기회	위원수	2011 예산액	비고
1	목포	1	20	5,880	
2	여수	1	17	2,900	
3	순천	1	19	6,280	
4	나주	1	18	4,440	
5	광양	1	20	5,580	
6	담양	1	18	4,560	
7	곡성	1	19	4,120	
8	구례	1	19	3,040	
9	고흥	1	20	4,770	
10	보성	1	20	3,320	
11	화순	1	20	3,570	
12	장흥	1	20	0	
13	강진	1	19	4,160	
14	해남	1	17	3,720	
15	영암	1	20	3,140	
16	무안	1	20	3,320	
17	함평	1	15	0	

연번	지역청	정기회	위원수	2011 예산액	비고
18	영광	1	15	8,000	
19	장성	1	20	3,180	
20	완도	1	20	3,320	
21	진도	1	16	2,200	
22	신안	1	20	4,770	
계				84,270	

#### 4. 추진실적

##### ○ '11년도 추진실적

연번	지역청	회의 개최횟수	평균 참석위원수	2011 집행액 (11.11.21. 현재)	비고
1	목포	2	16	1,960	
2	여수	6	13	1,678	
3	순천	2	18	1,520	
4	나주	3	14	2,568	
5	광양	2	16	2,001	
6	담양	3	14	2,426	
7	곡성	2	16	2,340	
8	구례	1	18	134	
9	고흥	2	32	1,990	
10	보성	1	18	1,520	
11	화순	2	17	1,260	
12	장흥	1	16	0	
13	강진	1	19	400	
14	해남	3	12	2,130	
15	영암	2	14	313	
16	무안	2	13	974	
17	함평	2	12	0	
18	영광	5	13	3,644	
19	장성	3	16	1,458	

연번	지역청	회의 개최횟수	평균 참석위원수	2011 집행액 (11.11.21. 현재)	비 고
20	완도	2	14	1,335	
21	진도	2	15	2,142	
22	신안	3	16	3,614	
계		52	16	35,407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율	(회의개최수/교육청수)×100	%	22회	52회	236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구성률	(위원회 구성 교육청수/교육지원청 수)×100	%	22청	22청	100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노후 차량, 안전사고 위험 통학차량 지속 교체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확대
- 추진근거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 전라남도립학교 차량관리 운영 규정

## 2. 사업내용

### 가. 노후 통학차량 교체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비('11) : 2,863백만원(지방비)
- 지원대상 : 최단운행기준연한(내용연수) 2년 초과 및 노후 통학차량으로 선정된 차량
- 사업규모 : 43대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나.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 사업기간 : 2008 ~ 계속 사업
- 사업비('11) : 1,059백만원(지방비)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
- 사업규모 : 303명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 제53조 2항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요원 동승 의무에 의거 등·하교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도 업무 수행

### 3. 연차별 추진계획

<'11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차량교체	43대					2,863		2,863
안전도우미	254명					888		888

### 4. 추진실적

<'11년도 추진실적>

-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기준을 희망학교 전체 지원으로 확대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차량교체	43대					2,863		2,863
안전도우미	303명					1,059		1,059

### 5.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추가 지원으로 초과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	노후차량 교체	교체차량/교체대상	대	43	43	100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안전도우미 예산지원/ 지원대상	명	254	303	119



## 11. 경상북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상북도)
-------------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제미자 이민영

### 1. 사업목표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적극적 건강생활 실천 유도
  - 출생아의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을 이용하여 임산부에게 산전검진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2. 사업내용

#### 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 사업량 : 1,812명(9개 시군)
- 운영 : 안동의료원 위탁운영
- 추진실적
  - 검진인원 : 1,812명
  - 산전검사 실적 : 3,154건
    - \* 초음파 1,554, 임신성당뇨 398, 태야기형 등 1,202

#### 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사업비 : 4,816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대상지역 : 23개 시군
- 지원내용 : 방문전담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735,000회(등록가수수 109,800가구)

###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162					20		20
'10	1,800					4		4
'11	1,812					4		4
'12	1,850					4		4
'13	1,850					4		4
'14	1,850					4		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812					4		4

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회)	국 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 회계	기금등			
합계	3,560					12,002		24,004
'10	620				2,370	2,370		4,740
'11	735				2,408	2,408		4,816
'12	735				2,408	2,408		4,816
'13	735				2,408	2,408		4,816
'14	735				2,408	2,408		4,81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812					4		4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출산전 서비스제공	산전 검진인원	명	1,812	1,812	10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방문서비스제공	방문서비스 횟수	회	725,000	735,000	101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9개시군)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민들의 반응이 좋음.

○ 미흡한 점

- 장비 노후화 및 인력 부족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역부족

○ 건의사항

- 초음파진단기 등이 정착된 이동검진차량 및 최신 장비 구입에 국비 매칭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3-3-7(계속)	<b>여성농업인센터 운영(경상북도)</b>
-------------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성 임 중

### 1. 사업목표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량 : 2개소(안동, 영양)
- 사업비 : 226백만원(1개소/113백만원)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등
  - 교육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등
  -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960	170	1,130
'10	2					192	34	226
'11	2					192	34	226
'12	2					192	34	226
'13	2					192	34	226
'14	2					192	34	22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개소					192	34	226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용대상만족도	설문지조사	%	75	75	100
	여성농업인 센터 수	센터수 증가	개소	2	2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됨
-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이 농촌 지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경험 등이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경상북도 교육청)
-------------	-------------------------

담당부서	과학직업교육과	담당자	이상욱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와 자립능력 함양으로 사회통합 증진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을 병행 운영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량 : 22개관
- 사업비 : 2,27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 장으로 활용 (마을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
  - 평생교육 중심학교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10,030	1,362		11,350
'10	22				2,000	270		2,270
'11	22				2,000	270		2,270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22				2,010	274		2,270
'13	22				2,010	274		2,270
'14	22				2,010	274		2,27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2개소				20	3		23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확충	이용대상자 만족도	만족도	%	80	80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학교에 대한 거부감 해소
- 미흡한 점
  - 일반 주민의 경우 퇴근 및 토·일요일에 지역 평생학습관 및 학교내 도서관 등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실제 사용에는 무리가 있음
- 건의사항
  -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을 확대

2-1-6-1(계속)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경상북도교육청)
-------------	--------------------------

담당부서	과학직업교육과	담당자	금동락

### 1. 사업목표

- 주민자치에 의한 선진 교육감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성 대두
- 농어촌 교육에 대한 시군과 지역사회의 관심 유발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 ~ 계속
- 사업량 : 14개소(도, 시군 13)
- 사업비 : 14백만원
- 개최회수 : 연 2회
- 사업내용
  -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협의
  - 시군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 협의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					82		82
'10	14					14		14
'11	14					14		14
'12	14					14		14
'13	14					20		20
'14	14					20		2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4개소					14		14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교육발전협의회 개최횟수	개최횟수	%	28	2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자체, 교육계, 교육단체, 지역사회 단체, 농어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문제 발생시 대안 제시할 수 있음
- 미흡한 점
  - 구성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 전국 단위의 지역발전협의회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여 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능력배양 제고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경상북도 교육청)
-------------	------------------------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이혜정

### 1. 사업목표

- 농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현장 체험 학습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및 학교 교육의 질 향상
- 농어촌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해소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 ~ 계속
- 사업량 : 15개소(통학버스 15대)
- 사업비 : 386백만원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종일제 운영 및 원아수가 많은 공립유치원
- 사업내용 : 연간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					1,942		1,942
'10	15					386		386
'11	15					386		386
'12	15					390		390
'13	15					390		390
'14	15					390		39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5개소					386		386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	버스 임차비 지원실적	지원유치원수/ 신청유치원수	%	15	1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학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아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
- 유아들의 문화체험 등 현장학습에 활용하여 도시 지역과의 문화 결손 해소를 신체적·정서적 발달 기여

○ 미흡한 점

- 버스 및 승합차가 경유하는 시간이 길어 통학시간이 길어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이 문제

○ 건의사항

- 원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도울 수 있는 도우미에 대한 예산반영

## 12. 경상남도

1-2-2-4(계속)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강화(경상남도)
-------------	-----------------------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강지숙

### 1. 사업목표

-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출산장려 실현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모자보건법 제3조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계속사업)
- 사업대상 : 6개군(다문화가족 포함)
- 대상인원 : 2,583명(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 대상지역 :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
- 주요 사업내용
  - 임신부 산전 진찰 : 1인 총 13회차
  - 주요 검사내용 :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
- 추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 이동 산전 진찰반 구성 운영 : 5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 소요예산 : 400백만원(도비 100%)
  - 주수별 검사비 90백만원, 운영비 등 310백만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412명(6개군지역)					1,958	-	1,958
'10	3,019명(6개군지역)					358	-	358
'11	2,583명(6개군지역)					400	-	400
'12	1,270명(6개군지역)					400	-	400
'13	1,270명(6개군지역)					400	-	400
'14	1,270명(6개군지역)					400	-	400

(※ 진료인원은 연인원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583 (6개군지역)	-	-	-	-	400	-	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주민홍보 강화로 목표대비 연 8,600명 초과 진료실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연간 진료실적	진료인원	%	1,270명	2,583명	203.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의료사각지대의 임신부들을 위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획기적 사업 평가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임신부에 대한 양질의 산전·산후 체계적 관리
  - 찾아가는 이동 진료로 임신부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등 해소
  - 특히, 농어촌지역의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신부 관리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 및 한국사회 조기 정착 유도
- 미흡한 점
  -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임신부에 대한 산전진찰에만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암발생율이 높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가임기여성에 대한 진료(부인과 검진)부재로 건강위험 상존  
⇒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능 확대 운영 강화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상남도)
-------------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홍민희

### 1. 사업목표

-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순회진료
  - 도서별 월 1회 순회 진료 실시(진료계획인원 연 125천명)
- 추진근거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호)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 2. 사업내용

- 진료기간 : 2011. 1월 ~ 12월
- 진료대상 : 7개시·군 50개도서(주민수 2,996명)
- 진료방법
  - 도서별 월 1회 순회진료 실시
  - 진료부분 : 일반진료(내·외과 등), 치과, 한방과, 보건교육, 상담
  - 가정방문 진료 : 거동불편 및 노약자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질환자 지속관리(매월 30일분 투약 및 관찰)
  - 진료비 : 전액무료
- 진료계획 : 연 125천명
- 소요예산 : 654백만원(도비 100%)
  - 의약품 구입비 63백만원, 운영비 등 591백만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4,703					3,043	-	3,043
'10	131,103(50 개도서)					564	-	564
'11	133,600(50 개도서)					641	-	641
'12	125,000(49 개도서)					664	-	664
'13	120,000(40 개도서)					700	-	700
'14	115,000(49 개도서)					750	-	75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33,600 (50개도서)	-	-	-	-	641	-	641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주민홍보 강화로 목표대비 연 8,600명 초과 진료실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병원선 순회진료	연간 진료실적	진료인원	%	125천명	133천명	106.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고혈압 환자(연 92,710명), 당뇨환자(연 7,390명)에게 매월 30일분 투약처방으로 지속적 관찰 관리 실시
  - 거동불편 노약자(연 5,482명)에 대한 직접 방문진료 실시
- 미흡한 점
  - 남해안 대부분의 도서가 수심이 얕아 병원선(162톤)의 접안이 어려워 보조정을 이용 병원선에 이송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병원선 내원 진료 불편
    - ⇒ 방문진료 확대 및 마을회관 등 활용 진료 강화
- 건의사항 : 없음

1-3-3-7(계속)	<b>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상남도)</b>
-------------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이경선

### 1. 사업목표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 및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농촌 건설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조례 제13조

### 2. 사업내용

- 사업량 : 7개소(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거창, 합천)
- 사업비 : 870백만원(도비 130.5/15%, 시군비 652.5/75%, 자부담 87/10%)
  - 개소당 130백만원(고성은 보육사업 미추진으로 9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농업인 고충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 여성농업인 취미·교양교육, 지역민 문화·복지 활동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		-	-	-	39	5	44
'10	6		-	-	-	7	1	8
'11	7		-	-	-	8	1	9
'12	7		-	-	-	8	1	9
'13	7		-	-	-	8	1	9
'14	7		-	-	-	8	1	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7		-	-	-	8	1	9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를 개소당 130백만원 지원  
 ※ 보육시설 미운영 센터(고성)는 80백만원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지원센터수	운영비 지원센터 수	개소	7	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적 수요 및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매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2-1-6-1(계속)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경상남도교육청)
-------------	------------------------

담당부서	예산복지과	담당자	박지영 주무관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효율적 추진
- 추진근거 :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 2. 사업내용

- 교육규칙제정 : 2005. 8. 17.
- 협의회 개최
  - 2006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 심사(2006.3.16.)
  -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2007.3.9.)
  - 2007년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학교 선정(2007.4.2.)
  -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함안지역 추천 순위 결정(2007.4.17.)
  - 2008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 심사 선정(2008.2.25.)
  - 2009년 농어촌 소규모 학교군 운영학교 심사 및 선정(2009.4.24)
  - 2009년 농어촌 전원학교 추천 심의(2009.7.8.)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20명 이내)
    - 위 원 장 : 부교육감
    - 위 원 : 당연직 내부위원 및 농산어촌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 협의내용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산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산어촌학교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임기 : 2012. 3. 1. ~ 2014. 2. 28.(2년)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2년 위원 재구성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예정
- <연도별 시행계획> : 비 예산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 비 예산사업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업협의회 개최횟수	계획대비 실적	회	1	1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미흡한 점
  - 관련 사업별로 자체 구성한 협의회·위원회를 통한 사업 대상자 및 사업규모 선정으로 인해 시군 교육 발전 협의회의 활용이 미진함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경상남도교육청)
-------------	-----------------------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윤용인 주무관

### 1. 사업목표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 교외활동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총사업비 : 103억원
- 사업규모
  - 통학버스 지원 : 유치원(12원 20대), 초등학교(208교 340대), 중학교(21교 26대)
  - 통학비·하숙비 : 초등학교(통학비 : 145명, 하숙비 : 26명)  
중학교(통학비 : 191명)
- 지원형태 : 차량운영비, 차량구입비, 용역비, 통학편의 확대 운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통학비 및 하숙비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사업시행주체 : 경상남도교육청

### 3. 연차별 추진계획

#### ○ 통학버스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62					513		513
'10	386					95		95
'11	388					99		99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396					101		101
'13	396					106		106
'14	396					112		11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88					99		99

○ 통학비·하숙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통학비	하숙비	통학비	
금액	144,455	80,400	124,898	349,753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비·하숙비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통폐합학교 통학버스(비) 지원 비율	통학버스(비) 지원학교/통폐합 학교수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타고학생들을 위한 통학편의 확대
  - 통학버스 통합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의 30% 추가 지원
  -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확대 지원(2010년 132명 → 2011년 252명)
- 미흡한 점
  - 예산부족으로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12년도에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지원 예정

### 13. 제주특별자치도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
-------------	-----------------------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이은미

#### 1. 사업목표

-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사업**
  - 사업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규모(사업량) : 여성농업인센터 신축 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백만원(지방비 400, 마사회적립금 400)
  - 지원조건 : 도비 50%, 마사회적립금 5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의 시설개선비(신축)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추진주체 : 행정시
  - 사업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692백만원(분권교 294, 지방비 294, 자담 104)
  - 지원조건 : 분권교 42.5%, 도비42.5%, 자담15%
  - 지원내용
    - 필수사업 :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 임의사업 : 농업·농촌의 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개소				900	700	200	1,800
'10								
'11	2개소				400	400		800
'12	3개소				500	300	200	1,000
'13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2개소				400	400	60	860

####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분권교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54			1,454	514	3,422
'10	6개소		278			278	98	654
'11	6개소		294			294	104	692
'12	6개소		294			294	104	692
'13	6개소		294			294	104	692
'14	6개소		294			294	104	692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분권교	기타회계	기금등			
'11	6개소		294			294	104	692

#### 4. 성과목표 달성도

○ '11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센터시 설개선 지원(개소)	시설개선지원 센터 수	개소	2	2	100%
	여성농업인센터운 영지원(개소)	운영지원 센터 수	개소	6	6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금액을 전년도 개소당 109백만원에서 115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유도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